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일시 2020년 7월 17일(금)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양경숙 의원실,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PROGRAM

1. 목 적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을 드러냈음. 경제위기로 인한 문제와 불안정한 노동,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더욱 위험이 전가되는 기울어진 구조가 감염병의 위기를 더 큰 재난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
- 다른 국가들보다 발 빠른 정부의 대응과 방역 정책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동선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문제, 안심밴드, QR코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 기본권의 침해 우려 역시 상당한 수준임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각종 감염병의 위험이 반복될 것이라 예상되는바, 인권에 기반을 둔 방역과 위험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감염병 위기대응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입법의 한계와 공백을 짚어보며,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 14: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주최

-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경숙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CONTENTS

- **인사말** 국회의원 양경숙 / i
- **서면축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ii
인권재단 사람 소장·생명안전 시민넷 박래군 대표 / iii
- **현장축사**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

발 제

- 발제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1
▶ 발제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제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45
▶ 발제자: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토 론

- 토론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69
▶ 토론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75
▶ 토론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 토론3.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과 인권침해신고 핫라인 운영 83
▶ 토론자: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 토론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93
▶ 토론자: 송준현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토론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99
▶ 토론자: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축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님과 박래군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관계자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 경 숙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입니다. 제헌절날 특별히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 산업 전반이 급격하게 침체 되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에 충분히 기반을 두지 못한 방역과 조치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유예되거나 침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 손목밴드 착용과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이 인권문제로 부각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철창에 구금하고 햇볕아래 전시해두는 등으로 전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정부 국제 기구인 휴먼라이스워치(HRW)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체포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모두 무시한 채 학대에 가까운 징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모든 조치들이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권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잊고 있는 인권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현행 입법의 한계와 공백도 짚어보고 국회가 수행해야 할 입법과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귀담아듣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인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양경숙 의원님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시민들의 참여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동제한령이나 국경봉쇄, 지역봉쇄 없이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K-방역의 성과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코로나19 대응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코로나 대응에 있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사회적 가이드라인도 코로나19가 드러낸 미흡한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전환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인권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도 살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토론회 논의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제도적, 법적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재단 사람 소장·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박래군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상황이 몇 개월 내에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2차 팬데믹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나름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관리해왔고, 그에 따라 'K방역'이라는 성공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을 봉쇄하지도 않았고, 일상적인 교통편도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쨌건 상당 부분의 일상을

그렇지만 'K방역'의 이면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 수많은 임시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하거나 후퇴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취해진 임시조치와 행정명령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 상황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책무, 그에 따른 임시조치들과 인권의 보호와 보장이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임시조치로 이루어진 권리의 후퇴와 침해상황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진즉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토론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인권단체들만의 고민과 문제의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양경숙 의원 님 등이 나서서 국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내려진 조치들이 왜 문제인지를 점검하고 보다 더 큰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일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같이 모색해야 할 일입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진정어린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 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랄 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랄 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목 차

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2. 위기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 1) 정보인권
 -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3) 주거의 권리
 - 4) 노동의 권리
 - 5) 사회보장의 권리
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 1) 기업과 인권
 -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4.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 1) 낙인과 혐오
 - 2) 여성
 - 3) 어린이·청소년
 - 4) 난민·이주민
 - 5) 장애인
 - 6) HIV감염인
 - 7)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권리취약 노동자
 - 8) 성소수자
 - 9) 수용자
5. 결론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인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위험 요소가 항상 지금과 같은 위기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공백인 안전망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지만, 코로나19라는 위험 요소와 결합하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흔히 재난에 따른 위기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거나, 확대시켜 온 국가나 기업 등의 책임을 ‘체대로’ 물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긴급’ 대응이 무너뜨리는 것은

현재 정부의 대응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치료와 격리·집단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같은 규제 중심의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이 주를 이룬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영업 활동은 선별적으로 규제되며,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동선이 관리되고 공개된다. 구체적인 직업, 종교, 국적 등 불필요한 정보를 명시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어떤 정체성이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전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하게 한다. 감염인을 격리·감시하고 ‘이탈’자 강력처벌을 공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국가가 ‘위험’의 좌표를 찍어준다. 이를 통해 전염병은 개인화되고 위험의 좌표는 낙인이 되어 배제의 이유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대응이 지금의 긴급상황이 지난 후에도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선제적인 검사와 발빠른 대응은 성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K-방역의 이면이다.

위기는 평등하지 않기에

감염 확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진실이다.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불평등한 위기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정한 집단에서 감염 확산이 발견되었을 때, 사회는 마치 감염인의 정체성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라는 듯 그들을 공격했다. 지자체는 재난문자에 해당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언론은 그보다도 빨리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었으나, 정작 혐오와 낙인이 일상이었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공허한 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그 책무는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결핍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재난의 발생, 해결 과정, 그 이후 재난의 상처를 겪은 모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 시민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는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많은 삶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해왔다. 다행히 코로나19는 초기 방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방역 조치로 인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조건인 한국사회 구조와 방역이란 이유로 유예되고 무너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권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잊고 있는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라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함께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강한 제재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다시 재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일부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감염인과 사망자는 공시된 숫자와 공개된 몇 가지의 정보로만 이해된다. 바이러스 감염인이 느낄 고립감과 불안함에 대한 공감은 사라지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감염인을 배제하고 타자화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 나 또한 배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난을 개인화하는 정부 정책이 낳은 효과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와 감염병 위기는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한다.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미 수많은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이후의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재난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재난 이후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사라지면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것처럼 생각할 때, 재난의 개인화는 심화된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바이러스를 겪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을 개인화하면서 사회가 망각할 때,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화하지 않게 된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지가 더욱 중요하다. 감염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각자도생하는 안전을 넘어 권리로서 안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난 피해자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감각,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로소 가시화된 불평등을 넘어, 평등하게 함께 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길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원칙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코로나19라는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¹⁾ 이는 위급한 시기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생명과 존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급상황에서는 더 큰 권리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 공공의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많은 국가들이 적절한 초기 방역을 하지 못했고, 치료와 대응에 공백을 보였다. 이는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붕괴시킨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대응을 잘한 나라로 손꼽히지만, 방역대응이 비교적 잘 된 것일 뿐 치료영역에서는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의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공공병원 및 병상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고, 3월 대구에서 4000명의 환자가 급증했을 때, 제대로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중환자 병상의 부족도 역시 문제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중환자 병상이 10.6병상 수준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미국(34.7병상)에 비해서도 낮다. 현재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과 광주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부재로 지역 의료기반으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다.²⁾

또한, 응급환자와 기저질환자, 저소득층 환자들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응급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속출했다.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역시도 두드러졌다.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간호사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대구/경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간호사들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급하게 투입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예방/치료 교육도 없이 중환자 병동에 투입되었고, 파견 간호사들의 경우 제대로 된

1) 유엔사무총장실,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04. 2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2) 이용빈 의원 “코로나 장기화, 공공의료체계 강화 시급”, 광주드림, 2020.07.07.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933>

속소도 제공받지 못했다. 개인 보호장비 역시 부족했고, 고강도 노동이 지속 되면서 집중력이 저하 돼 치료 제공뿐 아니라 스스로 감염 예방도 어려웠다. 한국의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일상에서도 만연한 문제였다. 간호사들은 현재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라며 요구하고 있다.³⁾

(2)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안

가을에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발 빠르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상/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의료진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양성 역시도 필요하다. 특히, 평소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일상적으로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해 시급히 의료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아프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폐쇄병동, 요양병원 등 과밀한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코로나19와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수한 조건상 감염과 전파의 위협으로 인해, 격리와 이동의 자유의 제약이 두드러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에 맞는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지 않되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민주적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⁵⁾ 또한 공중보건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은 적법하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서도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다.⁶⁾ 특히, 「자유권규약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3) 코로나 사투 속...청와대 앞에 선 간호사들, JTBC, 2020.07.0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298

4) 지방·공공병원 의료진 확충...지역별 의료 불균형에 '메스', 한겨레, 2020.07.09.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2896.html#csidxbd21f8a7a479ffdbdd7715e6461638a>

5) Mann, J.M., et al. 「Health and human rights」. 『Health and human rights』(1994), p6-23.

6)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③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져야 하고,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강제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① 비례원칙, ②임의성의 원칙, ③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⁷⁾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감염병 통제를 위한 보건 조치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과 이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간의 비례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 및 성격, 요건과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과도한 국가의 강력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격리, 자가격리’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었고, 자가격리 앱, 전자팔찌, 구상권 청구 등 개인의 이동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과 조치들 역시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관련 행정조치들은 갈수록 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감시의 양상을 띠고 있다. 갈수록 감염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강력처벌하는 방식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⁸⁾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방역대책이 마련될 때, 사회의 책임은 방기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며 처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방역 대책 바깥의 사람을 ‘공공의 안전을 외면한 자’, ‘바이러스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자’의 공식으로 몰아가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촉발시킨다. 질병에 대한 방역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격리

2020.7.12.00시 기준 확진자 13,417명 중 완치(격리해제)자는 12,178명, 치료 중(격리 중)인 자는 950명, 사망자는 289명이고 누적검사수는 1,402,144건이다.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최소 수만 명의 시설격리, 수십만 명의 자가격리 추정이 가능하고, 결국 수십만 명이 구금 혹은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자발적 보호인지조차도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격리’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들이 얘기하는 ‘예방적’ 격리도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강제성을 띠 수는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자가격리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스스

7) ① 해당 제한은 법에 의거하여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하고, ② 제한은 합당한 일반이익 목표(legitimate objective of general interest)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제한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④ 동일한 목표를 도달하게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⑤ 제한은 자의적으로, 다시 말해,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차별적인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8) 노마스크 전파자' 고발·과태료·구상권 '3종 패널티' 엄중 경고(종합), news1. 2020.07.05.
<https://news.v.daum.net/v/20200705155152337>

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⁹⁾

법적 의미의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개별 감염병에 관한 격리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¹⁰⁾ 모두 형사 처벌의 근거조항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격리조치가 이러한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이러한 요건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격리의 절차 및 처우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감염병예방법」령은 자가치료에 대해서 자가치료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린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통해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및 주소, 근거 법률조항, 거부 시 형사 처벌 등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22호서식).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관련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제42조 제5항),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의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구제청구권(제42조 제10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격리의 절차도 증표의 제시, 격리의 통지, 조사거부자의 인신구제청구권 등이 그 규정 내용의 전부이고 격리에 대한 독립된 심사, 변호인 조력권, 이의신청권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격리자의 처우도 일부 생계 지원이나 입원치료 지원 등에 대한 규정만 있다.

격리자는 본인의 잘못 없이 감염병에 노출된 피해자다. 감금으로 인해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국가의 지침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리적,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매우 취약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격리자는 동시에 감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최악의 (잠재적) 가해자, 죄인으로 낙인찍힌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¹¹⁾ 이제라도 법적 절차의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

9) "지인과 있게 해달라" 불안감 호소 코로나 격리자 극단선택(종합2보), 연합뉴스, 2022.06.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54152056?input=1195m>

10) 「감염병예방법」은 격리대상자로 ①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제41조 제3항),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46조), ③ ‘조사거부자’(제42조 제7항), ④ ‘감염병 의심자(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상 특정 지역 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2조 제15의2호) 등을 들고 있다.

11)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초기부터 피해자로 여겨지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격리됐고, 사망한 가족의 장례도 지키지 못했다. 지역사회 복귀한 후에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심지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일부 의심환자들은 시민적 덕성이 부족한 이들로 비난을 받았다. 감염의 공포와 격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의심환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을 격리하는데 바빴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환자, 가족, 일반시민들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대한의학회장), (2015.8.31.)

(2) 격리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i) 그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ii)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iii) 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격리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의 명령 혹은 권고 시 그 법적 근거와 강제성 유무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 동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격리의 요건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격리의 내용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도 격리대상자는 이러한 격리의 요건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개별적인 지침의 내용은 어떻게 이 법률요건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5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구금에도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에도 적용된다.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비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제와 관행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격리자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중 삼중 격리시킴으로써 격리자 및 비격리자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켜 온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위기 혹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포와 혐오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격리와 같은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어떻게 마련되고 관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법제와 관행, 그리고 인식의 개선이라는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코로나19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 여러 국가와는 다르게 적극적 봉쇄조치 없이 최소한의 이동만을 제한하고, 선제적인 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고도의 감시사회라는 토대 위에 안심 밴드, 구상권 청구, 처벌로 이어지는 강력 조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역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강력한 조치들 사이에서 유예된 인권의 원칙을 살펴보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방역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정보인권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 되었다’는 사회적 질타를 계기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투명성으로 변화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도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한 동선 파악 시스템도 개발됐으며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기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종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된 관리 및 폐기 규칙도 없이 계속 집적되고 있는 만큼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2)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① 확진자 정보 및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상 균형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 발언 등이 양산된 것이다. 개인별 동선이 아니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만을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지자체별로 번호를 매겨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특정 확진자 신상의 식별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마련된 동선공개 지침은 성별과 연령 등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

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정부는 약속한 바대로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가 연계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등도 역시 사용 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 데이터와 시스템을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수집된 확진자의 동선 및 개인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

③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코로나19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등 여러 광역시와 시·군·구 단위로 집회금지 고시가 확대되었다. 각 지자체들은 주요 집회 장소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했다. 집회금지가 된 곳의 예정된 집회가 취소되고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하고 있던 농성천막들도 철거되었다. 재개발에 맞서 싸우던 현장에 강제집행도 이어졌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제철거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종교행사 등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보건을 위해 집회의 권리도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근거 법률규정이 모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지자체들은 최소한의 제한보다는 일률적인 금지를 우선 적용해 제한된 공간에서의 모든 집회가 불가능하고, 금지 기간은 대부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채 현재(7월 9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집회이거나 광장 같은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집회라면 금지보다는 집회가 가능한 방향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집회를 개별적으로 살펴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기준에 정면으로 반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아닌 최대화한 것이다.

(2)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①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인지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권한이 통제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가 검토되고 평가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② 집회·시위 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 조치 시행 전 검토와 시행 중 평가와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집회 제한 조치가 적절하고 공중보건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 권한 남용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권리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 방식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권리를 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일률적인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집회 주최측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집회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제한의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계속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3) 주거의 권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이 권장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집이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 집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등 주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주거권특별보고관’) 라일라니 파르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해야 하는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노숙인이나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¹²⁾ 하지만 주거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거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퇴거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광범위한 주거 박탈계층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고 적절한 주거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거리 노숙인의 긴급한 주거마련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쪽방 등 개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 역시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과 요양병원 집단 감염사례 등을 이유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종용¹³⁾ 사례도 있었다. 서울역을 비롯한 공공공간에서는 방역 조치를 빌미로 홈리스에 대한 강제퇴거 등 공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강제퇴거 역시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서울시 천호1구역, 양동 쪽방지역 등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가 시행 되었다. 당장 퇴거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부담이 더 커진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낮아진 사람들, 개강이 미뤄지고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해지며 학교 주변에 따로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등교가 미뤄지며 방은 비워두었지만 월세 지출은 계속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¹⁴⁾

12) 최소한 국가는 “모든 퇴거를 중단해야 하고,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주택 서비스 제공하고 격리 조치 (예 : 통금 시간) 시행으로 인해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the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Housing, the front line defence against the COVID-19 outbreak,” says UN expert, 2020. 03. 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7&LangID=E>)

13) 홈리스행동, 「위기 속 민낯 드러낸 노숙인 복지 -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0).

14) 주거권네트워크 등,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간담회」(2020).

(2) 주거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각 국가에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중단,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비적정 주거에서의 겨울철 강제퇴거 중단조치 연장, 홈리스에게 위생 시설과 응급쉼터 접근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전 세계 각 국가와 도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¹⁵⁾

한국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거리와 시설생 활자, 집이 안전하지 않은 이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자체를 가질 수 없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임시 주거 지원이나 긴급주거비지원 등이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노숙 6개월 이내, 가구 단위 신청기준 등)으로 인해 포괄 범위가 작다. 감염병 유행 시기 주거 불안정 상태를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현재 지낼 곳이 없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보조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긴급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다시 쪽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시설에 한정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공공주택을 늘리고,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질 좋은 주택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강제퇴거 역시도 중단돼야 한다. 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근거리의 동등한 조건을 가진 이동처를 마련하거나, 위생공간을 제공하는 등 방역과 생존권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대규모 용역을 동원한 강제퇴거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퇴거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15)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 renters and mortgage payers」, 2020. 04. 08.,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Housing/SR_housing_COVID-19_guidance_rent_and_mortgage_payers.pdf

1. 임대료·주택담보대출·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퇴거, 퇴거의 위협에 대한 금지
2. 즉각적인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 전면 금지
3. 임대차계약의 해지 금지(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는 제외)
4.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총 소득의 30% 미만)이 되도록 보장
 - 주택 공급자에게 임대료 재산정 의무 부과
 - 세입자의 주거비 지출이 사회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
 - 주거수당 등 주거비를 충당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 급여의 수준이나 자격 요건 재평가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임대인에 대한 보상책 제공
6. 비공식 거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처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호
 - 특히 취약계층에게 최저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함께 제공할 것
7.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8. 특정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9. 수도, 전기, 난방, 전화, 인터넷, 전기통신 등 필수서비스 공급의 중단, 거부 금지
10. 손실을 입는 임대인, 서비스 공급자, 은행에게 세금 공제 등의 재정부담 완화책 제공
11. 이상의 조치가 세입자, 자가소유자에게 부채를 누적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아야
12. 이상의 조치가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 기구 지정

또한, 퇴거 위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반값 임대료를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을 강화¹⁶⁾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인상 없는 계약갱신을 도입해야 한다.

4) 노동의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생산의 분배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해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사회의 가치와 이에 따른 제도 그리고 노동과 생산의 과정 모두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물리적 거리두기, 격리, 봉쇄와 같은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경제위축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을 지속할 수 없거나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실직과 비노동 상태인 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더 떨어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을 지속한다 해도, 노동 조건상 감염위험을 무릅써야만 하거나 심각한 격무로 결국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국가와 기업, 사회의 대처가 인간보다 경제효율과 기존의 구조를 우선시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불평등하게, 취약한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의 일터, 미조직, 하청, 특수고용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이주민과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먼저 박탈되고 있다. 고용형태나 일터에서의 지위가 취약한 이들은 보호장구, 충분한 휴식, 위험에 대한 작업거부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실현의 실질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더욱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고용유지를 빌미로 거부되거나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위축되고 있으며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감염위험에 관련한 정보와 필요한 정책은 대부분의 노동자를 배제한 채 결정,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한 전면적인 집회금지로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회적 수단마저 봉쇄되었다.

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 코로나19 위기상황 가장 핵심인 평등과 차별금지, 인간의 생명과 존엄, 연대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16) 현행 2개월 연체시 해지 가능, 계약 해지에 필요한 임대료 연체 개월수를 연장해야 함.

- 고용과 실업, 노동자 지원 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노동자 직접지원의 경우가 드물다.
: 정부의 대안정책 중 일터와 노동환경에 있어서 전국민고용보험은 이미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미적용으로 발표되었고, 고용과 실직에 대한 지원과 같은 재난지원 역시 불안정 노동자나 이주, 난민 노동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노동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에게 그나마 긴급하게 실시하는 한시적 재난지원이 있더라도 접근성의 문제와 극도의 빈곤을 증명하고 순위로 지원을 결정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시급하다.
- 위기의 대응에 있어, 기존의 기업, 자본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우선하는 기업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구조의 일터에 실질적으로 예방조치와 감염위험에 대해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원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
- 위기에 대한 정책들은 실질적 실현조건의 마련과 제도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기 가장 필요한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이후를 위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 ① 일터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지침과 실현조건들의 의무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②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위기대응과 지원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③ 위기에 대한 기업지원 편중에 앞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장치를 우선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위협에 따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직접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④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실직과 휴직 상태에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는 노동-비노동 상태가 기준이 되지 않는 보편적인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⑤ 노동의 권리에 있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⑥ 노동의 권리의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5) 사회보장의 권리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권, 그 중에서도 사회권의 핵심 권리인 사회보장권은 그 실현이 중단, 퇴보하거나 후순위 과제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결국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높아지는 일자리 문턱,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단은 복지급여, 일용직 근로,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빈곤층이 직면한 위급한 경제적 상황에서, 까다로운 수급조건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취약계층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의 위험이 증대되었으나 실업 상황에 있는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보장수준이 불충분한 고용보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될 '국민취업제도'도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 즉, 취약한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제도들 역시 생계에 긴급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효적인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재난지원금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제도에서도 이주민, 청소년, 홀리스 등 특정 취약계층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사회보장의 권리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는 경제적 위기가 뒤따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이다. 위기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급하게 설계되고 긴급하게 이뤄지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 반복될 재난에서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보장의 권리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에 놓인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이 완화·개선되어야 하며,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난과 동반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구축 역시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 고용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망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한 요건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차별 지급 역시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의무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과 동시에 주어진 권력으로 위기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기에, 기업은 위기와 재난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기업의 인권보장과 국가의 역할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 한국기업들의 상황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차별 없이 접근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평등한 정보 전달과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제공과 과도한 언론 보도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뿐이다.

1) 기업과 인권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을 찾아서 개도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당장 사업 전반에 충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의류봉제업종이다. 원자재 수입에서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로 인하여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되는 의류업종은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얀마의 한 한국인 의류기업은 유럽과 미주 의류브랜드로부터 주문이 끊기자 공장 노동자의 절반을 감축했다. 문제는 이 한국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노조원들이란 사실이다. 기업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국제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¹⁷⁾. 감소한 주문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핑계 삼아 기업주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타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17) 「Union Garmant Workers Fear 'an Oportunity to Get Rid of Us」, 『Newyork Times』 2020. 05. 10., <https://www.nytimes.com/2020/05/08/fashion/coronavirus-garment-workers-asia-unions.html>

(2)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열악한 한국기업의 해외공급망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의료 및 보호용품 지원은 ODA사업과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류봉제업과 같은 밀집 노동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조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해고를 정당화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터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감시체제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유지, 그리고 노동권 보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정부·한국기업은 물론, 현지 정부와 한국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과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망 축소와 변경을 포함하여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급망 정책 및 관리의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에 피해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 조사 및 대책 수립은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 공급망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코로나19와 언론(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기초정보와 정부 부처의 대응과 평가, 재난을 이겨낼 다양한 방안들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국가적 시스템과 문화가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접근취약계층을 보다 신경써야할 것은 당연하다. 한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미디어사업자 그리고 개인(혹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서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언론(미디어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창궐’, ‘패닉’, ‘쇼크’ 등의 용어 사용과 함께 시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국가와 지역, 종교인, 확진자(환자)를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도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경우, 시민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통해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까지 삭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의 역할을 ‘가짜뉴스’를 빌미로 인터넷글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미디어교육(리터러시) 등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개인+공동체)의 경우, 공개된 확진자들의 동선을 두고 개인을 특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블루’, ‘노래방 도우미’ 등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몇몇 유튜버들은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되는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보접근취약계층에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장애인권단체들이 직접 나선 이후에야 정부 브리핑 시 수어통역이 배치됐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초반, 방역 정보를 제공은 물론 공적마스크 판매에도 제외돼 논란을 겪었다.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본인의 언어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청소년 문제는 재난 시 정보접근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그들의 건강권도 위협받는다라는 사실이다.

(2)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첫째,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반성으로 나온 결과물이 <재난보도준칙> 제정이다. 재난 시 준비돼 있는 매뉴얼을 지키는 건 기본이 돼야 한다. 둘째, 재난주관방송사는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기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난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재난 관련 전문 조직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는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기 보다는,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한 통신-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사실상의 물리적)'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통신'이다. 국가는 재난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통신은 인권이다.

다섯째, 시민들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묵인해선 안 된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는 만큼의 책무도 져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제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는 재난 상황은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며 낙인과 혐오를 마주했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정부의 방역 대책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1) 코로나19와 낙인과 혐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 개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낙인,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중국(인)'이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집했고, 대립동에 대한 혐오선동을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중국인 혐오는 지자체가 외국인 확진자의 국적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이주민 전체로 확대되었다.

3월에 들어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 주민 등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신천지 지도층만이 아닌 일반 신도들까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내몰렸고, 인터넷에서는 대구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고 대구 사람들이 사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성소수자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5월 초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게이클럽’을 강조한 과도한 언론 보도와 맞물려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왔다.

한편 코로나19로 촉발된 혐오는 특정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자 개개인을 향하기도 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상세 동선을 공개하고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은 영향도 크다.

(2) 낙인과 혐오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안

갑작스레 다가온, 실체 없는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리핑, 재난 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비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하며,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동료시민으로서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2) 코로나19와 여성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공적 돌봄체계가 마비되며 돌봄은 가족의 몫이 되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장려되고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주로 사용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돌봄이 당연히 여성의 몫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4월 9일자 발표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의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69.0%에 달했다.

여성들의 건강권, 노동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 많은 여성들이 보건의료, 방문서비스업에 종사함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돌봄노동자들이 생계위기를 겪어야 했다.¹⁸⁾ 특히 20대 여성의 고용 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2020. 4. 20대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하락(남성은 1.3%하락)했다.

18) [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평등 국회'의 과제, 머니투데이, 2020.06.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314497694446>

한편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위험 역시 증가하였다. 경찰청 발표는 가정폭력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폭력의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며 실제로 일부지자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가정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들여다보는 돋보기였다. 위기의 대응과 회복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젠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공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돌봄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여성들이 더 취약함이 드러났다.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건강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확산 예방 및 향후의 피해 회복 지원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임신부가 진료 거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악화의 영향을 여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정부는 개원·개학 연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방안을 한동안 마련하지 못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방식과 내용 등에서 불충분했다.¹⁹⁾ 다양한 언어적 조건과 장애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 지역 사회에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멈추자 가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육 부담은 커졌고, 이러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나 가정 내 폭력적·위계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

19) 「'수어' 없는 온라인 강의 "장애학생들은 어떡하나"」, 『경향신문』, 2020. 03.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222216005

현되는 사례도 있었다.²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어린이·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상황, 온/오프라인 개학 일정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묻는 대상은 교원과 학부모뿐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및 정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비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세대 단위, 세대주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원가정에서 이탈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어린이·청소년은 보호나 교육을 받는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며,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일정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돌봄의 부담을 양육자의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어린이·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정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가족 안의 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 및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감염 등으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입시 일정 등을 우선하며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입시나 취업, 경쟁이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도 세대 단위 지원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있는지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과정에서도 빈곤 계층, 이주민, 장애인 등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비롯

20) 「코로나19 사태로 '방콕' 오히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늘었다」, 『중도일보』, 2020. 04. 23.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423010008481>

한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 이를 전달해야 한다.

4) 코로나19와 이주민·난민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선주민과 이주민을 가르는 명확한 선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초기,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이주민이 제외되거나,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모국어로 된 보건, 방역 정보 등을 마련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지원금의 불평등한 지급과 자가격리 비용을 이주민이 부담하는 등의 차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중국, 중국 국적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었고²¹⁾ 혐오 발언들도 강도 높게 이어졌다. 이주민들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하기조차 두려워했고, 혐오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다.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서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민들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미 빈곤층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일을 못함에 따라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해고 사례도 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²²⁾ 고용유지 지원금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난민·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재난 시기 이주민은 안전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선주민/이주민에 대한 차등 없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이주민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대해 내국인과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의료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 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은 공포로 이어진다.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이유다.

21) 「[단독] 퍼지는 '중국 포비아'...서울 한 식당 '중국인 출입금지', 『한겨레』, 2020.01.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951.html

22)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거의 가입하지 않는다.

이주민에 대해 다국어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문자는 최소한 영어로 병기되어 발송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뉴스는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해고 금지와 더불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 이주민의 일 자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5)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인권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에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였다. 하지만 한국은 8만8천명²³⁾으로 추정되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으며, 다른 대안없이 행해지는 우선적 격리조치는 사회적 자원이나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을 고립시키며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한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역시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관련 매뉴얼이나 공공서비스체계의 부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환경 속에서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이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점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와 장애로 인해 수반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등 공적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노동환경에서 배제된 장애인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본인 혹은 가족들의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겹쳐졌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적이었던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더욱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애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①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초기, 많은 감염자가 폐쇄 병동, 장애인 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발생했고, 일부 시설은 감염을 이유로 코호트 격리됐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염병 예방 및

23) 「전국장애인추정수」, 통계청, 1995~2017년.

대책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적극적 차별행위라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

②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 제작해야 한다.

정부는 재가 장애인뿐 아니라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영위하고,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③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며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설 등이 중단되었을 때 집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싸우며 고립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④ 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관련 법개정과 함께 장애친화적 노동환경을 늘려나가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⑤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긴박한 일이다. 재난과 위기의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 소통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크게 변할 것이라 예측 되고 있다. 급작스레 다가온 만큼,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에서 장애인의 권리 확보는 물론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6) 코로나29와 HIV감염인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지정 의료기관들과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지정병원이 되었다. 급박한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몇몇 의료기관들은 진료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다. 감염병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당장 시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HIV감염인 및 중증질환자, 기저질환자들은 공공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진료가 거부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²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공백 및 진료거부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24) 자가격리 만성신부전 환자 투석 병원 못 찾아 잇따라 사망, 중앙일보, 2020.07.09.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925>

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는 가난한 이들이나 이주민 등에게도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에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언론, 지자체 등이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다. 과도하게 정보가 노출된 개인들은 현재 사생활 침해, 지역사회 의 괴롭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HIV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기억이 있다.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 속, HIV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을 때 겪게 될 사회적 낙인과 차별, 편견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 HIV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감염병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의료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비단 HIV감염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더 심각한 의료 공백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기저질환자들이 특별히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가면 진료지연이나 진료거부 없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료적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연결되어 있다.

HIV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거부는 HIV감염인들이 흔하게 마주하는 현실이다. 비록 국가위원회법과 의료법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진료거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²⁵⁾고 밝히고 있으나 HIV감염인은 매우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 당장 ‘내가 혹시 진료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HIV/AIDS에 대해서 잘 알고, HIV감염인들의 현실과 인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HIV/AIDS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의료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 환경을 바꿔야 한다.

2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고 2018년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수익성 중심의 민간요양병원들 중 일부는 때때로 환자를 볼모로 삼아 더 많은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법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 및 시설 중심의 관점을 벗어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HIV감염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물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해 당연 고려해야 한다.

7) 코로나19와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권리취약노동자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해고로 인한 생계위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인권 후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① 건강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비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몇 번을 쓴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이나 퀵서비스 같은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안전 장구 없이 일해야 했고, 요양보호사들은 보호 장구조차 개인이 사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쿠팡은 일터의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사내 확진자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

② 해고위협

공장가동이 축소되는 등 사회·경제생활이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거나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를 이유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이동이나 국내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 등은 항공업과 관광업계의 매출에 타격을 줬고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휴업과 폐업,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③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예술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건강보험도 지역 보험이고 산재보험도 없다. 예술노동자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며, 해고에도 우선순위가 되는 상황이다.

(2)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 ①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 모든 형태의 해고가 금지되어야 한다. 위기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원 방식이 아닌 노동자 직접지원 방식이어야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 ②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상병휴가, 유급휴가, 실업급여 등이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보호장구 등이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휴가 보장과 위기 시 작업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악화 상황에 놓인 여성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위기상황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최근,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시위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작업장 안팎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④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차별과 국적 및 성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차별 개선을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법제를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 누구라도 차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적 및 성별 차별 등 노동에서의 차별을 멈출 수 있는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8) 코로나19와 성소수자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위기는 성소수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불안정 노동 비율이 높은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5월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확산되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한 언론 보도와 지자체가 성소수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등 초창기 잘못된 대응한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이태원을 방문한 성소수자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지자체들이 확진자의 직장명, 성별, 연령 등 방역과 무관한 정보를 상세

공개함에 따라 확진자 등이 원치 않게 아우팅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 직장 괴롭힘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의료공백과 의료현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인권친화적인 병원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HIV 감염인, 호르몬요법을 받는 트랜스젠더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코로나19 검진과정에서 HIV감염여부를 특정해서 물어보거나 검사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동성커플이 돌봄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신분증상 이분법적 성별표기로 트랜스젠더들이 공적마스크 구입을 포기하는 문제도 있었다.

(2)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령 동성 공개는 누구에게나 문제이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아우팅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하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피해 상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진료와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권교육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스크 공급 등 방역과정에서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위기상황에서 동성 커플이 의료, 돌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차별은 위기에 더 큰 혐오와 낙인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하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를 응급처치하는 방식의 포용이 아니라,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9) 코로나19와 수용자

(1)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하 '수용자')의 인권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한다.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의 폐쇄성, 과밀성, 열악한 위생환경 등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 기저질환을 가진 수용자 등 취약 수용자들이 감염에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은 특히 접견제한, 야외운동 등 모든 이동과 활동의 제한, 격리, 노역, 심리적 불안감 조성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자들의 권리침해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약 3년 6개월 전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라 결정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위생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용시설의 유증상자는 독방에 격리되는데, 독방은 치료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최근 공황장애를 앓아온 수용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독방에 있다 숨진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안적 접견제도인 스마트접견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형자에 한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공안사범, 조직폭력 수형자, 마약류 수형자, 관심 대상 수형자,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 등이 배제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일상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수용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이루어지는 마스크 생산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도 발생했고, 수용자 개인의 영치금으로 마스크 구매하도록 하여,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수용자들의 정신적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수용시설은 재난의 위기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재난 상황 시, 수용자에게 재난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 정보 역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가 차단된 상황은 더욱 큰 두려움과 공포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심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위생용품 역시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과밀성, 폐쇄성, 열악한 위생환경등으로 인해, 감염의 확산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문제인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불필요한 구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의 목적으로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는 아동들, 형기의 종료가 임박한 수용자들, 경미한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 등 구금의 필요성이 적은 수용자들과 장애인, 노인, 아동, 기저질환을 가진 수용자 등 취약 수용자들의 석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석방되는 수용자들의 생계지원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코로나19의 상처를 살피며 기억하는 것이 인권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이 재난과 그에 따른 위기가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난과 위기의 극복을 얘기하는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존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에 존재해왔던 불평등과 인권침해, 차별과 낙인의 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먹거리와 월세 등 가장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질병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사치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 내몰렸다. 장애인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위기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서, 심각한 낙인과 혐오까지 더해져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전가된 돌봄노동은 과도한 노동 혹은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공공의료의 부족은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실 속, 우리가 말해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이 재난과 위기의 어떤 종식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위기가 종식된 사회는, 매년 2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위기가 극복된 사회는, 감염병의 위험이 특정한 집단,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거나 전가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사회는, 이주민은 제외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덮어둔 채 ‘재난위기가 극복되었다’, ‘일상이 회복되었다’ 혹은 ‘다시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드러난 고통과 상처에 주목하는 일이다. 차별 없이 평등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혐오와 낙인의 조장을 방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나중이 아닌 지금, 불평등과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재난의 위기 속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

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가 이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인권의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체제와 제도로 보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함께 살며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서로의 고통에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겪는 불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추모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기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현재 겪고 있는 상처를 기억하며 살피자.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인권을 복기하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살피며 사회적으로 연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Ⅰ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피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 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 ☑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 ☑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 ☑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 ☑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 ☑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 ☑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 ☑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 ☑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 ☑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 ☑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 ☑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

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 ☑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 ☑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 ☑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 ☑ 시민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미디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 ☑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 ☑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 ☑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 ☑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어린이·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 ☑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 ☑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 ☑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 ☑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 ☑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 ☑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 ☑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 ☑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 ☑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어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발제 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서 채 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서 채 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 들어가며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이 수 개월 간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발간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¹⁾(이하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수호되어야 할 ‘인권’의 영역을 확인하고 있음
-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존중의 원칙,’ ‘차별금지과 특별한 보호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소통과 참여보장, 의사결정의 원칙’은 위기 상황에서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대원칙에 해당함²⁾
 - 유엔 사무총장의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는 위험은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권중심의 위기대응, 차별금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 시민의 참여와 국제 연대를 원칙으로서 강조하고 있음³⁾
 -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 의무(제10조⁴⁾)를 대원칙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⁵⁾), 취약계층의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제32조⁶⁾) 및

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 6. 11.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위의 글, 184-186면

3) 유엔사무총장실,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4. 2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7)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문제에 대해 미흡한 국가의 대처와 인권침해 상황을 겪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재난 대응은 권리의 중심이 아닌 국가의 시혜적 구호의 관점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재난대응체계를 권리가 중심이 되도록 재설계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중심이 되고 있는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임. 인권의 관점에서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점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인권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점과, 국가가 간섭말아야 할 인권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라는 점임
 - 시민들의 생계 곤란, 고용 상실, 미흡한 의료접근권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영역) 등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한 국가의 역할과,
 - 무분별한 집회의 금지, 격리조치, 사생활의 영역 침해 등 광범위한 권리의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적장치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음
- 특히 권리의 제한의 정당성 보장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는 합법성, 비례성, 차별금지 등의 제원칙(이는 우리 헌법 제37조가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기도 함)이 감염병예방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령, 이른바 ‘손목밴드’라고 불리는 전자팔찌를 도입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동의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률’에 근거해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
 - 나아가 정부가 도입하는 전자팔찌는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착토록 한다고 하지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에 기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움
- 이하에서는 사회적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하는 인권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겠음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7)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염병예방방법의 개선방향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감염병예방방법 제4조 제1항, 제2항)

- 현행 감염병예방방법 제4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존중 및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책무는 단순히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방법 제4조 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방법 제4조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사업에 감염병 위기 상황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나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수립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제인권기준⁸⁾과 사회적 가이드라인⁹⁾ 등은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등 피해에 대해 주목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방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각 호의 사업에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와 특정 집단에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방법 관련 조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코로나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 2020. 5. 11.

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108-114면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감염병예방법 제6조)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6조는 국민의 피해보상의 권리(제1항), 알 권리(제2항), 치료를 받을 권리(제3항) 등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상황 속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또한 재난의 주체를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이라고 보고 있음
 - 이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자 인권의 생명과 안전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국제인권기준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헌법의 원칙임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주체는 사람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항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상황 속 사적 주체들이 협조해야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격리조치의 경우 이하에서 후술하듯이 그 요건과 정당성이 엄밀히 심사되어야 함
 - 즉 단순히 국가의 격리조치 등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의무 부과에도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조해야할 대상이 감염병 위기 상황 속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속 권리로서 보장되어야할 사항들은 피해보상의 권리, 알 권리, 치료

를 받을 권리에 국한되지 않음

-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영역들에서 찾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권리로서 존중, 보장받아야 할 것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건강권의 보장은 식량권, 주거권, 근로권, 교육권, 인간존엄성, 생명권, 비차별권, 평등권, 고문금지,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 결사, 집회 및 이전의 자유 등 다른 필수적 인권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에 좌우된다는 입장임¹⁰⁾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6조는 감염병 위기 상황 속 보장되어야 할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제6조 제2항에는 필수적 의료물품 등에 대한 접근권 등을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임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관련(감염병예방법 제7조, 제34조)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제1항,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제3항)를, 제34조에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제1항, 제2항)를 규정하고 있음
-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사업에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나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수립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위기관리대책에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2조)」, E/C.12/2000/4, 2000, para 2.

- 물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규정 형식상 실제 계획 수립에 있어 인권에 관한 부분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감염병 위기 상황 속 인권의 문제가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상황을 별도의 호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경우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대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대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라.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관련(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¹¹⁾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 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을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이라는 요건 아래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는 이의 신청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2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 감염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은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개인별 동선과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정보공개 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히 정비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인식별 방지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감정보는 내밀한 인격과 관련된 정보로서 그 공개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개여부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동선의 공개 등이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칫 바이러스가 아닌 개인을 위협이라 취급하게 만들고 추가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의 식별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태원 클럽’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수준에서 공개 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의 통합적 공개방법 등이 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정보의 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음
 - 즉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2항은 공개결정 이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정보의 공개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개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이의신청의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사전적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로서 공개될 사항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1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38-45면.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참조)인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이 아닌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거나,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공개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공개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그 정보가 통합적이고 일률적으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해야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6조를 개정하는 방식 대신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해당조항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마.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관련(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 제2항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상이 포화에 이르는 경우에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 제3항은 접촉자격리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접촉자 격리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항이 ‘일정기간’이라는 추상적 요건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완전히 적합한 접촉자 격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격리가 무기한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39조 제2항은 해당조항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간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지정되는 접촉자 격리시설이 치료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바. 사업주의 협조의무 관련(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¹²⁾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은 사업자의 협조의무로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상황에 의한 입원 및 격리가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2항 제1항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2항에서 유급휴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응당 위기상황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업 등 사업주의 고용유지의무는 책무로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상병휴가의 도입,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일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고 있는바,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의 국가의 비용 지원은, 재량이 아닌 의무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1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66-78면, 154-163면.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방역조치, 예방조치 관련(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¹³⁾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급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우 광범위한 강제적 조치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별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음
 - 모든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특히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법치주의로 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등도 준수되어야 함
 - 특히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보건을 위한 모든 조치는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음¹⁴⁾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의 요건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격리의 경우, 증표의 제시, 통지, 인신구제청구권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전부이고, 격리가 되는 사람의 처우도 일부의 생계지원에 국한 됨
 - 격리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피해자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더욱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 느슨한 요건과 형벌조항을 통해 위반자를 광범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기본권의 광범위한 제한을 용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 i) 그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ii)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iii) 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13)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29-36면.

1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2조)」, E/C.12/2000/4, 2000, para 29.

- 특히, 예방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격리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와, 의사를 존중 받을 권리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즉 ‘동의’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과 발동 조건역시 보다 엄격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하 ‘하. 부분’에서 언급하듯이, 특정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기구가 부재하다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전적, 사후적 감독기구가 필요함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아. 집회의 전면적 금지 관련(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¹⁵⁾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집합’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위기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로 대표되는 집합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능과 소통 및

15)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46-58면.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더욱 그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설명하듯이, 국제인권기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헌법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집회의 자유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
 - 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고, 내용, 규모, 방식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평화적 집회 그 자체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¹⁶⁾ 및 국제인권기준¹⁷⁾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요건은 앞서 살펴본 격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기간과 장소의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함
-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어긴 경우 참가자 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그 자체를 범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형벌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별칙조항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 더불어 집회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조치를 사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하 ‘하. 부분’에서 언급하듯이, 집회금지 및 제한의 경우에도 사전적, 사후적 감독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전적, 사후적 감독기구가 필요함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6)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17)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 10대 원칙」, 2020. 4. 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Type=EmailBlastContent&eld=b175afc0-0cf5-4f8b-93e7-f7038c60108a>

자. 수감자 중인 환자의 관리 관련(감염병예방법 제44조)¹⁸⁾

- 감염병 예방법 제44조는 수감자에 한정하여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조치와 의료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위기상황의 적절한 조치 및 의료제공이 감염병에 감염이 된 수감자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됨. 과밀수용, 열악한 위생환경 등 감염병의 위기에 취약한 시설에 수용된 자는 이른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국제인권기준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 등 취약수용자들(특히 아동)이 가급적 석방 또는 대안적 구금을 통해 가족 등과 함께 사회에서 감염병의 위기에 대응을 하고,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치료와 의료물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¹⁹⁾
 - 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과밀화되고 위생적이지 않은 취약한 시설에 수용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격리 수용이 아닌, 석방, 대안구금의 제공, 외부에서의 치료를 받을 권리 등이 원칙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함.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4조를 비롯한 관련 법률 등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원칙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조치 및 의료제공의 대상은 모든 수용자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수용자의 인권을 석방 또는 대안적 구금의 제공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격리 수용 등 각종 강제조치들은 비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보다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는바, 수용시설의 조치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외부와의 소통권이 차별없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법률조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18)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172-180면

19) IASC, 「Interim Guidance on 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202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COVID-19 Guidance,」 2020. 4. 27.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정신질환·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관련(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²⁰⁾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1항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 도입된 법률조항으로 감염병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요건으로 국가의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집단의 기본적 권리 침해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음. 가령 장애인에 대한 대응지침 등은 부재하였고, 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

-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가령 미등록 이주민, 홈리스, 주거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 등의 생존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건대, 감염취약계층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스크지급에 사실상 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1항은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1항은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한 보호를 권리로서 제공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한다는 요건은 불필요하고, 장애인, 빈곤에 처

20)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107-172면

한 사람, 임산부, 주거 취약계층, 취약 노동자, 이주민 등 폭넓은 범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마스크 지급 등에 한정되는 필요한 조치도 소득 지원, 적절한 편의 및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 등 감염취약계층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확대, 보장될 필요가 있음
 - 가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할 것임
- 한편 감염취약계층에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카. 손실보상 관련(감염병예방법 제70조)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각호에서 정하는 손실을 입은자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손실보상절차는 감염병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엄격한 입증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저야하는 사법적 절차 대신 간이한 구제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감염병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 임
-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각 호는 기본적으로 그 구제 대상을 격리 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고(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정작 감염병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실보상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4호). 가령 집합명령에 따른 개인의 손실 등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메르스 사례 등을 보건대 개인이 오롯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각 호는 보다 개인의 손실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관련(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²¹⁾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제2항).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입원과 격리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과거 메르스 확진자들의 절반 이상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점에 비추어보면 생활지원 뿐만이 아닌 심리적 지원 또한 필요함
- 나아가 감염병에 확진된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 가족들이 겪는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에 심리적 지원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79-88면

파.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관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 2)²²⁾

-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됨. 감염병 예방법 제4장에서 역학 조사 일반의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역학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요청과 처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가 규정하고 있음
 - 역학 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에 대한 인터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확진자의 과거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법에 근거를 두고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한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것과 같음(이는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가 감염병의심자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 됨)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느바, 이러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가령 다른 수단으로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급적 개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규정 도입이 필요함
-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지난 5월 초 기지국 접속기록을 취득거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해당 정보의 제공의 근거로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의 광범위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지국 또는 QR코드로 수집되는 정보에 기반한 행정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 2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정보수집수단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특히 기지국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²³⁾

2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38-45면

23)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

- 나아가 감염병예방법이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처리 및 파기에 관한 감독을 하는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6항은 제공받은 자에게만 파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2015년 메르스 상황 때 수집한 정보의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음
- 참고로 파기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파기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해석과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가 정보를 제공받은자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자 역시 파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6조 제2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장치들을 규정으로서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보주체의 처리중지요청권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거나,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 감독기구의 마련 등 기타 개선과제

- 이상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의 현행조항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법률의 공백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들에 기반하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 법률의 공백이며 감염병예방법에 신설규정 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먼저, 감염병의 위기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상,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등 사업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둘 필요가 있을 것임. 추모 등은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배상의 권리와 재발방지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 역시 법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격리의 문제점과 더불어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에 관한 엄격한 규율이 별도의 조항으로서 필요할 것임. 동일집단격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나, 규범적인 관점에서나 논란이 많은 강제조치에 해당함. 동일집단의 격리는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격리 대상자들의 생명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 따라서 강제조치 또는 예방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동일집단격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에 하나 허용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격리대상자의 생명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위기상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법적 절차 역시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임.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 등의 문제, 국가의 조치 등에 관한 입증책임 등이 사법적 절차에 의한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소득상실, 고용불안, 서비스의 중단 등은 특히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가의 조치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적,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의 조치가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형태의 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 대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제10조가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임
- 나아가 감염병 상황에서 특히 학대와 폭력에 방치될 수 있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집단들에 대한 통계 등을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 또한 필요함. 감염병 위기 상황에 발생하는 격리 및 거리두기 상황은 학대와 폭력을 조장함과 동시에 은폐하는 구조를 야기하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결국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에 대한 고민 없이 엄벌 기조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가령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일반 시민 모두를 처벌하는 형태의 벌칙 조항, 자가격리 이탈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탈자 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개선의 필요가 있음
물론 위와 같은 포괄적 처벌규정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향후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사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수사과정의 진행 그 자체로 당사자의 일상이 붕괴된다는 점,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금의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등이 병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규정의 무부분별한 적용을 배제할 법적근거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함.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책과 기본계획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3. 나가며

- 이상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다만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다양한 과제들은 단순히 감염병예방법만의 개정을 입법과제로서 남겨두는 것이 아님
-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및 행정지침 위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등의 문제, 위기 상황에 급격히 사라지는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가령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가 드러낸 미흡한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 고용보험제도 등의 개편을 통한 고용안전망의 확충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 입법과제를 제

안하고 있음.²⁴⁾ 이러한 지점 역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원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에 중심을 둔 감염병 대응체계의 구축은 국가의 방역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세계적 찬사에 이면에 감춰진 인권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진정 우리의 방역과 감염병 대응은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기준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오늘 이 토론회가 향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의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다양한 후속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함

2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앞의 글, 79-88면

토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제4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함. 인권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 보다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지역 내 감염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
2. 제4조 제2항의 사업유형을 보면 방역학 내지 보건학 관련 사업들로 규정되어 있음. 문언적으로는 열거로 보이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시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차별과 혐오금지를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포섭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따라서 취약계층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 규정으로 두는 것을 제안함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행사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원칙규정이 필요함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하는 인권존중, 차별금지, 취약계층 보호, 과잉금지, 사회적 소통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국제연대 등)
3. 제6조의 표제와 주어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함
4. 제6조 제4항에는 반대함. 국민의 협조의무가 기본권 보장의 경우에만 한정되지는 않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는 기본권 충돌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현실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움. 국민협조 조항은 구체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공익적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이 조항의 의미를 계속 세겨가는 것이 기본권제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5. 제6조 제1항은 국민들이 격리 및 치료받은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보상규정과 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면 제6조에서는 일반국민을 규정하는데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음. 손실보상으로 가면 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에 관한 것임
일반국민과 폐쇄조치를 당한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없음.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일반국민이나 식당등 영업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제6조 제1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제7조 제2항, 제34조 제2항에 인권존중, 차별금지, 사회적 부작용 등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함.
7. 제34조의2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임.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 하지만,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우리법제가 그 해악에 비하면 과잉보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함. 즉, 개인정보 공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임. 민감정보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는 이유도 차별방지라 생각함. 개인정보가 특정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차별의 위험이 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미성년자 보호 등의 가치도 정보공개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개 범위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제39조의3의 일정한 기간은 불명확한 기간이지만,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함.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접촉자 격리시설에 준하는) 마련과 공적 주체에 의한 시설상태의 확인이 필요함. 국가가 방치하지 않고 관리함.
9. 제41조의2 기본적으로 찬성함
10. 제42조, 제47조, 제49조 등 강제조치에 관한 규정들 개정도 기본적으로 찬성함. 제42조는 즉시강제인데, 그 성격상 사전구제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봄. 감염병환자를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격리자나 치료자에 대한 처우를 높이는 방법을 요건화할 수 있지만,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성격상 즉시적 권한의 재량적 행사라는 점에서 격리나 치료를 제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11.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의 자유는 그 기본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조문화 할 필요가 있음. 즉시 강제라기 보다는 예방행정이라는 점에서 고지의 절차나 형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기간의 경우에 일정기간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하는 방안
전면금지 보다는 집회장소의 넓이나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
발제문과 같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이 관여하는 방안에도 찬성함
12. 제44조의 교도소에 한정하지 말고, 공법관계인 특히 특수한 권력관계에 놓은 소년원 수감자, 군인, 학생, 보호소 수용인원 등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어야 함.
이런 밀집시설은 감염병 전염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개인위생 및 보건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인

근에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13. 제49조의2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 빈곤층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이들이 스스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긴급복지지원법의 확대적용)
감염병 이외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함.
14. 제70조 격리나 치료,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영업자주 등 개인으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손실보상의 확대적용은 예방조치 등에서의 재량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
15. 제70조4의 경우는 발제문에 동의함.
추가적으로 제70조의3의 경우에 의료인 대신 공적역할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16. 제76조의 2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의요청이 갖는 부작용도 고려됨.
합리적인 범위에서 동의가 요청되는지를 감독할 기구설치의 필요성에 긍정함.
17. 결론적으로 국가재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법의 밀도를 높이는 것도 실효성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의신청을 처리할 개인정보나 의학, 방역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 중심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함.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토론 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과장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과장

1.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신설

추진 배경

-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감염의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자가격리 명령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 인권문제 검토 필요
- 감염병 확산으로 나타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상황 점검 및 개선 사항 검토

기능 및 업무

- 위원장 소속으로 구성
- 기능
 -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령·정책·제도·관행 개선 및 연구, 협력 기능
 - 코로나19에 의한 대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
- 업무
 - 코로나19 관련 대응전략 수립 및 긴급 현안 대응 등
 - 코로나19 관련 인권 침해 및 개선 사항 검토
 - 관계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대응 및 협의

세부 업무 내용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지켜야할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
 -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대처 시 인권 원칙이 필요한 이유 서술
 - 감염병 상황에서 인권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방역 절차 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적 문제점 검토
 - 감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의 제도적 검토
 - 방역 조치와 관련된 이행 사항의 문제점 검토
 - 특히, 동일집단격리(일명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관련 인권 보완 사항 검토 및 필요시 관련 매뉴얼(지침) 수립
- 감염병 재난 상황을 통해 드러난 사회인권적 문제 검토
 - 분야 또는 대상별 문제점 정리
 -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 발굴

□ 업무 추진 방법

-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 코로나19 관련 국제 문서, 국내 법률, 기 연구자료 등 검토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원칙)
- 감염병 예방법 관련 법제도적 검토
- 코호트 격리 관련 전문 자문회의 및 거주시설 FGI 실시
 - 노인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종사자 등 FGI 실시
 - 정신의료기관 코호트 격리 관련 의료 전문가 등 FGI 실시
 - 자문회의 개최 등
- 코로나19 관련 인권 토론회 개최
 - 검토 내용과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2. 위원회의 코로나 19 관련 활동

영역	활동내역
자유권	과도한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원장 성명서(3.9.)
	손목밴드 도입 논의 등 과도한 자유권 훼손에 대한 위원장 성명서(4.9.)
취약계층/사회권	노동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구금자·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대응 모니터링, 관련 진정사건 조사 등
	코로나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대책 마련 촉구 보도자료(3.19.)
사회권	취약계층 식량권 등 모니터링
	사회보장 관련 정책 모니터링
차별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접수 현황 및 진행 - 특정 지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차별, 격리 관련 차별, 장애인 편의 미제공, 근로자 직종별 근무형태 차별 등
	혐오차별 근절 온라인 캠페인 실시, 협력 사업 진행, 모니터링
	혐오차별 근절 위원장 성명서(2.5.)
	소수 국적자 거주 지역 위원장 방문(2.20.)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5.14.)
	농민 정보접근권, 언어권 보장 위원장 성명서(2.28.)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 관련 위원장 성명서(3.3.)
젠더	여성 노동자 집단근무지(콜센터) 환경 실태조사 추진 계획
홍보 및 협력	유엔 인권최고대표소 지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등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문서 번역 후 공유(예정)
	COVID-19 관련 노인인권 국제 전문가 온라인 회의 참석
	코로나19 대응 위원회 홍보물 발간

□ 위원장 성명 등 관련 보도자료

- 2020. 2. 5.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대처 성명
- 2020. 2. 20. 최영애 인권위원장, 중국동포 현장 목소리 청취
* 위원장 구로동 지역 현장 방문 관련
- 2020. 2. 28. 재난 상황 보도에서 농민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긴급성명
- 2020. 3. 3. 청도대남병원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성명
* 방문조사를 통해 긴급구제 내용 해결 확인 및 향후 실태조사·지속 모니터링의 필요성 전달
- 2020. 3. 9.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성명
- 2020. 3. 19. 코로나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대책 마련 촉구
- 2020. 4. 9. 손목밴드 도입 논의 등 과도한 자유권 훼손에 대한 위원장 성명서
- 2020. 5. 14.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3. 코로나 19 관련 언론보도 이슈

□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동선 공개

-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
 -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3. 9.),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 확진자의 완치 판정 후에도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뿐만 아니라 동선에 위치한 영업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손목밴드

-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해 손목밴드를 도입하였으나 인권침해 우려와 법적근거 미비의 문제는 남아있음
 -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4. 9.), “손목밴드 도입은 개인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검토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 기지국 통한 명단확보

-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통신 10,905명, 카드 494명)를 확보하고 코로나19 검사 요청 문자메세지를 발송
- 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위치 정보 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여전한

□ 성소수자와 특정 종교인에 대한 혐오

○ 성소수자를 향한 비난과 혐오 확산

-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언론의 반인권 보도행태가 더해져 확진자의 성적지향이 강조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됨
 -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5. 14.),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 신자의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힘

□ 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 집단 거주·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로 인한 인권 침해

-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폐쇄병동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로 인해 대규모 집단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환자가 방치됨
-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3.3.), “청남대남병원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

○ 장애인 자가격리시 대책 미비

- 중증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게 됨
- 장애인 단체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장애인 관리 대책이 부실함을 지적

○ 장애인 정보 접근

- 재난방송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음성, 자막, 수어통역이 모두 제공되어야 함
- *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성명(2. 28.), “정부가 제공하는 수어 통역이 발표자와 동등한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과 편집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 시각과 청각에 모두 장애가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정부브리핑 내용과 재난문자 인지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음

○ 외국인 차별

- 이주 노동자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3월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중 약 144만 명
-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지침을 세우고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 지정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재입국한 장기체류 이주 노동자는 입소 자격이 되지 않아 인권센터 쉼터 등에 입소해야 하는 형편임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의 경우 공공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되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함(3.12.)
 -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 미등록자 39만명, 단기체류·관광 46만명, 유학생 10만명, 방문 동거·방문 취업자 30만명
 -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3. 19.),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 노동자 등 백만여 명의 이주민이 배제되므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마스크 보급대책 마련 필요”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토론 3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과 인권침해신고 핫라인 운영

박 숙 미

서울시 인권보호팀 팀장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과 인권침해신고 핫라인 운영

박 숙 미
서울시 인권보호팀 팀장

1. 서울시 코로나 일별 대응현황

날짜	내용	비고																		
1.22	- 서울시 방역대책반 24시간 가동																			
1.27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 의심환자 이송지원반 확대 운영	중앙																		
1.28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30	- 코로나 상황 매일 오후 3시 유튜브 생방송 일일보고 실시																			
1.31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연번</th> <th>이름</th> <th>성별</th> <th>직업</th> <th>여행력</th> <th>확진일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김○○</td> <td>남/여 (30세)</td> <td>회사원/주부/ 학생 등</td> <td>중국 우환시</td> <td>1.22.</td> <td></td> </tr> </tbody> </table> -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수사적 기법 도입(CCTV확보, 카드내역) -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 2중(자치구, 시) 감시체계 시행	연번	이름	성별	직업	여행력	확진일자	비고	1	김○○	남/여 (30세)	회사원/주부/ 학생 등	중국 우환시	1.22.						
연번	이름	성별	직업	여행력	확진일자	비고														
1	김○○	남/여 (30세)	회사원/주부/ 학생 등	중국 우환시	1.22.															
2.5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연번</th> <th>번호</th> <th>성별</th> <th>연령</th> <th>여행력</th> <th>격리일자</th> <th>격리병원</th> <th>접촉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td> <td>남/여</td> <td>30세</td> <td>중우한</td> <td>1.22</td> <td>병원명</td> <td>10</td> <td>#2(가족/ 지인)</td> </tr> </tbody> </table> ■ 일일보도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울시 발생 (2월 5일 19시 기준) - 19번째 환자 확인 - </div>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원순)는 '20년 2월 5일 19시 현재, 1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내용 생략] ○ 환자는 국가직접입원지도명장(직종의료원)에 격리조치 되었으며 역학조사가 진행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top: 5px; font-size: small;">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번	번호	성별	연령	여행력	격리일자	격리병원	접촉자수	비고	1	#1	남/여	30세	중우한	1.22	병원명	10	#2(가족/ 지인)	
연번	번호	성별	연령	여행력	격리일자	격리병원	접촉자수	비고												
1	#1	남/여	30세	중우한	1.22	병원명	10	#2(가족/ 지인)												

날짜	내용	비고																		
2.6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확진일자</th> <th>환자번호</th> <th>이름</th> <th>성별</th> <th>거주지</th> <th>직업</th> <th>여행력</th> <th>접촉력</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22</td> <td>#1</td> <td>김○○</td> <td>남/여 (30세)</td> <td>중구</td> <td>회사원 /주부</td> <td>중우한</td> <td>#2접촉자</td> <td>병원명</td> </tr> </tbody> </table>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30세)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30세)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											
	-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선 지도 서비스(시설명, 확진자, 시간, 동선, 소독 완료 여부)																			
2.8	- 자가격리시설 운영(2.10 첫 입소)																			
2.11	- 외국인 주민 8개 언어 상담, 맞춤형 지원(동행통역 등)																			
2.13	- 자가격리자 물품, 의료인 주거비,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2.21	- 도심 집회 제한(3개광장) -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무기한 휴관 조치																			
2.2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중양																		
2.24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 모집 -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 현장 역학조사반 확대 - 신천지 관련 집중 폐쇄 및 방역 완료(2.21 시작) - 시차 출퇴근제 도입 - 어린이집 휴원, 문화체육시설 휴관 - 범투본 집회 고발																			
2.26	- 집회금지 확대(종전 3개광장에서 확대)																			
2.27	- 광화문 세종대로 집회 천막 철거 - 서울소재 신천지 신도 28,317명 전수조사 완료(2.26 명단입수)																			
2.28	-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3.2	-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 제안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4개소 운영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확진일자</th> <th>환자번호</th> <th>이름</th> <th>성별 (출생년)</th> <th>거주지</th> <th>직업</th> <th>여행력</th> <th>접촉력</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22</td> <td>#1</td> <td>김○○</td> <td>남/여 ('90)</td> <td>중구</td> <td>회사원 /주부</td> <td>중우한</td> <td>#2접촉자</td> <td>병원명 (퇴원)</td> </tr> </tbody> </table>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 (퇴원)											
3.3	- 취약계층에 마스크 20만개 지원																			
3.4	- 자가격리시설 추가지정(영어마을 수유캠프)																			
3.6	-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확대																			
3.8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실시																			
3.9	〈공적마스크 5부제실시〉	중양																		
	- 3.9~3.17 청년수당 모집 및 지급('20년 총 3만명 지급 예정)																			
3.10	-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정부에 건의																			
3.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1판〉	중양																		

날짜	내용	비고																				
3.16	- 코로나19 생활치료 센터 운영(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 돌봄 중단 장애인, 어르신에 긴급돌봄																					
3.18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3.30부터 접수)																					
3.23	-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3.23~4.5)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15일 간 운영중단을 권고																					
4.1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2주-자가격리 앱 다운>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접수	중앙																				
4.2	- 스마트노트북 5만 2천여대 지원(화상수업 대비 학생 대상)																					
4.3	- 서울거주 해외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 잠실 운동장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4.5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중앙																				
4.6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확진일자</th> <th>환자번호</th> <th>이름</th> <th>성별 (출생년)</th> <th>거주지</th> <th>직업</th> <th>여행력</th> <th>접촉력</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22</td> <td>#1</td> <td>김○○</td> <td>남/여 (‘90)</td> <td>중구</td> <td>회사원 /주부</td> <td>중우한</td> <td>#2접촉자</td> <td>병원명(퇴원)</td> </tr> </tbody> </table>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퇴원)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1	1.22	#1	김○○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퇴원)													
4.7	- 서울시 확진자 보도자료 정보제공 ○ 서울시 확진자 현황(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확진일자</th> <th>환자번호</th> <th>성별 (출생년)</th> <th>거주지</th> <th>직업</th> <th>여행력</th> <th>접촉력</th> <th>조치사항</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22</td> <td>#1</td> <td>남/여 (‘90)</td> <td>중구</td> <td>회사원 /주부</td> <td>중우한</td> <td>#2접촉자</td> <td>병원명(퇴원)</td> <td>병원명(퇴원)</td> </tr> </tbody> </table>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	1.22	#1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퇴원)	병원명(퇴원)	
연번	확진일자	환자번호	성별 (출생년)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조치사항													
1	1.22	#1	남/여 (‘90)	중구	회사원 /주부	중우한	#2접촉자	병원명(퇴원)	병원명(퇴원)													
4.8	- 고강도 잠시멈춤 - 유흥업소(룸살롱, 클럽, 콜라텍) 집합금지명령(~4.19) - 확진자 목록 미제공(총괄표만 제공)																					
4.12	<중앙방역대책본부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2판> -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 동선 상에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	중앙																				
4.23	-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발표(5월말부터 신청)																					
4.29	- ‘코로나19 지침 검색’ 어플 제공																					
5.3	- 생계위기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5.6~ 신청)																					
5.6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5.9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5.11	- 이태원 클럽 관련 익명검사 시행, 기지국 정보 활용 문자전송 - 코로나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핫라인” 개설 및 운영																					

날짜	내용	비고
5.13	- 익명검사 전국 확대 - 특정 장소에서 집단발생 시 장소의 공지와 개별환자 동선을 분리해 공개하도록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	중앙
5.18	-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명에게 1인당 5장씩, 총200만장의 마스크 지원	
5.22	- 코인노래방, 게임장 등 집합금지 명령	
5.25	- <u>코로나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서울시 자치구 긴급회의(인권담당관 주관)</u>	
6.3	- <u>코로나 선제검사 실시(기숙사, 영어유치원 우선)</u>	
6.8	-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6.15	- 일반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집합제한으로 완화	
6.23	- 서울시 인권위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권고(7.25까지 이행계획)	
6.26	- 코로나-폭염 이중고 취약계층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지원	
6.30	<중앙방역대책본부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3판> - 성별, 연령, 국적, 동단위 거주지 비공개 - 개인별 동선 아닌 장소목록 형태 정보공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중앙
	-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하고 300억원 추경 편성(6.11 국가인권위 차별 결정)	
7.8	-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신청(7월중 지급)	
7.10	- 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재개 신청(방역수칙 이행 조건)	
7.15	- 사회복지시설 단계적 재개 발표	

2.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코로나19 방역과정 관련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되는 인권침해 사건의 효율적 상담 대응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권단체-서울시의 합의된 의견 반영

- 민간 영역의 인권침해사례,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 연계
-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조사과정에 참여 가능
- 결정통지 및 권고이행결과 인권단체 추가안내
- 인권침해 핫라인 신고내용

연번	신고날짜	내 용	처리결과
1	5.13	(00대학교병원) - 이태원 방문자 무료 검사에 대한 120 안내 내용 수정요청 - 선별진료소도 무료검사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현장 혼란 - 현재 익명, 무료 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내용 관련 부서(질병관리과)에 전달, 120안내 수정 등 처리완료	처리완료
2	5.14	(00구청 진료소) - 진료시간대 11:00~12:00, 진료 접수 담당자(남)가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라고 비아냥거리 불편함을 느꼈음	처리완료
3	5.14	(00구청 진료소) - 코로나19 관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00구청, 시 타 구청 및 지자체 등에서 통화를 받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에 대한 답변을 재차 말하게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처, 보존기간 및 폐기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가 통일하여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리완료 (민원회신)
4	5.15	(000 서울시 기독교교회장 국민일보 기고 관련) - 공무원이 신문기고로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격을 성행위로 축소하고, 동성간 성행위를 음란하다고 표현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장 -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권보도준칙의 원칙과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기에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접수 (시민인권보호관 병합 조사중)
5	5.15	(000 서울시 기독교교회장 국민일보 기고 관련)	
6	5.15	(000 서울시 기독교교회장 국민일보 기고 관련)	
7	5.15	(00구 보건소) - 익명검사 미실시 - 안내 중 방문지 정보 등 재차 질문	처리완료 (현장조율 및 25개 자치구 공문발송)

3. 자치구별 7.1. 방역중앙대책본부 정보공개 지침 준수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주요 개정내용〉	
○ (공개기간)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동단위)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장소·이동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자치구	공개기간 준수(삭제)	개인정보 비공개					장소 목록 통합 제공	접촉자 전원파악시 장소 비공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동)	직장		
〈서울시 인권담당관, 7.9기준〉								
1	X	O	O	O	X	O	X	O
2	O	X	X	O	O	O	X	-
3	X	O	O	O	O	O	X	O
4	X	O	O	O	X	O	X	X
5	O	O	X	O	X	O	X	X
6	X	X	X	O	X	O	X	X
7	X	O	O	O	X	O	X	O
8	O	O	O	O	X	O	-	-
9	O	O	O	O	O	X	X	O
10	O	O	O	O	O	O	X	O
11	O	O	O	O	O	O	X	O
12	X	X	X	O	X	O	X	O
13	O	X	X	O	X	O	X	O
14	O	O	O	O	O	O	X	O
15	O	X	X	O	O	X	X	O
16	O	X	X	O	X	O	X	O
17	O	O	O	O	X	O	X	O
18	X	X	X	O	X	O	X	O
19	O	O	O	O	X	O	X	O
20	O	O	X	O	X	O	X	O
21	O	O	O	O	O	O	O	X
22	O	X	X	O	X	O	X	X
23	O	X	X	O	O	O	X	O
24	X	O	O	O	X	O	X	O
25	O	O	O	O	X	O	X	O
미준수 계	8 (32%)	9 (36%)	11 (44%)	-	16 (64%)	2 (8%)	23 (92%)	5 (20%)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삭제 캠페인(송파, 노원)
- 자치구 일별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장소목록 통합 제공이 어려운 경우 X표시됨

4. 향후 과제

- 7.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침(3판) 개정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단위 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큰 과제는 해결 되었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적용의 차이 발생
-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 처리, 파기 규정의 부재로 기초 지자체에서 다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 향후 방역당국, 인권단체, 관련전문가로 회의 구성 및 논의 예정
(8월 중)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토론 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토론 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최 규 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위원장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최 규 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위원장

- 탈라 활동가와 서채완 변호사의 발제문에 담긴 문제의식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의료공백 문제와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함.
- 의료공백 문제
 - 열악한 공공의료의 문제점, 의료공백의 문제를 잘 지적해주셨음. 사실 의료공백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임.
 -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공공병상 비중은 2017년 기준 10.2%(OECD평균 70.8%)로 OECD 최하위임.¹⁾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전국의 공공병원을 전부 동원하다시피 하여 겨우 대응해온 상황. 즉 시급히 보완해야 함. 최소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함(이미 노무현 정부 때 '공공병원 30% 확충'을 약속했었는데 여전히 10%에 그치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음).
 -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서 확인됨. 인구 240만, 제4의 도시 대구·경북에서 1분기(3월 31일 24시 기준) 8,006명의 확진자가 발생. 당시 전국확진자 중 80%를 차지. 사망자의 경우 당시 154명으로 전국사망자 중 93%를 차지. 대구·경북에서 감염된 환자들 중 약 3/4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음(경증환자 제외).²⁾
 - 주목할 것은, 3월초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4,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2,300명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해야 했음.³⁾ 대구·경북은 병상수 자체만 보면 결코 취약한 지역이 아님. 2018년도 기준 지역인구 대비 병상 수를 보면 천명당 대구 15, 경북 16.6으로 전국평균 13.6보다 높음.⁴⁾ 그러나 대다수가 민간병원 병상이었던 것임(2017년 기준 대구의 지역인구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48, 경북은 1.71에 불과했음.⁵⁾ 결국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1) 윤강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건복지 ISSU&FOCUS 제3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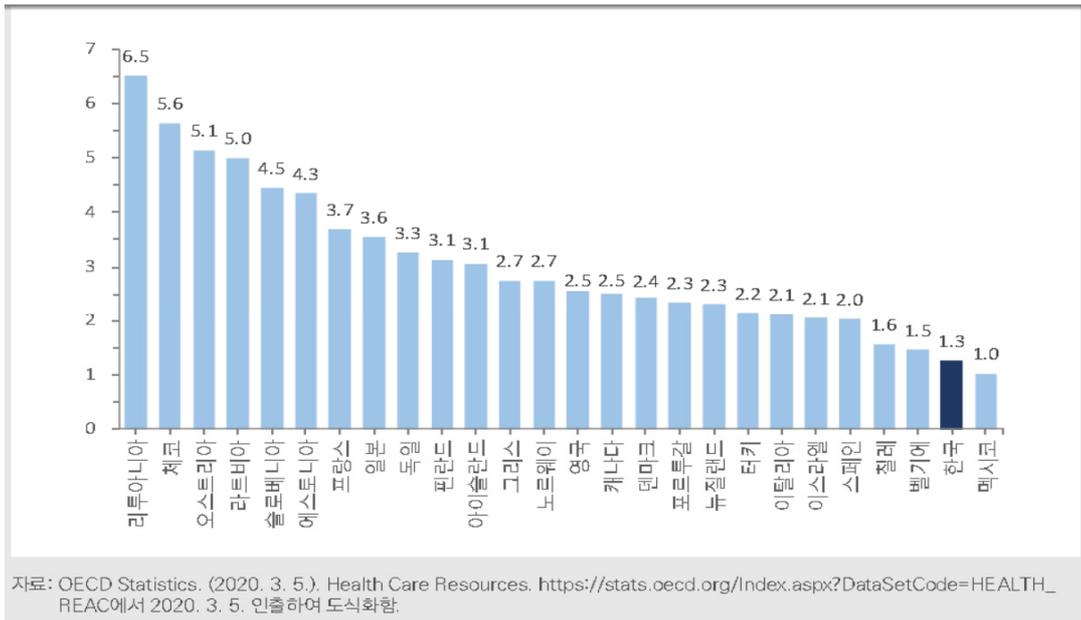
2) 2020년 7월 14일 기준으로는 대구·경북 합쳐서 확진자 8,053명으로 전체의 61.6% 차지, 사망자는 243명으로 전체의 84% 차지(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함)

3) 3월 4일 오전 11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례브리핑

4)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OECD 가운데 꼴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병상수는 일본과 1, 2위를 다툰다.

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2019, p.28.

인해 3월 중순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자 75명 중 17명이 입원도 못한 채 사망함.⁶⁾



인구 천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2017년 기준)⁷⁾

-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구·경북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이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가동한 결과였음. 즉,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던 아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그나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 즉 당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쫓겨나야 했던 환자들, 더불어 입원은 아니더라도 공공병원에서 관리를 받던 외래환자들 상당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 특히 빈곤층이나 HIV/AIDS 관리와 같이 주로 공공병원이 아니면 관리가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자들의 경우 의료공백 상태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온전히 의료공백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음.
- 실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HIV/AIDS감염인들로부터 이러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요청 문의가 많았다고 함. 심지어 심장질환 문제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였음에도, 공공병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입원을 받아주질 않았고 민간병원에서는 HIV/AIDS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나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이주민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 부산과 같은 큰 도시에서도 이주민의

6) 3월 16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93.3%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17명 역시 대다수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발생 현황 3월 16일 브리핑 참조).

7) 윤강재, 앞의 글, p.4

출산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대형병원만 몇 군데를 헤매야 했던 상황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음.⁸⁾

- 보건당국과 지자체 및 정부는 시급히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양적, 질적 조사를 진행하여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꼭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얼마든지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대표적 사례가 경북에서 발생한 정유엽 학생 사망사례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구·경북은 인구대비 병상 수 등으로 볼 때 결코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없음. 그렇기에 더더욱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큼. 다시 말해, 전국 어디에서든 급격한 감염병 확산이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사건은 현재까지 알려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사례인 만큼 이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 경과⁹⁾

- ① 3월 8일부터 3월 11일: 감기 기운이 있었으나 당시 열이 나면 일반의원을 직접 찾아가갈 수 없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해 복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 ② 3월 12일: 열이 40도 이상 지속돼 경산중앙병원(안심병원)으로 갔으나 선별진료소가 문이 닫혀 응급실로 이동.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항생제 해열제 하루 약을 처방받고 다음 날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받으라는 권유를 받음.
- ③ 3월 13일: 아침 9시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하고 X-ray 촬영함. 폐에 염증이 보인다고 함. 그러나 입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조금 더 강한 약을 처방했다고 하며 귀가시킴. 집에 왔으나 구토와 호흡곤란까지 호소하여 1339 전화하니 경산보건소로 연결해주고 경산보건소에서는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함. 경산중앙병원에 다시 문의해보라고 함. 오후 4시 반경 경산중앙병원에 연락하니 그제서야 소견서 써줄 테니 오라고 함. 이때 병원장이 나타나 증상이 심각해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함. 그러면 앰بول런스로 영남대병원까지 이송 부탁했으나 거부함. 저녁 6시 13분 영남대병원 도착해서 코로나 검사 또 시행. 폐 스텐트 시술 시행, 인공호흡기 장착
- ④ 3월 14일: 코로나 검사 결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계속 추가검사를 진행. 아침 9시 30분경 에크모 시술 필요하다고 함. 포항에서 에크모 빌려온다고 함.
- ⑤ 3월 15일: 어떤 의사는 소생 확률 아주 희박하다며 심폐소생 및 신장투석을 하지 않겠다는 소견서 받아감. 그런데 또 다른 의사는 왜 신장 투석하지 않냐고 하여 신장투석에 동의함
- ⑥ 3월 16일: 인공호흡기가 약 30초간 빠져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며 이는 병원 실수였다고 담당의사 두 명이 찾아와 고백함.
- ⑦ 3월 18일: 코로나19 양성판정 통보받음. 12시 21분 사망 선고함. 추후 일본에서 최종 음성으로 통보하였으나, 사망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취급되어 장례식장 찾는 것조차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함.

8) 2020년 7월 14일 '의료공백 사례조사를 위한 활동가 모임'에서 나온 관계자의 증언

9) 정유엽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지를 재구성함(병원기록 및 CCTV 등 증거자료까지 받아 일지의 신빙성 확인함).

- 각 지점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① 지점에서 응급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안심병원만 과다하게 지정하여 정유엽 학생처럼 열이 나는 환자들이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일부 병원에서 선제적 격리를 통해 응급환자를 받았음에도 정작 이러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동선 공개만 과잉제공되는 상황이었음.
- ② 지점에서 경산중앙병원은 자신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으면, 다른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거나, 최소한 응급 시에는 선제적 격리를 통한 응급환자 대응을 하고 있던 영남대병원에 갈 것을 안내했어야 했음. 실제 10분 거리에 24시간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었음.
- ③ 지점에서 1339나 경산보건소조차 열이 나는 환자의 응급조치에 대해 지역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경산중앙병원의 뒤늦은 X-ray에 대한 중증도 확인은 차치하더라도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엠블런스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민간병원의 코로나19 감염환자에 대한 전형적인 방어행태를 보여주는 것임(심지어 경산중앙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음).
- ④⑤⑥ 지점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당시 대구·경북에 환자가 폭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자원도 코로나19 감염환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됨. 보호자들에게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음압병실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움.
- ⑦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혼선은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의학적 논쟁이라 치더라도 장례식장 연계의 문제 등 발제자들이 언급한 추모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남.
- 이처럼 정유엽 학생 사례는 정보제공의 문제에서부터 안심병원 문제, 선별진료소 운영 문제, 1339 및 보건소의 부실한 지역 의료상황 파악의 문제, 민간병원의 방어적 행태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의 문제, 의료장비 및 의료진 부족의 문제, 환자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망라되어 있음.
- 이렇게 정비할 지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보건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결코 정유엽 학생 한 개인의 비통한 죽음을 진상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님. 유사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1분기 대구·경북지역은 작년보다 900여명의 사망자가 증가하였음. 퍼센트로는 약 10퍼센트 초과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초과사망률(전국 평균 6%)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치임.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24시기준으로 대구·경북 사망자수는 154명임. 즉 이 숫자

를 빼더라도 750명 정도의 초과사망(excess death)이 있었다는 얘기임. 전문가들 역시 이 초과사망의 주요 이유로 의료공백을 주목하고 있음.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대구·경북은 높은 초과사망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이 방역 대응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질환자들의 사망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함.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다”며 “초창기에 대구·경북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현장에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¹⁰⁾

- 나아가 정유엽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음.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지 않은 경북에 살고 있었고 정보접근성도 낮지 않은 나이였음. 즉 무의촌 지역민 또는 장애인 등 정유엽 학생보다 물리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고령자, 이주민 등 정유엽 학생보다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기저질환 등으로 정유엽 학생보다 신체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노숙인, 미등록이주민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방역·치료 망에 제대로 포착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려해보면 드러나지 않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를 기점으로 삼아 전국적인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이것이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한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방역에 있어서의 인권적인 접근의 중요성

- 필자는 3-4-5월 두 군데 선별진료소에서 활동을 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방역에서의 인권적 접근의 중요성을 덧붙이고자 함.
- 선별진료소에서 ‘신천지’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될 때, 텐트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지에 ‘신천지’라고 크게 적혔을 뿐 아니라 별표까지 기재됨. 심지어 이 역학조사지를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텐트로 들어옴. 즉, 역학조사지에 기입할 때 당사자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가해질 수 있고, 이걸 직접 들고 텐트로 오며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 또다시 낙인효과가 가해질 수 있음. 얼마든지 약자나 특수문자 등으로 암호화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응에 있어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선별진료소마다 구체적인 역학조사 방식과 방역팀 내 전달 방식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고려한 공통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음.
- 이러한 반인권적인 접근은 한 개인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당사자 또는 특정 집단의 접근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

10) “1분기 대구·경북서 900여명 ‘초과사망’...코로나보다 필수의료 공백 피해 더 커”, 라포르시안, 2020.6.4

할 수 있음.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역학조사나 검사가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작은 지점이라도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반인권적인 접근은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되어야 함.

- 즉 방역과 관련된 정책 및 법안, 세부 지침 및 매뉴얼 마련에 있어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에서 일부 언론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는 방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당시 언론에서 조장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역 장벽을 엄청나게 높였음. 실제 상당한 감염확산을 초래한 인천의 대학생이자 학원 강사였던 분은 초기 역학조사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직업과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함. 이처럼 반인권적인 사회적 차별과 혐오 조장으로 인해 방역 장벽이 얼마나 높이는지는 선별 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공중보건 의사가 4일이나 이태원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남발하고 있는 고발 역시 문제임. 위에 언급한 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인천시가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고발대상은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언론이 되어야 할 것임.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발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염으로 인한 의학적, 사회경제적 고통과 자신으로부터 초래된 감염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버거운 피해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덧붙여 이태원발 감염자들이 직장을 솔직하게 이야기 못한 이유와 더불어 직장에 며칠만이라도 안 나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만약 역학조사에서 두려움에 이야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감염확산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한국의 노동조건 상 대다수 직장에서 증빙을 하지 않고서는 며칠 못 나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이렇게 되면 절대 남들이 모르게 검사를 받을 수가 없음. 검사를 받으면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자가격리를 해야 함. 즉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직장에 검사를 받아야 해서 며칠 쉬겠다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차별 금지법과 같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접근과 더불어 이미 유럽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1주일 동안은 특별한 증빙(예를 들어 진단서)을 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목 차

I. 서론	5
1. 서론	7
2. 개요	10
II. 본론	15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21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2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29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37
1. 정보인권	38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46
3. 주거의 권리	59
4. 노동의 권리	66
5. 사회보장의 권리	79
II-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89
1. 기업과 인권	90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98
II-4.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107
1. 낙인과 혐오	108
2. 여성	114
3. 어린이·청소년	124
4. 난민·이주민	131
5. 장애인	138
6. HIV감염인	147
7.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권리취약노동자	154
8. 성소수자	164
9. 수용자	172
III. 결론	181
1. 결론	183
2.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185

I 서론



1. 서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인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위험 요소가 항상 지금과 같은 위기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빈약한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름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공백인 안전망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지만, 코로나19라는 위험 요소와 결합하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흔히 재난에 따른 위기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거나, 확대시켜 온 국가나 기업 등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긴급’ 대응이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사회의 긴급한 대응과 조치를 목격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치료와 격리·집단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같은 규제 중심의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정책은 감염병의 더 큰 확산을 막아내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영업 활동은 선별적으로 규제되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동선이 관리되고 공개된다. 구체적인 직업, 종교, 국적 등 불필요한 정보를 명시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어떤 정체성이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전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하게 한다. 감염인을 격리·감시하고 ‘이탈’자 강력처벌을 공표하며, 급기야 이탈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국가가 ‘위험’의 좌표를 찍어준다. 이를 통해 전염병은 개인화되고 위험의 좌표는 낙인이 되어 배제의 이유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대응이 지금의 긴급상황이 지난 후에도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 대응은 모여서 연대하고 말할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된다.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폐쇄되고 영업장소마저 규제된다. 감염병이 대량 확산이라는 상황에 이르고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일수록, 우리는 거리 두기가 고립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와 자유의 균형을 찾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인 금지와 규제가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난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책의 문제점은 그동안 정부가 묵인했던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코로나19 초기, 긴급한 과정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 정부에 의해 제공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대

상에서 누락 된 이들이 있었다. 이주민, 난민, 홈리스, 트랜스젠더, 수용자 등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구성원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배제되는 이들이 존재했다. 일터에 대한 안전조치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 등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긴급’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긴급할 때일수록 배제되는 누군가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최우선 되어야한다.

위기는 평등하지 않기에

감염 확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진실이다.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청도 대남 병원의 사례처럼 폐쇄 병동에서 감염이 확산되었고, 장애인 시설은 감염을 이유로 전체 코호트 격리를 당했다. 폐쇄된 곳에서 멈춰선 삶들은 집단 감염의 대상이 되었다.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노동자가, 요양 시설의 노인과 약자들이 집단 감염되었다. 빈곤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 하던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이들과 HIV감염인이, 아동 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없던 존재가 아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바이러스라는 매개를 만나, 그 존재가 드러났을 뿐이다.

불평등한 위기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정한 집단에서 감염 확산이 발견되었을 때, 사회는 마치 감염인의 정체성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라는 듯 그들을 공격했다. 지자체는 재난문자에 해당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언론은 그보다도 빨리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었다. 애초에 비가시화 되어있던 소수자 집단은 ‘사회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 갑자기 소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는 멈추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

시지를 내었으나, 정작 혐오와 낙인이 일상이었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공허한 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각종 재난의 비상상황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현재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일을 준비한다면 또 다른 재난을 만드는 시작일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 받는 사회를 원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누구 하나의 권리가 무너지면, 그것은 모두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먼저 살피고, 뭣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 보이지 않는지 살피는 것,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 사회적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재난을 넘어서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그 책무는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결핍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재난의 발생, 해결 과정, 그 이후 재난의 상처를 겪은 모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 시민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는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많은 삶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해왔다. 다행히 코로나 19는 초기 방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방역 조치로 인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조건인 한국사회 구조와 방역이란 이유로 유예되고 무너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권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잊고 있는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갑작스레 다가온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놓치기 너무 쉽다. 그렇기에 일상적으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이 기본이 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긴급조치를 취함에 있어 모든 조치 시행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기간은 명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에 따른 안전장치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범위를 최소한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시작된 강력한 긴급대책과 통제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권리는 쉽게 복구되기 어렵고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에서 또다시 권리 박탈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 그러하기에 긴급한 시기일수록 더욱 인권의 원칙에 준수하여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라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함께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강한 제재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다시 재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일부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감염인과 사망자는 공지된 숫자와 공개된 몇 가지의 정보로만 이해된다. 바이러스 감염인이 느낄 고립감과 불안함에 대한 공감은 사라지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감염인을 배제하고 타자화할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 나 또한 배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난을 개인화하는 정부 정책이 낳은 효과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와 감염병 위기는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한다.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미 수많은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이후의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재난

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재난 이후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사라지면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것처럼 생각할 때, 재난의 개인화는 심화된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바이러스를 겪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을 개인화하면서 사회가 망각할 때,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화하지 않게 된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가 더욱 중요하다. 감염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각자도생하는 안전을 넘어 권리로서 안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난 피해자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감각,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로소 가시화된 불평등을 넘어, 평등하게 함께 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길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원칙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2. 개요

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구성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결합할 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토대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봉합한 채 그려지는 미래는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오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대응 과정에서 유예되는 권리들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게 더욱 위협이 가중되는 과정을 짚어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위기 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 차별금지과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은 이번 보고서의 서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한 이유와 보고서 안내 등 개략적 내용을 담고 있다.

II장은 이번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책무, 방역과 대응 과정에서 유예된 권리,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은 크게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

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해당 주제에 대한 권리와 원칙,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사회적 제안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1)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방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진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와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구분했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된 공공의료의 공백을 짚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의 과제이다. 생명을 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치료와 의료과정으로의 평등한 접근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 생명을 구하는 과정은 인권의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인권은 모두의 생명을 위한 가치이자, 더 나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지만,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방역과 인권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방역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2) 위기 상황을 이유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유예되고 있다. 긴급성을 이유로 모든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를 보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장은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의 원칙과 코로나19에서 드러난 문제점, 사회적 제안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 투명한 정보공개는 재난 상황에서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원칙 없이 과도하게 행해지는 정보공개는 두려움과 공포를 더욱 부추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과도한 동선 공개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 행해진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감염병을 이유로 주요 도심의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무조건적 차단과 금지가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인 사회적 소통과 말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일률적인 금지가 아니라 권리 제한 방식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집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위생의 문제는 감염병 상황에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감염병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제한의 문제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속되는 강제퇴거의 문제는 안전하게 생존해야 할 권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위기 상황에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고와 실업을 비롯해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노동의 권리는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노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위기의 지원에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할 삶의 조건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를 일차적으로 해야 한다.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사회보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실업과 소득단절 상황에 내몰고 있다. 사회보장의 권리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

요하다.

(3) 코로나19의 위기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과 언론의 의무를 제시하였다. 기업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언론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서술하였다.

○ 코로나19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기에,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위기를 또 다른 이윤추구의 기회로 삼거나 부실을 넘어서기 위한 돌파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일국에 해당하는 위기가 아니기에,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국가의 역할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언론은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재난과 위기 시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코로나19라는 위협 요소와 혐오, 차별이 더해져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상황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와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짚어보고, 위기 이후 변화해야 할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순서는 ①낙인과 혐오 ②여성 ③어린이·청소년 ④난민·이주민 ⑤장애인 ⑥HIV감염인 ⑦노동자 ⑧성소수자 ⑨수용자 등이다.

III장은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

식은 무엇인가. 현재 드러난 불평등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기는 반복될 뿐이다. 우리는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고통과 상처에 주목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권의 시각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간 살펴야 할 문제도 있으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온 과제들 역시 포함하고 있다.

2) 진행 경과

(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구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동으로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 속에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총 21개 인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2) 진행 경과

3월 11일 첫 모임이 인권재단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는 고민들과 방역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례 설문조사 및 취합과 함께 총 5차례 전체모임을 진행했다. 전체모임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제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단체/영역별로 고민되는 지점과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과 함께 대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 작업을 시작하였다. 각 영역의 기본적인 원칙과 과제들은 국제 규약과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권고와 지침을 참고했다. 한국의 인권현실을 통해 도출해냈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우리는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영하였다. 집필된 원고를 바탕으로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었다.

|| 본문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안전에 기초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은 긴급성과 적절성을 갖춰야 하며, 정책을 시행할 때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¹⁾ 국가는 인권에 기초하여 시민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는 위급한 시기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생명과 존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급상황에서는 더 큰 권리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인권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인권과 방역의 불가분성을 확인하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1) 유엔사무총장실,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04. 2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1. 코로나19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 ☑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프면 쉴 수 있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의료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는 권리 역시 포함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안전’의 보장과 증진,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건강권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적이지 않고, 저렴하고,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²⁾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많은 국가들이 적절한 초기 방역을 하지 못했고, 치료적 대응에도 공백을 보였다. 이는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둔 질서 속에서 민영화와 긴축으로 공공의료를 붕괴시킨 결과라 볼 수

2) 휴먼라이트워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인권 문제」, 2020. 03. 19., <https://www.hrw.org/news/2020/04/14/covid-19-human-rights-checklist>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로 국가들의 건강권 보호 능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대응을 잘한 나라로 손꼽히지만, 방역대응이 비교적 잘 된 것일 뿐 치료영역에서는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의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초기대응이 빨랐던 한국의 현재 상황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도 여름에 잠잠해지더라도 가을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고, 순환적 성격 때문에 계절성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기온이 높아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반면 정상적인 집단면역(herd immunity) 형성을 가능케 할 백신의 빠른 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유행에 대한 대응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경주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발 빠르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접근권 침해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구에서는 3월 초 4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23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까지 발생한 사망자 75명 중 17명(23%)이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돼 지역거점병원이 없는 서부 경남에서 특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환자 4명 중 1명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는 병상이 부족한 지역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OECD 평균보다 2.5배나 병상이 많은 한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병상이 많은 지자체였다. 부족한 것은 공공병원이었다. 대다수 민간병원들이 환자를 거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 수용을 강제하지 못했다. 4월 중순까지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한 반면, 전체 병상

중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나머지 1명만 진료하는 데 그쳤다.

(2) 코로나19 외 응급환자·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접근권 침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전국 대다수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주로 저소득층인 기존 환자들이 사실상 쫓겨났다. 이들이 제대로 못 다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 또 지역에서 유일하게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던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저소득층이나 HIV 감염인 등이 갈 곳을 잃었다.

응급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속출했다. 17세 청소년 정유엽 씨가 사망한 사건이 단적인 예였다. 그는 40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확진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가 사망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아닌 고열환자도 치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올 정도였다.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었다면 이런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이 자랑하는 대형 민간병원들은 거의 아무 역할도 못 했다. 심지어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차단하는 데만 급급했다. 3월 초 한 환자가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이 논란이 됐는데, 기존에 다니던 서울아산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은 대구·경북 환자들에게 2주 간 진료 연기를 권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매머드급 빅5 병원들이 겨우 10명 내외의 코로나19 환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접근권 침해의 문제는 결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저소득층, 운 나쁜 일부 응급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2차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하면서도 공공병상 확충에 아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생명과 안전

의 위기에 처해있다.

(3) 중환자 병상의 부족

환자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환자 병상 확보다. 한국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 정부는 4월 초 대형병원 97곳의 음압 중환자실 100~110개를 확보했다며 하루 50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면 하루 50명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지금이라도 중환자실을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중환자병상이 10.6병상 수준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미국(34.7개)과 이탈리아(12.5개)에 비해서도 낮다. 독일은 코로나19 위기로 중환자 병상을 10만명 당 30개에서 약 45개 수준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한국도 중환자 병상을 적어도 2배까지는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민간 병원을 공공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4) 의료종사자의 부족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간호사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대구/경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간호사들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급하게 투입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예방/치료 교육도 없이 중환자 병동에 투입되었고, 파견 간호사들의 경우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했다. 개인 보호장비 역시 부족했고, 고강도 노동이 지속 되면서 집중력이 저하돼 치료 제공 뿐 아니라 스스로 감염 예방도 어려웠다. 위급상황에서만 도드라져 보이는 문제로 보이지만, 한국의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일상에서도 만연한 문제였다. 민간병원의 인건비 절감과 의료 상업화·영리화의 책임은 간호사와 의료종사자들의 과노동으로 전가되었다.

3) 생명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공공병상, 공공의료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대구 환자급증 당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서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공공병상, 공공병원의 부족, 필수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였다. 대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 대전과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에 공공원 병원을 확충하고 지자체별로 공공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늘려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도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가하게 설계 비용 책정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화될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즉각 설립해야 한다. 이는 공공병원에 반드시 지정 설립되어야 한다. 민간병원으로 지었다가는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감염병 관리는 뒷전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의료인 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것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내년부터 당장 공공보건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간호인력의 경우 한국은 병상당 활동 간호사가 OECD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병원의 인건비 절감책 때문이다.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개선해야 하고, 중환자병상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된 간호인력을 갖춰 환자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또 의료진 보호장비와 필수의료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은 비닐로 의료진 보호복을 대체하고 있고 스페인은 결국 확진자의 15%가 의료인일 정도로 의료붕괴가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지난 유행 당시 방호복과 마스크가 부족해 의료진이 가운만 입고 진료하거나 방호복을 아끼려 휴식 없이 환자를 돌봐야 했다. 이탈리아처럼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2)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위기 시 의료접근권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만 가능한 소리다.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에서 거의 최하위라,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많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은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미증유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한 고통이 심화될 것이고 의료접근권은 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대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의료급여가 현재 소득하위 2.8%에서 빈곤선 기준(14%)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절대 빈곤선인 7%까지는 높아져야 한다. 또 국가재난기간 중이라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비급여 포함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즉 사실상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감면돼야 한다. 이 부담은 전액 국고로 해야 한다.

(3)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가 팬데믹인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윤을 추구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치료제와 다양한 의료지원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치료제의 경우, 특허를 제한하고 정부가 강제실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생산시설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서 위기상황에서 이윤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4)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에는 미국 경제 제재로 국내 진단키트가 수출되지도 못했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의 긴장과 제재를 통해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만큼 치료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위험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가됨을 확인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해 시급히 의료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신병동, 요양병원 등 과밀한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단으로 수용하고, 건강권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병이 닥쳤을 때, 또다시 집단 감염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쉽게 쉴 수 없는 여건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휴가 체계가 필요하다. 쉼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노동자와 돌봄노동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2. 코로나19와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인권의 원칙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는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공개하는 것을 합리화했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권리가 최우선으로 자리하자 다른 여타의 권리는 마땅히 희생될 수 있는 가치가 되었다. 권리침해 당사자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도 쉽게 생략되었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정보가 열람되고, 동선이 공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방역을 성공하게 한 요소이기도 했지만, 기본권이 어떠한 합리적 절차도 없이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권리 간 충돌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역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들은 ‘하위 개념’으로 치부되었다. 권리는 경합할 수는 있으나, 그 가치의 경중을 줄 세워 선후차를 따질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논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가격리 등 강제적 행정조치에 있어서 기본권이 어떻게 제약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기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권은 시대마다 변한다.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일상을 영유할 수 있는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자유와 생명, 안전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까지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 및 성격, 요건과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과도한 국가의 강력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격리, 자가격리’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었고, 자가격리 앱, 전자팔찌, 구상권 청구 등 개인의 이동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과 조치들 역시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 정도로 취급된다.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반하는 개인의 행동은 범죄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조치를 어기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이익에 반한 자’로 사회에 얼굴을 보이게 되는 낙인효과를 만들었다.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감염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오히려 검진과 확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격리와 기본권침해’,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구도의 양자택일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기본권 침해 제한의 원칙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수한 조건상 감염과 전파의 위험으로 인해, 격리와 이동의 자유의 제약이 두드러진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인권의 기본원칙이 후퇴되지 않는 선에

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생명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시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강력조치들 사이에 비어있는 인권의 지점들을 짚어내며,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한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에 맞는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지 않되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민주적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³⁾ 또한 공중보건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은 적법하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서도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다.⁴⁾ 특히, 「자유권규약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⁵⁾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감염병 통제를 위한 보건조치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과 이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간의 비례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3) Mann, J.M., et al. 「Health and human rights」. 『Health and human rights』(1994), p6-23.

4)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③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져야 하고,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① 비례원칙, ②입의성의 원칙, ③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5) ① 해당 제한은 법에 의거하여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하고, ② 제한은 합당한 일반이익 목표(legitimate objective of general interest)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제한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④ 동일한 목표를 도달하게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⑤ 제한은 자의적으로, 다시 말해,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차별적인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 「긴급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MSEHPA)과 관련 주법, 판례 등이 제시하는 원칙 (미국)

격리는 헌법상 개인의 평등한 보호와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격리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특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적법절차의 보장상 격리는 적절한 통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격리가 가지는 중대한 권리 제한 및 잠재적 낙인효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적 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격리의 이유, 방법, 기간, 장소,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서면 설명이 있어야 하고, 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와 그 절차의 최소침해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자에게는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조치를 포함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격리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격리시설은 가능한 편안하고 제약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격리자에게는 격리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고나 임금감액 가능성, 직장에서의 낙인효과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격리

2020.6.9.00시 기준 확진자 11,852명 중 완치(격리해제)자는 10,589명, 치료 중(격리 중)인자는 989명, 사망자는 274명이고 누적검사자는 1,008,538명이다. 코로나19발생시부터 현재까지 최소 수만명의 시설격리, 수십만명의 자가격리 추정이 가능하고, 결국 수십만명이 구금 혹은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자발적 보호인지조차도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격리’로 지칭되는 경우들도 있다. 지자체들이 얘기하는 ‘예방적’ 격리도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강제성을 떨 수는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다.

법적 의미의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개별 감염병에 관한 격리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⁶⁾ 모두 형사 처벌의 근거조항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격리조치가 이러한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이러한 요건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격리의 절차 및 처우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감염병예방법」령은 자가치료에 대해서 자가치료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린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통해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및 주소, 근거 법률조항, 거부 시 형사 처벌 등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22호서식).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관련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제42조 제5항),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의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구제청구권(제42조 제10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격리의 절차도 증표의 제시, 격리의 통지, 조사

6) 「감염병예방법」은 격리대상자로 ①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제41조 제3항),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46조), ③ ‘조사거부자’(제42조 제7항), ④ ‘감염병 의심자(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상 특정 지역 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2조 제15의2호) 등을 들고 있다.

거부자의 인신구제청구권 등이 그 규정 내용의 전부이고 격리에 대한 독립된 심사, 변호인 조력권, 이의신청권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격리자의 처우도 일부 생계 지원이나 입원치료 지원 등에 대한 규정만 있다.

격리자는 본인의 잘못 없이 감염병에 노출된 피해자다. 감금으로 인해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국가의 지침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리적,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숨죽인 채 오열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격리자는 동시에 감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최악의 (잠재적) 가해자, 죄인으로 낙인찍힌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초기부터 피해자로 여겨지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격리됐고, 사망한 가족의 장례도 지키지 못했다. 지역사회 복귀한 후에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심지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일부 의심환자들은 시민적 덕성이 부족한 이들로 비난을 받았다. 감염의 공포와 격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의심환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을 격리하는데 바빴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환자, 가족, 일반시민들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대한의학회장), (2015.8.31.)

(2) 자가격리 앱, 전자팔찌 부착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문제

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다양한 행정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자가격리 앱, 전자팔찌와 구상권 청구 등 그 조치가 과도한 부분이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자가격리 앱을 도입하고 이탈자에게는 전자팔찌(안심밴드)를 부착하거나 이탈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실행을 구형하는 등, 방역 관련 행정조치들은 갈수록 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감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

되어야 할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방역대책이 마련될 때, 사회의 책임은 방기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며 처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방역 대책 바깥의 사람을 ‘공공의 안전을 외면한 자’, ‘바이러스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자’, ‘모두를 위협에 빠뜨린 자’의 공식으로 몰아가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촉발시킨다. 질병에 대한 방역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격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언

(1)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i) 그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ii)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iii) 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격리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의 명령 혹은 권고 시 그 법적 근거와 강제성 유무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 동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격리의 요건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격리의 내용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격리대상자는 이러한 격리의 요건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개별적인 지침의 내용은 어떻게 이 법률요건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5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구금에도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에도 적용된다.

(2)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비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제와 관행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격리자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중 삼중 격리시킴으로써 격리자 및 비격리자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켜 온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위기 혹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포와 혐오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격리와 같은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어떻게 마련되고 관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법제와 관행, 그리고 인식의 개선이라는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코로나19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는 다르게 적극적 봉쇄조치 없이 최소한의 이동만을 제한하고, 선제적인 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고도의 감시사회라는 토대 위에 안심 밴드, 구상권 청구, 처벌로 이어지는 강력조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염병이라는 긴급한 시기에 모두의 안녕과 생명을 위해 인권은 잠시 접어두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한번 놓친 권리는 회복하기 힘들고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강력한 조치로 소환된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인권의 원칙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장에서는 감염병 방역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강력한 조치들 사이에서 유예된 인권의 원칙을 살펴보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방역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와 정보인권

-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 ☑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 ☑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한국사회의 특징과 정보인권

디지털 환경 혹은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의 가치는 옹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 중에서도 정보의 유통에 관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들을 묶어서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이라고 통칭하고 있다⁷⁾.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정보인권의 개념에 대해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7)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2013).

현재 한국 사회는 고도로 디지털화 되어있으며 정보통신 기기에 의한 자동화된 정보 수집, 초거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보다 쉽게 소비자나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일수록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보호, 반감시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 제한의 원칙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인권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하며, 평가된 위험에 비례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의 정보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례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스템이 동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긴급대응으로 차별이 발생해선 안 되며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유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⁹⁾.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조치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엔 외에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이하 ‘EDPB’) 역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¹⁰⁾. EDPB는 예외적인 사태에서

8) Michelle Bachelet, 「Coronavirus: Human rights need to be front and centre in response, says Bachelet」, 2020. 03. 06.,
<https://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668&LangID=E>

9) 유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응하여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유지하라」, 2020. 03. 16.,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2&LangID=E>

10) EDPB, 「예외적 사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해야」, 2020. 03. 16.
<https://edpb.europa.eu/news/news/2020/statement-edpb-chair-processing-personal-data-co>

도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목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보존 기간 및 처리의 목적 등과 그 주요 기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도 확진자 및 감염자 동선 파악 또는 특정 지역 개인에게 공중보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위해 수집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계하는 익명화 방안을 고려하고, 익명화된 정보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법 구제권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달성할 목적을 고려해 항상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는 목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포함해 모든 의사결정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보관기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ntext-covid-19-outbreak_en?fbclid=IwARONDZqod74uP8vsZn3aM_fHpRbjfO84PsAMfCwjlmSP
E0B3UrdsObZLBMg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확진자 동선 공개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사회적 질타를 계기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투명성으로 변화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는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개개인이 식별될 위험을 높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감염보다도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이나 추가 피해를 두려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¹¹⁾. 결국 사적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일이 개인에게 낙인을 찍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 과도한 정보수집 및 관리 규칙 부재

확진자 동선과 파악을 위해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재적인 감염자로 취급되는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몇 시간씩 걸리던 동선 파악 작업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연계시스템도 개발됐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평

11) "「신종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주위 비난 더 무서워」, 『연합뉴스』, 2020.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43100017>

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 3월경 보건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기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종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된 관리 및 파기 규칙도 없이 계속 집적되고만 있는 만큼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3)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된 것이다.

확진자별로 구분해 동선을 공개한다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별 동선이 아니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만을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확진자 수가 적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각 주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어느 국적의 사람인가보다는 국적과 무관하게 특정 국가 방문 후 입국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 딸, 사위, 처제 등 확진자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함께 식사를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즉, 확진자와의 관계보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염병 대응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정부는 약속한 바대로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가 연계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등도 역시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파기돼야 한다. 또한 데이터 파기 시점을 정확하게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파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감염병예방법」 76조의2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건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규정(제76조의2 8항)하고 있을 뿐, 보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의 규정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58조 1항 3호에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코로나19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원칙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된다. 또한, 집회는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문화적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회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우리의 활동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집회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집회를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야 하는 것, 더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언론 브리핑과 행정명령, 법률 적용 등을 통해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이런 과정은 집회 금지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만들면서 정당화되었고, 안전과 집회의 권리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삶과 사회, 권력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한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위축되었다. 권리들이 서로 긴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권리들이 양립하도록 하기 보다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권리를 존중·보호·실현시킬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집회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비롯해 사회적 인식 등 사회적 환경을 만들면서 권리를 촉진하는 일을 포괄해야 한다. 집회가 가능하도록 애쓰기보다는 안전을 이유로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외면이거나 실패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집회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원칙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최대한 제한 없이 향유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만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제한이 권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한은 규범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의 적용을 허용하는 법은 정확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그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무제한적 재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¹²⁾

12)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7호: 이동의 자유, 1999, CCPR/C/21/Rev.1/Add.9, para 13., <https://undocs.org/CCPR/C/21/Rev.1/Add.9>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되면서 많은 국가가 사람들의 밀집과 접촉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회는 공동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례없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집회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집회 본연의 성질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성이 높다 하더라도 제한조치가 인권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적 집회의 제한에 있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대한 공동보고서>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평화적 집회에 부과되는 제한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공식적인 근거 법률에 따라 제한이 부과되어야 하며, 제한을 부과하는 정부 당국의 임무와 권한 역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집회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이어야 한다.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제한은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목적과 우려에 특정된 제한이어야 하며, 제안된 집회와 관련된 모든 범주의 권리들이 분석, 고려되어야 한다.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도 가장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 당국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하며, 집회에 대한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완전히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본질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금지로 인하여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기 때문이다.¹³⁾”

최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현재의 공중보건 위기의 상황에서 인권존중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건강 비상 상태가 인권 침해의 핑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탄압하는 데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에 의해 야기된 공중 보건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부과된 제한은 없어져야 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13)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크리스토프 헤인즈(Christof Heyns),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유엔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대한 공동보고서」, 2016, A/HRC/31/66, para 30., <https://undocs.org/A/HRC/31/66>

권리에 대한 완전한 향유는 복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¹⁴⁾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권리 침해

① 집회 금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2020년 2월 21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회금지에도 집회를 진행한 7개 단체를 고발했다. 이어 대상 장소를 확장¹⁵⁾해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2월 27일)를 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고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서울시에 이어 동작구(2월 28일), 영등포구(3월 14일), 동대문구(3월 18일), 서초구(3월 24일), 강남구(5월 15일), 종로구(5월 26일)가 관내 집회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집회가 금지된 곳은 재개발 지역이거나 국회, 기업 앞 등을 비롯해 기존에 집회가 이어져 왔던 장소들이다.

대구시는 정례브리핑(2월 26일)을 통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¹⁶⁾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수인의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14)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 10대 원칙」, 2020.4.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eType=EmailBlastContent&eId=b175afc0-0cf5-4f8b-93e7-f7038c60108a>

15)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로 확대

16) 대구시는 3월 6일 대구 시내 전역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했다.

초래'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이용해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17)가 이어지자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3월 27일)를 냈다.

성남시도 15곳에 대해 집회를 금지(3월 12일)했다가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3월 31일)하면서 경찰에 집회 개최시 강제해산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전 지역으로 집회금지를 확대한 이유가 대형 집회는 줄었지만 소규모 집회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청 주변을 관할 구청인 남동구청의 고시(4월 10일)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인천시청은 시청사 부지에서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집합금지 고시(5월 20일)를 했다. 고시는 사유부지 내에서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하며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같은 날 시청 광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촬영, 기자회견 등을 예외로 둔 변경고시를 했다.18)

집회금지 고시는 아니지만 광주시는 보수단체가 5월 6일과 16~17일에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와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자 5월 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19)했다.

이렇듯 집회 금지 조치는 여러 광역시와 시·군·구 단위로 확대되었고, 주요 집회 장소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외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

17) 「생계지원 당겨라' 반발에 "집회땀 고발" 엄포놓는 대구시», 『오마이뉴스』, 2020.3.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7031

18) 「"집회 금지, 촬영은 OK?" '이중잣대' 인천시, 결국 계획 변경», 『인천투데이』, 2020.5.22.,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32>

19) 「광주시, 보수단체 집회예고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한겨레』, 2020.5.4.,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43599.html#csidx1706e0e5f8ac12eb710fbae673648d3>

하고 금지 기간은 대부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채 현재(6월 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② 강제 철거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2월 27일)와 함께 종로구는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농성장 천막 7개동과 집회물품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추모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유족이 천막 안에 있는 상태로 철거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튿날에는 상수원 의암호 춘천레고랜드 부지 침사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공사를 주관한 현대건설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전시회를 진행 중인 중도본부의 전시물품을 철거했고, 3월 3일에는 홍천군이 군청 주차장에 양수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재개발에 맞서는 현장에 대한 강제집행도 이어졌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해 인근에서 노점과 농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2월 21일)과 서울시 천호 1구역(3월 2일), 대구시 중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민들(3월 30일)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보건을 위해 집회의 권리도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근거 법률규정이 모호해 집행이 무차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집회금지 조치는 집회의 가능성을 보장한 다른 국가와 비교된다. 미국

워싱턴DC는 대규모 집회를 "특정 장소에 1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로 규정하고 대규모 집회와 콘퍼런스, 회의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25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제한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집회와 5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를 금지했다. 캐나다는 개학과 함께 대규모 집회 부분 허용과 공공 집회 규제 해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 외의 국가들도 집회 전면금지가 아니라 일정 인원제 제한을 두는 방식이나 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상황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조치에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기가 초래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협과 해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노동절 집회를 예정했다.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방진복을 입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를 금지했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었다. 반면 폴란드 바르샤바와 포즈난에서는 2m 간격으로 줄지어 현수막을 들고 낙태 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고, 최근 세계 곳곳에서 〈Black Lives Matter〉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시드니 연대 집회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공중 의료 명령 위반이라며 주 최고법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눠주며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회불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항소에서 승소해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집회금지가 최후의 수단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집회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 측과 논의를 했는지가 국가의 의무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과 노력 없이 금지부터 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① 집회의 권리 제한의 법적 근거로 인한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

집회를 금지하고 강제철거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종교행사 등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의 주체로 나선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는 사실상 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 권한으로 지자체는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제한보다는 일률적인 금지를 우선 적용했다.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와 집회의 권리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적인 규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침해된 권리가 구제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②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집회금지

각 지자체의 집회 금지조치는 일부 지역 또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다.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금지 역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적인 측면에서 금지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기자회견은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 역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규모가 작은 집회이거나 광장 같은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집회라면 금지보다는 집회가 가능한 방향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집회를 개별적으로 살펴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치 하고 있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기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아닌 최대화한 것이었다.

4월 20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추기로 결정을 했고,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지만 집회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다.

3)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엄밀히 하자면 이것은 물리적 거리두기이며 사회적 연대와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외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보되거나 민주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겪는 위기이기에,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민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의 자유는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한 행정 권력의 일방적인 조치를 견제해 민주적이고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들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감시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위기라는 이유로 행정 권력이 남용되기 쉽고, 임시적인 조치는 위기가 가라앉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는 집회를 통해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은 고립된 개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공동의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방역조치로 각자의 공간에 머무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 감염병의 위기가 삶의 위기로 이어진 사람들, 방역조치가 닿지 않는 사람

들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와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있어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공동의 문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취약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집회는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안전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공동의 해결을 위한 힘을 얻게 된다.

집회의 자유 보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문제-불평등,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 편견과 혐오, 공공성 등-가 확인되었다. 재난이 일상을 중단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돌아보게 된다. 위기가 확인시켜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존재해있었던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 방역조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위기 상황이 정리된 이후로 미룬다면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현재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실천 중의 하나가 집회이다. 공적인 공간으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야 사회적 논의가 가능해지고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위해서도 공적인 장을 튼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의견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의 문제에 있어 정부 지침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안을 요구하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방역은 정부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조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시민사회·공동체의 문제제기와 개선요구를 살피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는 타인의 삶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안전과 연결됨을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목적에 비례하게, 법에 근거해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²⁰⁾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회적 연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집회 금지의 남용이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정부의 재량 행위를 최소화하고 자의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그 제한의 목적, 방법, 범위, 정도, 보상 등이 법률로써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남용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인지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가 검토되고 평가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률로 확립된 근거와 적절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갖췄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시민공간과 코로나19」, 2020.5.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2) 제한 조치의 영향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제한 사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쟁점이 되는 권리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제한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행정 권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당한 반대 의견을 외치는 단체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남용될 수 있다.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스스로 철회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 전 검토와 시행 중 평가와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제한 조치가 적절하고 공중 보건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빠르게 검토되어 권한 남용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권리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 방식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권리를 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외 없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단계적 조치나 덜 침해적인 방식-규모에 따른 제한, 기간의 제한, 감염 위험성의 평가에 따른 장소제한 등--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이다.

(4) 일률적 금지가 아닌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집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가능하면 집회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집회의 규모와 방식을 조정하거나 참가자와 주

변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등 집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집회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집회 주최 측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회의 제한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제한의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계속해서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제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3. 코로나19와 주거의 권리

- ☑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기본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²¹⁾ 1996년 제2회 세계 해비타트대회에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천명했으나 한국의 주거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2010년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절반의 사람들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의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이 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단 5%에 불과하고, 2009년 용산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제퇴거는 2018년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이 권장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집이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 집이 없거나 적절하

2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 강제퇴거와 인권』(2005)

지 않은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등 주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주거권특별보고관’) 라일라니 파르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해야 하는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노숙인이나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²²⁾ 하지만 주거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거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퇴거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주거 박탈계층에 대한 대책 미수립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²³⁾에 따르면 전국 거리 노숙인과 생활시설 노숙인은 총 11,340명이다.²⁴⁾ 광범위한 주거 박탈계층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고 적절한 주거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거리노숙인의 긴급한 주거마련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쪽방 등 개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 역시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혹서기를 앞둔 현재 쪽방이나 환기시설·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 대책은 코로나19 대책과 상충한다. 기존 혹서기 방안은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에 집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최소한 국가는 “모든 퇴거를 중단해야 하고,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주택 서비스 제공하고 격리 조치 (예 : 통금 시간) 시행으로 인해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the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Housing, the front line defence against the COVID-19 outbreak,” says UN expert, 2020. 03. 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7&LangID=E>)

23)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2019).

24) 거리 노숙인의 경우 다섯 시간의 일시 집계에 불과하다는 점과 쪽방, 고시원 등 적절하지 못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들, 찜질방이나 PC방 등 사실상 주거가 아닌 곳에 있는 이들이 집계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 노숙인 강제 퇴거, 시설 이용제한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과 요양병원 집단 감염사례 등을 이유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종용²⁵⁾이 일어났고, 노숙인 이용시설은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거주지와 공간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시설 유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숙인 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간편식(빵과 우유)으로 식사를 대체해 일어나는 영양 부족, 신규입소 금지조치로 인해 신규 노숙인이 갈 곳이 사라지는 현상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만연했다.

서울역을 비롯한 공공공간에서는 홈리스에 대한 강제퇴거, 방역 조치를 빌미로 한 공간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유동인구가 줄어든 도심 터미널, 공항철도 인근은 방역 조치를 핑계로 의자 이용을 금지하거나 치워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5월 6일부터 심야시간 내 대합실을 폐쇄하였다. 이 조치는 방역 강화를 빌미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지속될 계획이다.

(3) 개발이나 임대료 연체, 방역을 빌미로 한 강제퇴거

①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2020년 3월 2일 서울 천호1구역에서 벌어진 강제퇴거현장에는 집행관과 용역이 200명 동원되었다.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가 해금되는 3월 새벽 시간에 맞춰 기습철거를 시도한 이들 중 일부 용역은 자신들이 00지역에서 왔다고 위협²⁶⁾했다. 3월 30일과 4월 24일 대구 동인동 3-1구역에서 발생한 강제철거현장에는 200여 명의 용역과 경찰관이 운집했다. 지게차, 포클레인, 크레인과 스카이차 등이 동원된 대규모 철거가 구청의 허가 아래 집행되었지만, 철거민들의 집회신고는 지속적으로 반려되었다. 서울시 양동의 쪽방

25) 홈리스행동, 「위기 속 민낯 드러낸 노숙인 복지 -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0).

26) 당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너도 감염시켜줄까” 위협하며 침을 뱉는 등.

지역에서는 개발에 앞선 예비 퇴거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용역폭력의 위협 때문에 방이 있지만 거리에서 새벽까지 떠도는 주민도 관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월 한 달 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강제집행 등 퇴거 금지를 행정 명령했으나 4월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기간(12월~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개월의 임시조치를 취했으나 사업지연에 따른 개발조합들의 금융비용을 고려해 집행 중지를 해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강제퇴거 금지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조치

2005년 탈북하여 자녀 세 명을 둔 김00씨는 경기도 광명의 LH임대아파트의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소진하여 지난 5월 7일 강제집행을 당했다. 현재 김00씨를 비롯한 5인가구가 여관에서 생활 중이다.²⁷⁾ 당장 퇴거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부담이 더 커진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낮아진 사람들, 개강이 미뤄지고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해지며 학교 주변에 따로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등교가 미뤄지며 방은 비워두었지만 월세 지출은 계속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²⁸⁾

정부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서 임대료를 할인한 ‘착한 임대인’의 세금감면 조치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3)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8일 성명을 발표, 각 국가에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중단, 주택담보대출 상환

27) 「임대주택 쫓겨나 여관 전전... 새터민다문화가족의 눈물」, 『한겨레』, 2020.5.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034.html

28) 주거권네트워크 등,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간담회」(2020).

유예, 비적정 주거에서의 겨울철 강제퇴거 중단조치 연장, 홈리스에게 위생시설과 응급쉼터 접근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8일 다음과 같은 12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²⁹⁾

1. 임대료·주택담보대출·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퇴거, 퇴거의 위협에 대한 금지
2. 즉각적인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 전면 금지
3. 임대차계약의 해지 금지(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는 제외)
4.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총 소득의 30% 미만)이 되도록 보장
 - 주택 공급자에게 임대료 재산정 의무 부과
 - 세입자의 주거비 지출이 사회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
 - 주거수당 등 주거비를 충당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 급여의 수준이나 자격 요건 재평가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임대인에 대한 보상책 제공
6. 비공식 거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처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호
 - 특히 취약계층에게 최저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함께 제공할 것
7.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8. 특정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9. 수도, 전기, 난방, 전화, 인터넷, 전기통신 등 필수서비스 공급의 중단, 거부 금지
10. 손실을 입는 임대인, 서비스 공급자, 은행에게 세금 공제 등의 재정부담 완화책 제공
11. 이상의 조치가 세입자, 자가소유자에게 부채를 누적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아야
12. 이상의 조치가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 기구 지정

전 세계 각 국가와 도시는 강제퇴거 금지, 홈리스를 위한 응급구호방 마련, 임대료 납부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조치 등 세입자와 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다음과 같은 조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9)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 renters and mortgage payers」, 2020. 04. 08.,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Housing/SR_housing_COVID-19_guidance_rent_and_mortgage_payers.pdf

(1)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생과 방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리와 시설생활자, 집이 안전하지 않은 이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자체를 가질 수 없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임시 주거 지원이나 긴급주거비지원 등이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노숙 6개월 이내, 가구 단위 신청기준 등)으로 인해 포괄 범위가 작다. 감염병 유행 시기 주거 불안정 상태를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현재 지낼 곳이 없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보조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긴급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다시 쪽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시설에 한정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공공주택을 늘리고,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산역사 야간 폐쇄를 비롯해 갈 곳 없는 이들을 다시 내쫓는 공공공간 이용 제한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철도역사와 광장, 급식소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대다수는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바이러스 발생 시기 봉사자 부족 등을 이유로 쉽게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된다. 감염 예방을 빌미로 한 이용제한, 퇴거 요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해 위기 시기 취약계층이 민간의 편익에 따라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노점상과 노숙인에 대한 퇴거에는 혐오가 동원된다. 이는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자리를 빼앗는 기본권 박탈이라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근거리의 동등한 조건을 가진 이동처를 마련하거나, 위생공간을 제공하는 등 방역과 생존권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대규모 용역을 동원한 강제퇴거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퇴거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한 상반기, 또는 연말까지 퇴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임대료 및 주거비 연체로 인한 퇴거를 금지하고, 코로나19 시기 계약갱신 거절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3)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침체와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월세 미납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가 비싸고, 빈곤층일수록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역학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상실은 더 빠른 주거하향/박탈로 이어진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방 빼’ 행렬을 보지 않으려면 임대료 동결·인하와 지원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퇴거 위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반값 임대료를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을 강화³⁰⁾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인상 없는 계약갱신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 세입자의 경우 단 2년의 임대계약 보증이 있을 뿐이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의 갱신청구 보장, 임대료 인상에 대한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7조)’³¹⁾을 활성화하고, 세입자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지원해야 한다.

30) 현행 2개월 연체시 해지 가능, 계약 해지에 필요한 임대료 연체 개월수를 연장해야 함.

31) 세입자들이 계약한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 그러나 세부 규정이 없고, 감액 청구시 조정 절차도 없어 무용함.

4. 코로나19와 노동의 권리

- ☑ 일터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 ☑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 ☑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 ☑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 ☑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 ☑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 또는 성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사회정의의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경제, 금융 영역에서 취해지는 모든 정책과 조치들은 이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ILO Declaration of Philadelphia, 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ILO, 1944)

물리적 거리두기, 격리, 봉쇄와 같은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경제위축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을 지속할 수 없거나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실직과 비노동 상태인 사람들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더 떨어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을 지속한다 해도, 노동조건상 감염위험을 무릅써야만 하거나 심각한 격무로 결국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국가와 기업, 사회의 대처가 인간보다 경제효율과 기존의 구조를 우선시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불평등하게, 취약한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의 권리와 이어지는 인간다운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권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불평등하게 집중시키는 동시에 다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대응은 결국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가능성마저 점점 낮추고 있다.

(1) 노동의 권리

-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강요받지 않고 노동의 수락 또는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노동조건에 있어서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저마다의 역량과 조건을 고려한 동등한 노동의 가치기준과 공정한 노동시간,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증가의 인간중심적 접근³²⁾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 속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건과 목표에 관련해서 최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지속가능한 존엄한 노동(decent and sustainable work)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³³⁾

- 모든 노동자에게는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비롯하여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보호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decent living)의 권리가 있다.
- 누구나 노동에 있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이익과 지위를 위해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실현을 위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이는 각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단결한 개인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집단적 권리이다.
- 모든 노동자는 고용보장제도에 대한 접근권, 직업관련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리와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노동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생산의 분배뿐 아니라 노동과 생산의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사람은 타인과 서로의 노동을 통한 생산에 기대며 살아야만 한다. 그 생산은 의식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물일 수도, 예술과 같이 정신적 풍요와 힘을 더해주는 행위나 존재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위해 심신의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이라는 행위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며, 생산의 과정에서 일터의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자신이 구현한 생산에 대한 만족

32)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 2019, I-D; ILO 일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위원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2019), 2-3문단 참조

33) 국제노동기구 일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위원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2019) 참조,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

과 사회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비롯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정과 자아실현의 단계로 이끈다.

인간에게서 인격을 분리할 수 없듯이, 노동과 인격, 인간의 존엄함 역시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 권리는 경제체제나 이윤을 우선하여 유보할 수 없는 권리다.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한 만큼 주는 대가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생활의 보장 즉 분배적, 물질적 존중과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 소속감,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서의 노동의 과정, 정신적 존중 모두를 나타낸다.

(3) 노동의 권리는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연관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인권의 기본원리 그리고 또 다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들과 상호연관되어야만 실현되며, 하나만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① 노동의 권리에 있어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모든 이들에게는 노동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또한 파업을 포함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에게 권리실현의 물리적 수단만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동등한 힘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장한다. 즉, 노동자인 동시에 시민인 이들을 시민적 권리실현의 온전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핵심적 권리이자, 평등한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참여로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다.

‘일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권은 일터에서 노동조합과 기타 형태의 단체를 만들 권리로 확장되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

은 파업권으로 확장된다. 위기는 모든 피고용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터의 보호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경우든,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터에서 보호와 안전의 강화 필요성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이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³⁴⁾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일터에서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표현뿐 아니라,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향한 행동에도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노동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평등에 기초한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체성, 노동계약의 형태 및 비노동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노동에 있어 차별이란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고용 및 특정 직업에 대한 접근, 고용조건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 균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또한,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권리에서는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의 화폐적 가치와 이윤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저마다의 역량에 따른 생산의 의미, 구성원 모두에게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조치와 같은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의 발전과 같은 변화들에 따른 생산성 및 부의 증가 등은 이 가치의 실현에 우선하여 기여해야 한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HIV/AIDS 포함), 성적 지향 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한 것으로써

34)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 10대 원칙」, 2020.4.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eType=EmailBlastContent&eId=b175afc0-0cf5-4f8b-93e7-f7038c60108a>

평등에 입각한 노동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로 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³⁵⁾

③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직상태뿐 아니라 비노동 상태 혹은 노동이 불가능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용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이 필수조건이다. 고용되지 않으면 몫이 없는 자로 추락한다는 것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자유를 위축시킨다. 나아가 고용된 이들 역시 평등한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유리하고 공정한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인권이 선별이 아닌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연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 대감염병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과 기타 대응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독립적인 노동자와 같이 생계를 잃어 가장 타격이 큰 그룹과 사회보장 제도의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도록 한다.’³⁶⁾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노동자와 건강과 생명, 일터에서 안전의 위기

일터에서의 감염은 노동자와 가족구성원, 지역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의 대처와 정부의 예방조치 및 관리감독 등은 이

35)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para 12,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2fC.12%2fGC%2f18&Lang=en

36) 유엔사무총장실,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04. 2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다. 감염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는 노동조건과 일터의 관계보다는 노동자 개인에게 찾으려면서 책임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³⁷⁾ 이 가운데 재택근무나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감염예방을 위한 노동조건을 신속한 변화가 규모나 조건상 불가능한 일터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은 전무하다.

지난 5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은 늘어난 작업량과 고속배송의 압박에 의한 노동자의 과로사에 연이어 일어났다. 집단감염 직후에는 그동안 방역강화로 더 독한 혼합소독제를 사용하게되면서 고통을 호소했던 조리사의 사망³⁸⁾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노동의 권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며 무엇보다도 반복된 인재라 할 수 있다. 전화통화를 위해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쉴 새 없이 응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콜센터의 노동환경과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가 어려운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을 파악하고도 이와 같은 일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필요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³⁹⁾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방역 및 의료, 위기관리, 돌봄, 물류 관련 노동자의 높은 감염위험과 격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대안과 요구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⁴⁰⁾

(2) 대규모 실직과 불평등과 빈곤의 가속화

ILO는 최근 <코로나19와 일의 세계>라는 4차에 걸친 보고서⁴¹⁾를 통해 심

37) 「“세균 보듯 따가운 시선에 숨도 참아요” 쿠팡맨의 눈물」, 『한겨레』, 2020. 06. 0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62.html

38)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사망, 경찰 아니라 노동부가 전문가」, 『민중의 소리』, 2020. 06. 04.
<https://www.vop.co.kr/A00001492178.html>

39) 「사업장 집단감염 되풀이되는데 정부 대처 '사후약방문」, 『한겨레』, 2020. 05.31.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47294.html>

40) 「'택분에 켈린지'가 불편한 코로나 전사들...차별대우·임금체불 내몰려」, 『라포르시안』, 2020. 06. 06.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41) ILO, 「ILO, Policy Brief: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4th edition」, 2020. 05. 27.

각한 실직의 현실과 예상치를 발표하고 노동에 있어 취약한 이들의 불평등 심화현상, 특히 청년과 여성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앞으로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3억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지난해에 비해 노동시간은 4.8%로 감소했고 이는 48시간 근무기준 약 1억3500만명의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경우(18~29세 만 천명 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의 수료가 중단되거나 일자리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격히 희박해졌으며 이미 일자리가 있더라도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7.1%가 실직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다.⁴²⁾ 위와 같은 전반적인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예상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의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명 줄어 1999년 2월 65만 8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2020.5.24.)에 따르면 22만9천명 감소한 3월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천여명인데 반해 미가입자는 18만7천명(82%)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수도 작년 3월 22만명에서 올 3월에는 8천명으로 급감했다.

-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조건 후퇴, 임금삭감과 휴업, 폐업의 조건완화 등의 고용위기에 위축된 노동자의 권리 유보와 소득 저하, 실업이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적용, 실직, 휴직수당, 노동자나 가족구성원의 감염으로 인한 각종 유급휴가와 같은 긴급한 조치들과 이를 보완해 줄 사회적 보호수단은 적용과 규모, 기간, 지원과정 등에서 차별 없이 기본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45963.pdf

42) ILO는 교육,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 면에서의 손실, 구직에서 어려움 심화등 다양한 충격에 처해있는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이 '락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해고, 무급휴가 및 휴직, 임금삭감 및 체불로 인한 실직과 소득 저하로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넘어 생계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요구는 고용유지를 빌미로 거부되거나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3)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과 고용구조의 심화

소규모의 일터, 미조직, 하청, 특수고용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이주민과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고용형태나 일터에서의 지위가 취약하므로 보호장구, 충분한 휴식, 위험에 대한 작업거부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실현의 실질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사회진출이라 불리는 신규취업의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우선 해고와 돌봄노동의 전가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4) 민주적 결정과정 실종과 권리행사의 수단 봉쇄

- 주체들의 논의와 결정 구조 부재
일터에서 그리고 노동에 관련한 정부의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정보는 필요한 공개와 논의의 과정 없이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을 비롯한 고용관계, 노동조건 저하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들이 기존의 기본권 제한과 전반적인 집회 시위 금지 조치 등과 맞물려 봉쇄되고 있다.⁴³⁾

43)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적폐를 고발했던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된 광화문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와 경찰의 폭력적인 철거,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인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농성천막 철거와 집회금지가 대표적 사례이다.

(5)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코로나19상황에서 가장 핵심인 평등과 차별금지, 인간의 생명과 존엄, 연대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대안정책 중 일터와 노동환경에 있어서 전국민고용보험은 이미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미적용으로 발표되었고, 고용과 실직에 대한 지원과 같은 재난지원 역시 불안정 노동자나 이주, 난민 노동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들에게 그나마 긴급하게 실시하는 한시적 재난지원이 있더라도 접근성의 문제와 극도의 빈곤을 증명하고 순위로 지원을 결정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시급하다.
- 고용과 실업, 노동자 지원 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노동자 직접지원의 경우가 드물다.
- 위기의 대응에 있어, 기존의 기업, 자본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우선하는 기업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구조의 일터에 실질적으로 예방조치와 감염위험에 대해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원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
- 위기에 대한 정책들은 실질적 실현조건의 마련과 제도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기 가장 필요한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이후를 위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일터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우선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일터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노동자의 작업거부권, 기업의 책임과 지침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
- 일터에서의 감염 발생 시 드러난 일상적 관리·감독의 한계를 정비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조치에 있어 권리제한의 최소원칙 준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노동자의 완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과 이후 고용유지나 필요할 시 새로운 직업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 노동자 건강에 대한 노-사 논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고시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2)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원 등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위기의 대응과 지원정책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민과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비정규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우선적 조치를 조건 없이 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차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 위기에 대한 기업지원 편중에 앞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해고 금지와 같은 고용유지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는 기업지원의 필요조건이어야 한다.
-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원하청 구조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가 재원뿐 아니라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만큼,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실질적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실직과 휴직 상태에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는 노동-비노동 상태가 기준이 되지 않는 보편적인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4) 노동의 권리에 있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보장을 위한 행동을 위기상황의 권리제한으로 봉쇄하는 과도한 집회금지와 같은 조치들은 중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권리침해에 맞선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노동의 권리의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평가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과 결정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참고]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의 문제

- 결사의 자유, 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를 비정규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의 책임회피의 근거가 되고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개정⁴⁴⁾
- 노동자의 단체행동, 파업권 행사를 봉쇄하고 있는 업무방해죄 폐지와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중단, 필수유지업무제도 정비⁴⁵⁾

| [참고] 국제노동기준 비준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미비준 ILO 핵심협약 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98조(단체교섭·노사관계) 비준과 이에 따른 노동법 정비
- 실업방지와 소득 수준 유지에 관련한 미비준 협약 95호(임금), 168호(고용촉진과 실업방지) 비준
- 고용중단, 해고 방지와 최소화에 관련한 미비준 협약 158호(고용종료)
- 직업안정과 건강에 관련한 미비준 협약 121호(업무상 상해 급여)
-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중 미비준인 97호(이주 노동자 고용), 143호(이주노동자 동등대우), 149호(간호인력), 189호(가사노동자) 비준

44)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질라라비 201호』(2020.5.),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9581>

4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노동영역」,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http://fox.jinbo.net>

5. 코로나19와 사회보장의 권리

- ☑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사회보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실업과 소득단절 상황에 내몰고 있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의 권리라는 ‘규범’과 그것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간의 괴리를 낳고 있다.

코로나19는 모든 인권 중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이하 ‘사회권’이라 한다)의 보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권의 핵심 권리인 사회보장의 권리는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라는 인식 아래 그 실현이 중단, 퇴보하거나 후순위 과제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결국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강령⁴⁶⁾은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했다. 모든 인권은 동등하고, 하나의 권리의 실현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의존한다. 즉, 사회보장의 권리가 다른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권리의 실현도 공허해질 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실업과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제22조, 제25조).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내 최대한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⁴⁷⁾ 또한 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즉시 보장·이행하여야 할 최소핵심 의무를 부담한다.⁴⁸⁾ 즉 사회보장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사회적보장제도에 배제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람'의 권리로 특정 취약계층을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⁴⁹⁾ 가령 국적, 체류자격 등으로 인한 권리의 박탈은 허용될 수 없다.

46) 유엔,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Un Doc(A/CONF.157/23)(1993)

47)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당사국 의무의 성질」, 1990, E/1991/23, para. 9.,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GEC%2f4758&Lang=en

48)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당사국 의무의 성질」, 1990, E/1991/23, para. 10.,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GEC%2f4758&Lang=en

49)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 2009, E/C.12/GC/20, para. 10.,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GEC%2f4758&Lang=en

사회권규약위원회와 ILO는 사회보장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특정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의 사회적보호선(Social Protection Floor)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한다.⁵⁰⁾ 사회권규약위원회와 ILO는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비정규 형태의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난민 등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편적·통합적 기초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특별한 조치를 강조한다.⁵¹⁾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20. 4. 17. 코로나19와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취약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고, 불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소득안정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구제 및 소득 지원 제도를 제공할 것과 ②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원, 세제지원, 추가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구축을 권고했다.⁵²⁾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50) 사회권규약위원회와 ILO는 기존 '사회적 안전망' 또는 '사회적 안정망' 접근방식이 특정한 계층을 선별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배제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원회와 ILO는 2012년 이래 사회적보호선(Social Protection Floor) 구축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보호선의 구축이란 취약한 계층 누구에게나 필수적 의료서비스 및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통합적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1) ILO, 「권고 제202호」, para. 4;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 사회보장의 권리」, 2008, E/C.12/GC/19, para. 23; Guiding Principles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dopted i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1/11.

52) 사회권규약위원회,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 2020. 04. 17., <https://undocs.org/E/C.12/2020/1>

의 장기화로 높아지는 일자리 문턱,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단은 복지급여, 일용직 근로,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경제적 상황에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⁵³⁾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 8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8년 기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비수급 빈곤층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제도 등 까다로운 수급조건은 비수급 빈곤층들이 위급한 경제적 상황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전체 비수급 빈곤층의 67.3%에 이르고 있다.⁵⁴⁾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이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⁵⁵⁾ 그러나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보장받는 빈곤층 또한 생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생계 위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의 지급 수준은 코로나19로 더욱 열악해진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거급여는

53) 「코로나궤 실업쇼크... 고용 취약 계층, 유일한 소득 끊기면 극빈층 나락」, 『조선일보』, 2020. 05. 1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2243.html

54)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 된다」, 『프레시안』, 2020. 05. 2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610223548472>

55)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2017, E/C.12/KOR/CO/4, para. 42-43.
<https://undocs.org/en/E/C.12/KOR/CO/4>

민간 임대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⁵⁶⁾

(2) 실업의 위험과 취약한 고용안전망

우리 사회는 실업 상황에 있는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보장수준이 불충분한 고용보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적용제외 문제, 수급 자격의 문제, 실업급여의 낮은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짧은 보장 기간, 자발적 이직의 비보호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실업의 위험에 대응하기 불충분한 제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⁵⁷⁾ 물론 법률개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지만, 보험료 지원의 미비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즉, 취약한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사실상 구축되지 않고 있다.⁵⁸⁾

최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취업제도의 낮은 수준의 급여와 짧은 보장기간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취업제도는 급여 수급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아동을 제외하고 있으며, 2년의 취업경력을 수급요건으로 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⁵⁹⁾ 취약한 실업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제도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협소한 대상자마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근로사업과 이용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 국민취업제도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56) 「우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프레시안』, 2020. 3. 20.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84210?no=284210>

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2020), p275-285.

58)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실태는 형태별로 극과극...정규직 87%, 자영업은 0.4%」,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511000166>

59) 참여연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9), p31-32

(3) 긴급한 위기 및 재난지원 제도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차별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긴급한 생계 위기에 대한 해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좁은 위기 사유의 범위와 엄격한 소득·재산요건으로 인해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⁶⁰⁾

일시적인 경제 부양책으로 설계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금제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역시 특정 취약계층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처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가정 또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주민등록이 말소당한 홈리스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⁶¹⁾

3) 사회보장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1)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한 논의와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경제적 위기도 반드시 뒤따르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이다. 위기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급하게 설계되고 긴급하게 이뤄지는 일시적인 현금 지급과 같은 경기부양책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재난 상황에서의 위기와 차별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반복될 재난 상황에서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60) 「코로나19로 눈앞이 캄캄하다면 ...4인 월 123만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경향비즈』, 2020. 3. 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091346001&code=920100

6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미디어오늘』, 2020. 4.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4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801.html

(2)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의 권리는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빈곤에 처한 사람은 더욱 큰 위기를 겪게 되지만, 재난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명시하는 등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이고 특별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빈곤 취약계층이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빈곤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빈곤에 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가능한 사회보장 수단이 기능하지 않을 때 그 역할을 하는 제도로, 그 보장은 개인의 생존을 좌우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빈곤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4)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은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지원이 시급한 빈곤층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지나치게 낮은 급여의 보장 수준과 조건부 수급, 가구 단위 지원, 신청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5)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의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생계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장범위와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우리 사회 공적부조체계가 가진 엄격한 요건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하다. 긴급복지지원의 보장범위를 일시적·열거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의 범위나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유효·적절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협소한 요건들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6) 실업의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은 실업이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업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킴으로써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노동자로서 보장받고 있던 사회보장 또한 상실시킨다.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실업 노동자들의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7) 재난소득지원은 모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경제 부양책으로 설계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금제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의 권리 보장을 보조하는 금원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특정한 빈곤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제도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

다. 특히 재난소득지원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기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탈가정 청소년, 주소지 불명의 홈리스 등의 취약계층들에게도 가구 단위 지급의 예외를 두거나 관할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통해 이들이 재난소득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이 더욱 큰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소득지원이 추가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의무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과 동시에 주어진 권력으로 위기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 사회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기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중히 느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기에,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위기를 또 다른 이윤추구의 기회로 삼거나 부실을 넘어서기 위한 돌파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업은 위기와 재난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기업의 인권보장과 국가의 역할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 한국기업들의 상황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차별 없이 접근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정보 제공이 재난과 위기 시기 시민들의 소통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전달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또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 되었다. 특히, 이전 재난과 참사에서 언론이 보여준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 왔음에도 여전히 지난 관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전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인권과 공정 보도 윤리를 바탕으로 한 원칙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 19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짚어보며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바탕으로 평등한 정보 접근권의 문제와 더불어 특히, 재난과 위기 시기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와 기업과 인권

- ☑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과 인권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단순히 자국 영토와 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업 역시 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의 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법률과 제도로 강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뜻한다.

코로나19는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합의해 왔던 기업과 인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 지침(COVID-19 Guidance)⁶²⁾중에서 기업과 인권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모든 기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중 보건 위기 시기에서도 정부의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할 독자적인 책임이 있다.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원조, 경기 부양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밖의 개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조치의 핵심은 노동자, 특히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침의 의미는 기업에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코로나19로 후퇴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 책임부과를 완화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제공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조치는 당연히 자국 영토와 자국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기업의 공급망⁶³⁾과 현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62) OHCHR, 「Business and Human Rights」, 『COVID-19 Guidance』(2020),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63)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연결망.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4월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라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승했고,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은 -1.2%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향할 위험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초유의 판데믹 상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1) 한국기업의 공급망 문제

판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0년 동안 지속 되어 온 이른바 지구적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을 찾아서 개도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당장 사업 전반에 충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의류봉제업종이다. 대부분의 한국 의류기업들은 원자재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유럽과 미주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왔다. 판데믹 이전에도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의류공장은 저임금과 노동조압 및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판데믹 상황은 이러한 열악한 의류봉제업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에서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로 인하여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되는 의류업종은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얀마의 한 한국인 의류기업은 유럽과 미주 의류브랜드로부터 주문이 끊기자 공장 노동자의 절반을 감축했다. 이는 의류 브랜드들의 핑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한국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노조원들이란 사실이다. 기업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국제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⁶⁴).

노조파괴가 아니더라도 감소한 주문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핑계 삼아 기업주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타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의류봉제업종은 고용인원이 많고 저임금이라는 점에서 한달치 임금만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의류봉제업에서의 피해 상황만이 보고 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한 계약을 축소 및 폐쇄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재해

2020년 5월 7일, LG화학의 인도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채 2주가 지나기도 전인 5월 19일에는 LG화학의 국내 대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LG화학과 같은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5월 14일에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위치한 장디엔 공단에 한국계 기업인 AV헬스케어(Healthcare)사가 짓고 있던 공장 외벽이 무너지면서 현지 노동

64) 「Union Garmant Workers Fear 'an Oportunity to Get Rid of Us」. 『Newyork Times』 2020. 05. 10., <https://www.nytimes.com/2020/05/08/fashion/coronavirus-garment-workers-asia-unions.html>

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따르면 2001~2017년 매년 평균 236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일본, 독일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높은 산재사망률은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세계 어디에서나 현지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한국기업과 연관된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코로나19 국면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재해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

정부는 40조원의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면서 6개월간의 고용유지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조건으로 내세웠다.⁶⁵⁾ 그러나 이미 2020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47만 6천명이 줄어서 고용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⁶⁶⁾ 팬데믹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확대대상에 빠지면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소득감소와 실업공포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대책도 국내에만 국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인 동남아시아의 한국기업 공급망에서 대량 폐업과 실직사태가 예견되고 있

65) 「40조원 기간산업지원 ‘항공·해운 먼저」, 『경향신문』 2020.05.1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21931001&code=920100

66) 「4월 취업자 47만 6천 명↓…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 『KBS』, 2020.05.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4878&ref=A>

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한국 의류공장의 임금체불사태를 계기로 2019년 12월에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다 한국기업이 노무관리를 잘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식과 한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한국기업의 노무관리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대책조차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는 2017년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우선 보고 대상으로 지정한 3개 주제(노조할 권리와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과 인권)에 포함될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코로나19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대응 체제 결여,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ODA사업포함)에서의 인권 보호 장치 결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책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열악한 한국기업의 해외공급망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의료 및 보호용품 지원은 ODA사업과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류봉제업과 같은 밀집 노동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조건인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해고를 정당화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터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감시체제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유지, 그리고 노동권 보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정부·한국기업은 물론, 현지 정부와 한국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과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2)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시도는 인권침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위험물질에 대한 취급을 포함한 환경규제, 빅 데이터 산업육성이라는 이유로 남용될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하여 비대면 기업 활동 확대와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 등은 당장의 위기를 이유로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인권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기업 활동의 확대가 고용 축소는 물론,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3) 정부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망 축소와 변경을 포함하여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급망 정책 및 관리의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권 보호라는 의무에 입각하여 외교관계까지 고려하여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공급망에 피해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 조사 및 대책 수립은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 공급망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해외 공급망과 관련해서 현지 공관과 KOTRA 및 기업으로부터만 정보를 취득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 체계는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대책은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2. 코로나19와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 ☑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 ☑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 ☑ 시민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미디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원칙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미디어가 부여 받은 역할은 ‘민주적 여론형성’이 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의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배제돼 있다. 언론·미디어는 스스로 권력이 돼 버렸고, 시민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아닌 언론·미디어의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정치사회와 미디어 공론장으로의 진입과 참여 조건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⁶⁷⁾해야 할 때다.

커뮤니케이션권리⁶⁸⁾는 인권선언 및 사회권 규약 등 다양한 국제 규약을 통해

67) 채영길, ‘미디어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자유의 확장’, 미디어개혁시민네트 워크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토론회, 2019, 17p

인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그 권리들의 개념을 종합한다는 의미가 크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단지 말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경청하고 표현된 견해의 유효성을 검토하며 심지어 반응할 의무를 포함⁶⁹⁾한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며 유지·확장시키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갖는다. 이 같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향유돼야 한다.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처한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평등하게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둘러싼 ‘국가’와 ‘미디어사업자’, ‘시민’ 각 주체들이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와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해야 한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해 ‘국가’와 ‘미디어사업자’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접근과 참여, 교육, 정보 생산과 제공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지만, 그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가치를 성실히 구현할 공통의 책무를 지며 타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

68) 커뮤니케이션할 권리 개념은 1969년 장 다시(Jean d'Arcy)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는 당시 “세계인권선언이 21년 전 제19조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인간(man)의 정보권보다 더 폭넓은 권리를 포괄해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후, 커뮤니케이션할 권리는 <맥브라이드 보고서>(The MacBride Report)에 명시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NGO와 활동가들 중심으로 공동체미디어에서부터 ‘언어적 권리’, ‘저작권’, ‘인터넷 보급’, ‘자유로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슈들과 접촉되면서 확장된다. 미디어 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훼손과 재벌에 의한 통신의 장악, 소수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권리(right to communicate)”는 “커뮤니케이션권리(들)(communication rights)”로 발전하게 된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미디어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 이용의 주체인 시민의 권리에 맞춰 미디어 정책과 규제의 틀을 혁신하고자 ‘커뮤니케이션권리’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이 미디어 이용자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기술발전을 토대로 미디어 참여적인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69)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커뮤니케이션권리 핸드북>, 2005, 45p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기초정보와 정부 부처의 대응과 평가, 재난을 이겨낼 다양한 방안들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가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통제하기보다는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디어사업자들 역시 공동체에 재난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위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코로나19, 언론보도의 문제

코로나19에 있어서 언론은 “창궐”, “쇼크”, “패닉” 등의 용어 사용과 영상과 그래픽을 통한 ‘확진자 수’를 강조하는 보도 등으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 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정 국가와 지역, 종교인, 확진자(환자)를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일보는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수했다. 헤럴드경제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기사⁷⁰⁾를 게재해 분노를 야기했다. 국민일보는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등의 기사⁷¹⁾를 통해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 밖에도 언론매체들의 취재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확인된 보도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평가들이 제기됐다.

70)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헤럴드경제』, 1월 29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129000156&ACE_SEARCH=1

71)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5월 7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52714&code=61221111&cp=nv>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생활침해 논란도 벌어졌다. 연합뉴스 〈창밖 내다보는 우한 귀국 교민 어린이〉 사진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제공하는 ‘확진자들의 동선’이 과도한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하지만 그 같은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동선 공개에 동조해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대책 미비

코로나19 초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리핑 시 뒤늦게 수어가 제공돼 비판을 받았다. 언론매체들 역시 재난보도를 하면서 수어 제공에 나서지 않았다. 장애인권단체들이 직접 나선 이후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실시하는 공식 브리핑을 뉴스 화면으로 송출할 때는 반드시 수어 통역사를 화면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 후 개선됐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제대로 된 방역 등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면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결국,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귀국 길에 오르는 상황들도 발생했다.⁷²⁾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정보접근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재난정보를 제 시간에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언론이 정보접근취약계층에 재난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72)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시사IN』, 2020.03.2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9>

(3) 인터넷 상 커뮤니케이션권리 축소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위조작 정보’로 명명해 삭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된 게시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방해된다거나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사라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존재하지만 행정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제기돼왔던 조항이기도 하다.

(4)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특정 국가, 지역, 종교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은 언론보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보가 공개하고 있는 동선을 보고 확진자를 특정하거나, ‘불륜’, ‘노래방 도우미’ 등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감시, 침해하고 루머가 퍼졌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되는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일들도 벌어졌다.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코로나19 확진자처럼 행세하는 장면을 찍어서 게시하는 등, 구독자와 동영상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일도 일어났다.

3)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시민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요건 면에서의 엄격성에 기초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와 미디어사업자는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1)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에 대해 보다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많은 반성이 있었다. 그 후,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재난보도준칙>⁷³⁾을 마련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해당 준칙에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 “인명구조와 수습이 우선되는 범위 내 취재”, “피해 예방과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전달”,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언론사의 의무’에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 비치 및 사전 교육”, “재난보도 담당 기자가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 “노약자·지체부자유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재난정보 전달 방안 마련”,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 마련 및 시행”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권에 기초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재난과 관련해 정확성에 기초를 둔 콘텐츠와 서비스, 데이터 개발 및 생산에 나설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73)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2014년,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2)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기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2에 따라, KBS는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노약자·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뉴스전문채널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재난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재난 관련 전문 조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구를 통해 재난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 누구든 평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최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역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키고 통제하기 보다는,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정보 그리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최소심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난정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보다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시민 미디어교육(리터러시) 등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는 타인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n번방 사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신상이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진 것과 같이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 되며,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시민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미디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사실상의 물리적)’가 진행됐다.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했고, 학생들도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들었다. 코호트 등의 상황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바로 ‘통신’이다. 통신의 공공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데이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된 것이고 재난상황에서는 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재난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통신은 인권이다.

II-4.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는 재난 상황은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며 낙인과 혐오를 마주했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정부의 방역 대책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겪은 피해를 짚어보고, 위기 이후 사회를 재조직하고 변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1. 코로나19와 낙인과 혐오

- ☑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 ☑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증오, 차별선동의 금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차별 선동이 금지된다는 것은 확고한 인권규범으로서 자리잡혀 있다.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오, 차별선동이 구체적인 표현에 의해 행해질 경우, 이러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2)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인과 혐오

한편 낙인과 혐오, 증오, 차별 선동은 대상이 되는 이들의 존엄성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UN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2003년 보고서⁷⁴⁾에서 건강에 맥락에서 낙인과 차별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낙인과 차별이 건강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 아동, 인종, 민족적 소수자, 장애인, HIV감염인, 난민 등 소수자 집단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0. 2. 24. 국제적십자사,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는 공동으로 정부, 지자체, 의료 관계자를 위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Social Stigam associated with Covid-19 가이드)⁷⁵⁾」를 발행했다. 해당 가이드는 코로나19는 아직 미지의 감염병이기에 무지에서 오는 공포와 혐오의 전가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낙인이 ▲ 사람들이 차별을 두려워해 숨게 만들고, ▲ 의료적 조치를 받기 어렵게 만들며, ▲ 건강한 생활습관을 취하길 주저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 개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낙인,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중국(인)’이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을 이유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정치인들은 ‘질병 명명에 있어 특정 지역, 사람의 이름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⁷⁶⁾ 또한 중국 이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대립

74)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Paul Hun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resolution 2002/31」, E/CN.4/2003/58, E/CN.4/2003/58, 2003, para. 59.,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03/109/79/PDF/G0310979.pdf?OpenElement>

75) WHO 등,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2020),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tigma-guide.pdf?sfvrsn=226180f4_2.

동에 대한 자극적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대림동 주민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⁷⁷⁾ 또한 중국인만이 아닌 외국인 전반에 대해서도 혐오가 확산되었다. 가령 외국인 강사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⁷⁸⁾ 이러한 혐오는 지자체가 방역과 상관이 없음에도 외국인 확진자의 국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⁷⁹⁾

3월에 들어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 주민 등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방역 과정에서 교단 상층부의 비협조적인 대응이 더해지면서 신천지 신도라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당연히 배척하고 차별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연말정산 서류를 통해 신천지 신도 여부를 색출하려 하는 회사들도 있었다.⁸⁰⁾ 대구 역시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는 대구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고 대구 사람들이 사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탔는데 뒷좌석 사람이 소독제를 뿌리는 모욕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다.⁸¹⁾ 이러한 대구혐오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더 강화되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이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보직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⁸²⁾

성소수자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3월 초 게이 커뮤니티에서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이 주말 중 종로를 방문한 것이 알려지자 “주말에 왜 돌아다

76) 「'우한 폐렴' 명칭을 고집하는 조선-한국경제와 종편」, 『미디어오늘』, 2020. 02. 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7>

77)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림동 할린 혐오」, 『아시아경제』, 2020. 04. 2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2810414902197>

78) 「너희 나라로 돌아가」, 「성소수자 아웃 코로나 확산, 커지는 혐오」, 『아시아경제』, 2020. 05. 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910173485669>

79) 「아우팅 막는다더니... 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경향신문』, 2020. 05.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59025

80) 「[단독] 신천지 아웃팅'... 연말정산 서류 뒤져 찾아내는 기업들」, 『서울경제』, 2020. 02. 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3L0489H>

81) 「“대구 사람 좌석에 소독제 마구 뿌려... 코로나보다 무서운 차별·혐오」, 『한국일보』, 2020. 03. 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31046756402>

82) 「“대구는 통합당이니 손절해도 돼” 지역차별 발언 한 민주당 청년위원 보직서 해임」, 『세계일보』, 2020. 03. 06. <https://news.v.daum.net/v/20200306183000541>

니는 것인지, 종로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등의 비난, 혐오 발언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 초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게이클럽’을 강조하고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놓았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불필요하게 상세한 동선 공개와 겹쳐 성소수자들이 마치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시키게 만들었다.⁸³⁾⁸⁴⁾ 그 결과 많은 성소수자들이 편견과 낙인 속에서 위축되고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촉발된 혐오는 특정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자 개개인을 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몇몇 환자의 경우 이동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사생활과 관련되어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떠돌았다. 이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감염 그 자체보다도 이로 인한 혐오와 낙인이 두려워 숨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⁸⁵⁾

3) 낙인과 혐오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안

(1)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고, 과도한 불안, 공포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은 확진자를 비롯해 특정 집단, 사람들에게 대한 낙인과 혐오가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브리핑, 재난메시지, 언론 인터뷰 등에 있어 특정 집단을 감염의 원인으

83)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미디어오늘』, 2020. 05. 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37>

84) 「시민단체 "방역 정책이 성소수자 혐오 촉발…인권침해 줄여야"」, 『연합뉴스』, 2020. 05. 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77500004>

85) 「"몸 아픈 것보다 사람들 시선 더 무서워" 코로나19 혐오, 이대로 괜찮나」, 『아시아경제』, 2020. 03. 10.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1011001588723>

로 인식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처벌을 먼저 이야기하는 등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이 추적되지 않도록 동선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미국 CDC의 권고⁸⁶⁾를 참조할 수 있다.

[참고] 미국 CDC “커뮤니케이터와 공공 보건 공무원들은 코로나 19 대응 기간 중 낙인에 맞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과 접촉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을 유지하라
- 제품, 사람 및 장소와의 연관성으로 인한 위험 또는 위험없음에 대해 신속히 전달하라
-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높이지 않으면서 경각심을 높여라
-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라
-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글들이나 일상적 활동으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라.
- 공유되는 이미지에 주의하고, 이것이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라.
- 낙인화된 집단과 직접, 그리고 뉴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 등 미디어 채널을 통해 관계를 맺어라
- 보건의료종사자와 응답자에게 감사하라. 코로나19 발병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은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모두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 중국에서 돌아왔거나 피해 지역의 친구나 친척이 걱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라.

8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Reducing Stigma」. 2020. 3. 20.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reducing-stigma.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symptoms-testing%2FReducing-stigma.html

(2)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하였다.⁸⁷⁾ 또한 2020. 4. 28.에는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마련해 공개하였다.⁸⁸⁾ 이러한 준칙들은 공통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보호”,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낙인의 확산은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언론들은 이 점을 유의하면서 위와 같은 준칙들을 준수하고 스스로를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시민들 역시 혐오와 낙인에 맞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확진자의 사생활이 아닌 올바른 방역대책”이라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허위사실 등을 담은 글들을 접했을 때 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혐오와 낙인이 아닌 연대와 공감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87)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재난보도준칙」, 2014. 09. 16.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88)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감염병보도준칙」, 2020. 04. 28.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2. 코로나19와 여성

- ☑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약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와 성주류화 전략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⁸⁹⁾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은 여러 차별 중에서도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역시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대한 보호와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제32조 제4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제34조 제3항), 성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8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2조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다. 이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도출된 전략으로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개발·개선·재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UN은 성주류화를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은 재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증가하며, 수입의 단절로 경제적 취약성이 증대된다. 또한 재생산/보건 측면에서도 여성은 더 취약해지기 쉽다.⁹¹⁾ 그렇기에 재난에 있어서도 젠더 관점(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UN에서는 2009년 43개국이 참여한 북경 국제회의에서 <성인지적 재난위험 감소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한 베이징 아젠다>를 채택하여, 재난피해 감소와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9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했다.⁹²⁾

(2) 코로나19와 젠더

2020. 4. 9. 유엔에서는 「유엔사무총장 정책보고서 : 코로나19의 여성에 대한 영향」(UN Secretary-General’s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⁹³⁾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여성에

90) “성주류화”, 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http://kapa21.or.kr/data/kapa_dictionary_view.php?num=134&page=1&term_cate=&term_word=%C1%D6%B7%F9%C8%AD&term_key=&term_auth=
 91) 장은하, 「재난과 젠더: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43(2016), p19-21.
 92) 북경국제회의, 「성인지적 재난위험 감소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한 베이징 아젠다」(2009),
https://www.preventionweb.net/files/9538_BeijingAgendafinal22Apr09.pdf
 93) 유엔사무총장실, 「유엔사무총장 정책보고서 : 코로나19의 여성에 대한 영향」(2020),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코로나19 대응에 여성, 여성단체를 참여시키고, ②무급 돌봄 노동을 포괄적 돌봄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③여성의 삶에 초점을 둔 사회경제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적 영향 :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 건강 위험: 여성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그렇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원불평등 역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
- 돌봄노동의 비가시화 : 코로나19로 가족 내에서의 돌봄이나 환자에 대한 돌봄 등 돌봄노동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남겨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존중은 주어지지 않는다.
- 가정폭력과 괴롭힘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을 향한 젠더기반폭력들이 증가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코로나19 대응전략에 있어 성주류화 관점의 부재

유엔에서는 재난 피해로부터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모든 재난 관리 계획에 성주류화 관점’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⁹⁴⁾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

of-covid-19-on-women

94) 장미혜 외,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p66.

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분석 및 대응 역시 젠더 관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피해상황은 단지 환자의 숫자로만 나타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성별 분리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⁹⁵⁾

(2) 돌봄노동에서의 불평등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 등 사회적으로 작동하던 돌봄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로 인한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졌다.⁹⁶⁾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가족돌봄휴가 등 돌봄지원 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본인 및 그 직계가족,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이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제공하며, 그 중 최대 10일 간은 일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직/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1일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제도들의 이용, 혜택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8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휴가나 재택근무 이용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성은 14.3%가 사용한 것에 비해 여성은 27%가 사용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비율도 남성은 8.1%에 비해 여성은 42.9%였다.⁹⁷⁾ 고용노동부의 4월

95) 「코로나 이후, 페미니즘이 길을 묻다」 두 달여 ‘멈춤’에 심화된 성차별, 『한국일보』, 2020. 05. 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51186026985>

96) 신경아,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젠더적 고찰」, 『코로나19와 젠더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2020), p17.

97) 「코로나 돌봄공백... 워킹맘 부담 더 커」, 『세계일보』, 2020. 04. 08.
<https://m.segye.com/view/20200408520567>

9일자 발표에서도 가족돌봄비용의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69.0%에 달했다.⁹⁸⁾ 가사/돌봄의 책임이 주로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등의 선택을 더 많이 요구받는 것이다.

한편 돌봄노동 자체가 ‘여성의 일’로 여겨짐에 따라 돌봄노동은 저임금, 단기 간의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여왔다. 그로 인해 돌봄노동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논리를 마주해 손쉬운 해고 대상이 되었다. 기관·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이 일제히 멈추면서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생계위기를 겪어야 했다.⁹⁹⁾

(3) 건강권,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

코로나19의 유행률, 감염확률 자체는 남녀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조적인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이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전국 보건업 종사자 중 77.3%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중 85.9%가 여성이었다. 이러한 직군의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으며, 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기에 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결국 그만큼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녀 확진자 비율이 비슷한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전체 확진자 중 59.7%가 여성이다. 이처럼 여성 확진자가 많은 것은 확진자 중 높

98)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준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보도자료, 2020. 04. 09.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38066>

99)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프레시안』, 2020. 05. 16.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51518023270175>

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천지 신도중에 20, 30대 여성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⁰⁰⁾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신천지에 많은 것일까.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젊은 여성들이 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가령 대구시 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창우 집격정없는세상 대표는 “삶에 희망을 느끼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신천지가 파고 들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¹⁾ 이러한 여성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이곳에서 감염된 상담사 88명은 대부분 여성이었다.¹⁰²⁾

코로나19는 여성들은 성과 재생산 권리에도 위협이 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임신부를 비롯해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병에 대한 낙인, 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이 진료를 거부당했던 일이 있었다.¹⁰³⁾ 확진자가 크게 발생한 은평성모병원에 다녔던 임신부들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또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들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들의 임신중지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여성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임신 출산 및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100) 「코로나19 확진자 29%가 20대…“신천지 젊은 여성 비중 높은 영향」, 『한겨레』, 2020. 03. 20.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30768.html>

101) 「대구 한마음아파트 주민 3분의2는 왜 신천지 교인이 됐을까」, 『경향신문』, 2020. 03. 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081803001

102) 「『코로나19』 확산 비상!신천지·콜센터·돌봄노동…여성 ‘빈곤·소외’가 질병 취약 불러」, 『경향신문』, 2020. 03. 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72242015

103) 「“진료 안 됩니다”…대구·경북 임신부들 병원서 ‘퇴짜」, 『SBS』, 2020. 03. 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5291

(4) 해고, 휴직 등 노동권 침해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여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1.7%p 하락했다. 이는 다른 연령, 성별 집단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고용률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졌다. 3월의 경우 20대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3.9%p 하락했고, 4월에는 3.8%p 하락했다.¹⁰⁴⁾ 같은 시기 20대 남성의 경우 3월 2.1%p 하락, 4월 1.3%p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성별에 따른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통계청은 ‘여성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0대의 경우 역시 대면접촉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종 등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높아 고용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¹⁰⁵⁾ 코로나19로 음식, 숙박업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업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불안정 노동자인 20대 여성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성들의 노동권 침해는 비단 20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은 요양보호, 환경미화, 급식 노동 등 다양한 여성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대두되자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은 우선적인 해고대상이 되거나 장기간의 무급휴직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¹⁰⁶⁾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수록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러했듯이 말이다.¹⁰⁷⁾

104) 월별 고용동향은 통계청 홈페이지 > 새소식 > 정책뉴스 페이지 참조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

105) 「임시·일용직·여성부터 고용 충격...구직단념자도 속출」, 『경북일보』, 2020. 04. 19.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619>

106) 「[한겨레 프리즘] 위기가 부른 해고의 '뉴노멀'」, 『한겨레』, 2020. 04. 19.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1089.html>

107)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 취급... 여성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2020. 06. 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065

(5) 가정폭력의 위협 증대

코로나19의 또 다른 영향 중 하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성들이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후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이 32% 증가했고, 영국의 경우도 20%가 증가했다.¹⁰⁸⁾

한국은 어떨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가정폭력이 지난 해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문제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있는 경우 오히려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이야기했다. 즉 이미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비율 자체가 낮은 상황¹⁰⁹⁾에서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이 신고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이 증가한 결과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가령 대전시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가 5% 증가했으며¹¹⁰⁾, 경북 사천군의 경우는 무려 4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3)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의 피해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젠더관점에서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

108) 「'코로나19' 이동제한령 내리자 가정폭력 늘었다... 프랑스 32%, 영국 20% 급증」, 『여성신문』, 2020. 4. 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28>

109)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1.7%만이 경찰에 신고했다.

110)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증가..집안 거리두기」, 『대전 MBC』, 2020. 5. 17. <https://tjmbc.co.kr/article/Lyf0QOOfivLEDfI>

111) 「코로나19 영향? 가정폭력 늘고, 성폭력 줄고」, 『뉴스 사천』, 2020. 5. 12.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34>

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고용, 건강, 일상 등 전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약성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피해 대응 및 향후의 회복 방안들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2)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돌봄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맞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을 넘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임금에 따른 부담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돌봄이 사회 구성원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보장하는 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자체가 가치가 낮은 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여성들의 건강권,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건강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근로조건, 처우 등을 개선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젠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산 예방 및 향후의 피해 회복 지원에 있어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임산부가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노동자의 고용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의 영향을 여성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그 자리를 남성 신규 채용자들이 채우는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20대 여성들을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노동자들이 소득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등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고용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5)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가정폭력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정부 브리핑 등에서 가정폭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국가 차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이고 촘촘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하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

3. 코로나19와 어린이·청소년

- ☑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2020. 4. 27. 유엔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코로나19의 아동에 대한 영향」(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¹¹²⁾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겪게 될 위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생존/보호/발달/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신체적/정서적 학대 : 돌봄시설이나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돌봄 감소 및 아동방임, 가정/대인관계의 폭력 증가, 보호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학대 가능성

112) 유엔, 「<정책보고서 : 코로나19의 아동에 대한 영향>(2020),
<https://unsdg.un.org/resources/policy-brief-impact-covid-19-children>

- 젠더기반폭력 : 아동대상 성착취 위험 증가, 가족 돌봄이나 가사일 등 가정 내 책임들을 여아에게 부과
- 사회적 배제 : 감염병 증가 위험에 대한 불안요소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불평등 강화, 권리의 주체임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권리 침해

정부는 개원·개학 연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방안을 한 동안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다수의 어린이·청소년을 고밀도로 모아 놓는 방식 외에 보육·교육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사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기도 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방식과 내용 등에서 불충분했다. 등교 연기와 온라인 개학의 와중에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도 나타났다.¹¹³⁾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 지역 사회에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멈추자 가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육 부담은 커졌고 돌봄을 분담하거나 공유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지역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돌봄의 어려움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코로나19 확산에서도 돌봄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양육자들의 열악한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입시 등이 주목적인 교육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

113) 「온라인 개학 때 등교하는 학생 급식은 어찌나…현장 혼란」, 『연합뉴스』, 2020. 04. 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072700054>

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촉박한 일정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한 것은 입시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¹⁴⁾ 입시 등을 위해선 각종 시험이나 대회, 학사 일정이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 제도가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 자체가 아닌 입시나 취업 등 일정이 정해진 과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또한 정부는 주로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고 예체능계·직업계 학생들의 진로나 시험, 대회 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업 자체도 교육과정 상의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소위 ‘진도’를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어, 기존 학교교육 과정과 교육 방식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수업일수를 ‘1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고부담의 학교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업일수를 크게 단축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입시를 위한 학원은 다수가 휴원하지 않고 있으며 학원 강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도 발생하면서,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을 닫은 상황이 무색해지기도 했다.

(2)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할 권리의 부재

교육부는 개학 연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3월 27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묻는 대상은 교원과 학부모뿐이었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5월 들어 등교 개학 일정을 공지할 때도 교원·학부모 대상 의견 조사만 진행했을 뿐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¹¹⁵⁾ 이는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개학의 방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개학 준비 과정은 교사들의 부담만을 고려하여, 수업 방식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

11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논평] 코로나-19 사태 속에 드러난 청소년 인권의 문제들」, 2020. 04. 05.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291333590946743&id=100002104026189

115) 「'고3 먼저 등교 후 순차적 등교' 배경엔 학부모·교사 설문조사」, 『한국경제』, 2020. 05. 0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44561Y>

고, 학교 내 학생자치조직을 비롯해 학생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학교 폭력, 가정폭력의 문제

개원·개학 연기 상황에서 돌봄의 부담이 각 가정에 전가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나 가정 내 폭력적·위계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례들도 눈에 띈다.¹¹⁶⁾ 한국 사회는 양육자의 스트레스에 주로 공감하며 어린이·청소년이 느낄 억압이나 스트레스 등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독박 돌봄 현실은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음이 알려졌다.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및 정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비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세대 단위, 세대주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원가정에서 이탈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등은 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¹¹⁷⁾ 다양한 언어적 조건과 장애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116) 「코로나19 사태로 '방콕' 오히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늘었다」, 『중도일보』, 2020. 04. 23.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423010008481>

117) 「'수어' 없는 온라인 강의 "장애학생들은 어떡하나"」, 『경향신문』, 2020. 03.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222216005

3)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을 가정(부모/친권자)이나 학교에 딸린 보육·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단정하고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묻게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을 모아 놓은 학교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란 이유로 당연시되던 문제와, 입시와 취업 등을 목표로 한 고부담의 교육 내용과 방식이 가진 경직성과 문제점 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보호나 교육을 받는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돌봄의 부담을 양육자의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어린이·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가족 안의 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 및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중심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더 작은 규모의,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일수·학습시간과 교육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여러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나 수업시수를 조율하는 교육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다 소규모의 교육 활동이나 교육 모임 등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교육의 목적이 교육 참여자의 성장이 아닌, 외부적인 입시 및 취업이 중심이 되는 것은 교육을 경직·왜곡시킨다. 그로 인해 감염 등으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에도 입시 일정 등을 우선하며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입시나 취업, 경쟁이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돌봄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이 여가권·발달권·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어린이·청소년이 학교 및 학원 등의 고밀집 교육기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 외의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생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이 학교 등의 한정된 공간 외에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개학 추진 등 학교 일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학생들이 학교 개학 여부나 수업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결정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나 대표 기구 및 단체를 통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 기구가 참여하여 수업 진행 방식 등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과정이며, 그 참여의 과정 자체가 어린이·청소년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 일정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이나 일터나 지역 사회 등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경청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

(6) 어린이·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지방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비학생 어린이·청소년도 지원 정책이나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도 세대 단위 지원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곤 계층, 이주민, 장애인 등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 이를 전달해야 한다.

4. 코로나19와 난민·이주민

- ☑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전 세계적인 연결은 더욱 촘촘해지고,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주의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주를 택한다. 이주는 국가를 떠난 상황일 뿐이지, 그것이 차별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 자국을 떠나 이주한 곳에서도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정된 법, 제도가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 이주민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현실은 더욱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옹호해야 한다. 이는,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구금되지 않을 권리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등 전반적인 권리를 포

함한다.¹¹⁸⁾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코로나19 정부 정책에서의 차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선주민과 이주민을 가르는 명확한 선을 보여주었다. 이주민에 대한 여러 차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의 기준과 정부 지원정책에서의 배제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 제외되었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이 구매 대상이었고 이주민에게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카드 두 개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6개월 미만 체류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주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다.¹¹⁹⁾ 다행히 4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미등록이주민들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서도 이주민은 배제되었다.¹²⁰⁾ 일부 지자체들은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지원금 역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온다. 위기를 겪는

11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2020. 04. 07.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119) 「법 밖의 이주민 39만명…마스크마저 차별 말길」, 『경향신문』, 2020.03.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91534001&code=940100#csidx263b31a374f2a09b74f5025fe32d41b

120) 「“외국인은 ‘주민’도 될 수 없나요?”…이주민은 못 받는 재난지원금」, 『KBS』, 2020.04.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8096&ref=A>

것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긴급한 시기에 선주민과 이주민을 갈라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

(2) 정보접근의 불평등성

이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모국어로 된 보건, 방역 정보의 제공이다. 나날이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뉴스 자막만이 영어로 제공된다. 정부에 의해 다국어로 정보가 제공된 것은 사태 초기에 나온 코로나 예방수칙, 자가격리 수칙 등에 국한되어 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동선, 보건소 위치와 진료 절차, 아동 돌봄서비스 정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재난정보 문자 내용 등, 정보를 알아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주민들은 이런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¹²¹⁾ 원활하지 못한 정보접근성은 이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쉽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통역 역량을 활용하여 충분히 언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불이익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중국, 중국 국적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 되었다. 상점, 식당 등에서는 ‘중국인 출입금지’를 붙여 놓는 곳도 늘어났고¹²²⁾ 혐오 발언들도 강도 높게 이어졌다. 이주민들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하기조차 두려워했고, 혐오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다. 중국 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선동 보도도 이어졌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이주민들에게도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시선이 계속 가해졌다.

121) 「외국인들 재난문자 와도...“복사 안돼 번역기도 못들려”」, 『한겨레』. 2020.05.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496.html

122) 「[단독] 퍼지는 ‘중국 포비아’...서울 한 식당 ‘중국인 출입금지’」, 『한겨레』. 2020.01.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951.html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고, 나아가 이주민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확장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도 늘어났다.¹²³⁾ 특히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민들의 타격이 컸다. 또한 이미 빈곤층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일을 못함에 따라 생존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해고 사례도 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¹²⁴⁾ 고용유지 지원금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4) 자가격리 시설과 비용의 문제

이주민들은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수가 같이 기거하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사업주가 받아주지 않아 어렵사리 쉼터를 찾아 쉼터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례도 있었다.¹²⁵⁾ 어느 농촌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있는데도 격리시설로 옮겨져 하루 10 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구직기간에 본국에 다녀온 이주노동자가 거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5) 감염병에 취약한 구금시설

한국의 외국인 보호(구금) 제도는 열악한 시설, 사법부의 심사가 없는 장기간 구금, 아동, 질병 환자 등 취약한 지위의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부각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보호소는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여 구금되어 있는 이주민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감염병에는 더욱 취약하다. 또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면회 및 접견이 중단되거나 횟수가 제한되어 사법접근권을 충분히 보장받

123) 「'코로나19' 탓에 중국인 해고 당해...식당도 출입 거부」, 『연합뉴스』, 2020.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0001900371?input=1195m>

124)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거의 가입하지 않는다.

125) 「재입국 이주노동자 “자가격리 어디서 하죠”」, 『경향신문』, 2020.04.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21642001&code=940100#csidxd67eb976011f5ee889bec738b18fa95

기 힘든 상황이다.

(6) 입국 등 이동의 자유 침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고는 있으나, 본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아예 출국이 불가능한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민은 한국에 입국, 체류할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진출국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장기간 미등록 체류자들의 비정규적 지위를 해소하고 계속 한국에 거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주민들에게 정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3) 난민,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 시기 이주민은 안전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선주민/이주민에 대한 차등 없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이주민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상에서도 권리가 실현 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불평등은 위기 상황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공장 내 부속시설, 가건물 등을 기숙사로 써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ILO의 숙소기준 권고에 부합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대해 내국인과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의료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난 상황에서 정보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 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은 공포로 이어진다.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이유다. 이주민에 대해 다국어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문자는 최소한 영어로 병기되어 발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뉴스가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에 이주민이 배제 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등록 외국인 전체에게도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재난 시기 다양한 사례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재난 시기에 한정된 권리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이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만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는 법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해고 금지와 더불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 이주민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차별과 혐오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별과 혐오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낙인으로 공포와 사회적인 불안만을 조장할 뿐이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안전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5. 코로나19와 장애인

- ☑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 ☑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 ☑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원칙¹²⁶⁾

국제법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적인 삶을 ‘탈시설화’와 함께 장애인 인권회복의 중요한 이념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삶의 조건과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특별한 주거시설’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즉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126)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2) 장애인 격리지침 초과시행으로 인한 시설화의 제도화 방지

유럽장애포럼(the European Disability Forum, 이하 'EDF')에서는 지난 3월 공개서한을 통해 질병 단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는 격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를 제도화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동 및 정신장애인시설의 인구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⁷⁾ 또한 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장애인들이 수십 년 동안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우고, 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차별이니 중단하라는 메시지였다.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곳을 정하고 원하는 시간에 먹고 자고 씻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간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에도, 낙인과 배제의 정치,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기한 없는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설 거주인들과 지역사회 내 시설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8만8천명¹²⁸⁾으로 추정되는

127) EDF,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포괄대책」, 2020.03.13.
<http://edf-feph.org/newsroom/news/open-letter-leaders-eu-and-eu-countries-covid-19-disability-inclusive-response>

128) 통계청 「전국장애인추정수」 1995~2017년(2018)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이나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왔다. 결국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 장애인을 더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하는 격리조치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을 격리시설로 보내거나, 탈시설 흐름을 역행하여 도리어 거주시설 기능을 강화¹²⁹⁾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침¹³⁰⁾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는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장애인수용시설과 정신병원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은, 감염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생 장애인을 코호트 격리 대상으로 만들어 온 역사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매체와 뉴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대부분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장애인 연금착취, 강제입소와 같이 학대나 폭력, 불법행위 등으로 사건화 된 경우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이란 이유로 시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예산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통제된 동선, 제한된 정보와 지원, 사회적 관계망 등 수용시설의 폐쇄적 구조는 장애인들이 감염병 발생 시 더 열악하거나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만들었다.

129) 「코로나19 대응책이 '장애인거주시설 1인1실'로 리모델링?」, 『비마이너』, 2020.03.23.,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497>

130)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2020.02.24.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52679

EDF 등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서비스나 물자가 있는 장소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로 인해 더욱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장애인 돌봄시설의 방문이 금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경우, 현 사태 이전부터 이미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¹³¹⁾

(2)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디지털 정보 접근권)에서의 소외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되는 장애인의 인권은 교육권이나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도 드러났다.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이나 지원방법을 받을 수 없는 결과는 장애인의 건강 침해로도 이어졌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으나 장애를 가진 학생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비나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맞는 교육컨텐츠도 개발되지 않았다.¹³²⁾ 또한 코로나19확산 초기에는 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되지 않거나, 배치가 되더라도 화면에 잡히지 않는 상황 등이 발생해 장애인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¹³³⁾

(3) 외면 받는 장애인의 노동권

노동 등 경제적 활동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들을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수용시설로 돌아가거나 혹은 시설 밖 지역사회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31) EDF,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포괄대책」, 2020.03.13.

132) 「장애학생에게 더욱 가혹한 온라인 개학, 『비마이너』, 2020.04.17.,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77>

133) 「인권위 “코로나19보도화면에 수어통역사 포함하라”, KBS, YTN, 연합뉴스TV 제외한 방송사들, 정부 브리핑 뉴스 화면에 수어통역사 배치 안해」, 『미디어오늘』, 2020.02.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59>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들은 정부가 허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라는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해 동일시간, 동일노동을 해도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왔다.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 절하했으며, 이로 인한 낮은 급여, 직무능력개발 기회에서의 배제, 직업선택의 제한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증첩된 차별과 정부의 낮은 사회보장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다. 이조차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작업장이 휴업하거나 근무조정이 되면서 장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노동단절로 인해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4)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체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활동지원사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이 감염병이 발생 시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 혹은 활동지원사가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격리 조치로 인해 장애인이 혼자 고립될 수 있다는 공포감일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집단 교육이 중단되면서 활동지원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해 가족 혹은 친인척에 의한 활동지원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가족의 몫이 되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전문인력과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아직도 안전불감증 사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5년 전 메르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조치인 「장애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고려한 매뉴얼」 제작조차 소홀히 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를 인재로 키웠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¹³⁴⁾

134) 「메르스 소송 3년, '장애인 감염병 안전 대책 마련하라'는 법원 조정안도 거부하는 복지부」, 『비마이뉴스』, 2019.03.2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49&thread=04r03>

3)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감염병 예방 및 대책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차별행위라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시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는 간혀서 사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로 인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설폐지를 위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시민들의 힘이 보태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EDF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격리시설과 거주시설에 대한 제안 내용¹³⁵⁾을 참고하여 즉각 수용 가능한 것과 장단기적 계획 아래 추

135) ① (격리시설관련)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위생적인 의료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것

- 격리 제공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의 경우, 완전한 정보 접근성을 포함하여 장애인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지침에는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가능한 장애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②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필수 물품, 지원 및 인적 연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병 단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는 격리 지침을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를 제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동 및 정신장애시설의 인구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는 설정이기도 하다.
- 만약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시설이 폐쇄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엄격한 위생 및 예방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간병시설의 모든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시설의 직원이나 부재로 거주인들이 버려지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 거주자는 직원 부족이나 부재의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에 관해 시설 거주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장애인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하고,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학대받는 장애인을 식별하고 구조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진될 사안을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을 다루는 관련법은 「감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그런데 이들 법조항 어디에도 장애를 고려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선언만으로는 누구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는 재가 장애인뿐 아니라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영위하고,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정책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적 조치->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과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정책 개정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배제 혹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적 지원 체계 구축과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재가 장애인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리나 공간 마련에 대한 무관심, 부족한 공공서비스체계로 인해 집안에 갇혀 시설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나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늘 부족하고, 그 공백은 오롯이 가족 혹은 개인의 몫이 된지 오래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장애인이 집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싸우며 고립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와 혹은 장애로 인해 수반된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본인 부담금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비용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장애인만이 아닌 장애인의 가족들도 직장생활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의식주를 포함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적 조치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사회보장을 강화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 노동차별을 정당화해 온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조항¹³⁶⁾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장애친화적 노동환경을 늘려나가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5)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와 전환이 필요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교육과 정보제공 체계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 등의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을 경

136) 「최저임금법」 제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최저임금효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인 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월급 통장에 찍힌 '3만원'... 어느 1급 장애인의 '기막힌 임금」, 『경향신문』, 2018.07.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92142005&code=940702

우, 장애인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며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온라인상에서 교육받고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맺을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며, 장애학생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장애를 가진 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EDF¹³⁷⁾은 공중보건 관련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을 강조하며 8개의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보접근성은 위기상황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내용이다.

137)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감염병에 즉각적이고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 스스로와 가족이 취해야 할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하며, 모든 정보를 쉬운 단어로 써서 읽기 쉽게 할 것, 온라인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할 것, 모두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 등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다(EDF,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포괄대책」, 2020.03.13.).

6. 코로나19와 HIV감염인

- ☑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 ☑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가이드가 필요하다.
- ☑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 아프면 누구나 안전하게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건강 권이라 칭하며,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HIV감염인들은 HIV/AIDS¹³⁸⁾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낙인, 편견으로 인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HIV감염인 진료거부다. 의료기관 종사자라 하더라도 감염내과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HIV/AIDS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어, HIV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138) AIDS는 HIV감염인의 인체 내 HIV 활동을 통해 면역기능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한다.

다. 그로 인해 충분히 치료받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무지는 질병에 대한 공포를 낳고, 이 공포는 HIV 감염인에게 도덕적, 사회적 낙인을 찍으며, 더 나아가 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는 질병의 종식 및 예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권과 공중보건에 큰 해를 끼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플 때, 누구나 안전하게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HIV/AIDS와 그 외 모든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회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두가 가진 기본권이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진료연기

국내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HIV감염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이 급박한 나머지 몇몇 의료기관들이 HIV감염인 진료 및 입원, 수술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권한다 하더라도 혐오로 인한 진료 거부만연한 현실 속에서 HIV감염인들은 쉽게 다른 병원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의료공백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비단 HIV감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염병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당장 시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기저질환자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이나 이주민 등에게 더욱 위험하다.

(2) 미등록 이주민 HIV감염인이 처한 의료공백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해외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이주민 HIV 감염인들은 약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주민들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적절한 치료와 약 처방을 받지 못한다. 설령 의료기관을 찾아가더라도, 미등록 상태라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 힘들고 심지어 미등록 상황이 노출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도 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자국민 여부에 상관없이 국경봉쇄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이주민이 치료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3)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언론, 지자체 등이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다. 과도하게 정보가 노출된 개인들은 현재 사생활 침해, 지역사회의 괴롭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HIV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 속, HIV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을 때 겪게 될 사회적 낙인과 차별, 편견에 대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3) HIV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안

(1)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HIV감염인을 비롯한 중증질환자, 기저질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공공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긴급한 재난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의료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난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료적 조치가 미뤄지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2) 국공립 요양병원 마련 및 확충이 필요하다.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HIV감염인들의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HIV감염인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다. HIV감염인이 갈 수 있는 국·공립요양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물론 민간요양병원도 대부분 HIV감염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HIV감염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HIV감염인들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HIV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국공립요양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비단 HIV감염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의료 공백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HIV/AIDS 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HIV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거부는 HIV감염인들이 흔하게 마주하는 현실이다. 비록 국가위원회법과 의료법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진료거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¹³⁹⁾고 밝히고 있으나 HIV감염인은 매우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 당장 ‘내가 혹시 진료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HIV/AIDS에 대해서 잘 알고, HIV감염인들의 현실과 인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HIV/AIDS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의료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 환경을 바꿔야 한다.

(4)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시설들이 감염병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다. 그 취약성은 개별 격리가 불가능하고, 개인위생에 맞추어 운영되지 못한다는 열악한 시설운영형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민간요양병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모니터링 기간에 맞추어진 보여주기 식이었다.

수익성 중심의 민간요양병원들 중 일부는 때때로 환자를 볼모로 삼아 더 많은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민간요양병원이나 요양기

139)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를 배포한 바가 있고 2018년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관에 더 많은 공적비용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들의 수익 높여주기를 위한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자연히 해법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 및 시설 중심의 관점을 벗어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체계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관점을 기반으로, 그리고 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이때 HIV감염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물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해 당연 고려해야 한다.

(5)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HIV감염인을 포함한 기존 기저질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특히 HIV감염인들처럼 진료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경우, 보다 더 특별한 권리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기저질환자들이 특별히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가면 진료지연이나 진료거부 없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료적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연결되어 있다.

(6)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의료접근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 HIV감염인 등이 겪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료접근권이 제공되어야 감염병 위기상황에 취약한 계층군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공공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의료정보는 다양한 언어로 이주민에게 충분히 가 닿아야 한다. 정주민과 이주민, 등록과 미등록을 구분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모두에게 해롭다.

(7) 정부/지자체와 언론의 지나친 정보공개를 막아 사회적 낙인을 예방해야 한다.

연일 마주하게 되는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하는 질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회를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할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위기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내는 동시에, 확진자가 질병을 이겨내어 모두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보도와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확진자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드러내어 낙인을 찍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인권의 원칙하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인권의 원칙하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 코로나19와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권리취약노동자

- ☑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차별과 국적 및 성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1) 존엄한 삶을 살 권리로서 노동권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모든 개인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노동은 자유로이 선택되거나 수락되는 한 개인의 개발과 공동체 내에서의 인정에 기여한다.”¹⁴⁰⁾

사회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등 노동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¹⁴¹⁾. 둘째, 양호한 노동(decent work)에 대한 권리¹⁴²⁾와 동일가치노동

140)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2fC.12%2fGC%2f18&Lang=en

141)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장의 보호시스템에 접근할 권리와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

동일임금 원칙¹⁴³⁾. 셋째, 개인적이고 집단적 권리로서의 노동권¹⁴⁴⁾, 넷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¹⁴⁵⁾. 다섯째 보호받지 못하는 정규 경제 밖 노동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¹⁴⁶⁾

(2) 코로나19와 노동권

재난 시기 노동자의 인권은 제한당하거나, 유예되기 쉽다. 이에 대해 ILO와 유엔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재난 시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권리에 대해 제시했다. ILO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건강, 경제고용 정책, 노동자와 기업 소득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¹⁴⁷⁾ 또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이나 해고에 대해 말하기 위해 파업의 권리까지 포함된 결사와 집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¹⁴⁸⁾

ILO는 첫째 실직 방지 및 소득 수준 유지를 위해 실업, 일시적 노동시간 단축, 임시 휴업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연장할 것, 둘째 산업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유급휴가를 권고했다.¹⁴⁹⁾ 산업안전보건위원

리가 있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para 6.)

142) “양호한 노동이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작업 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이는 규약 제7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한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para 7.)

143) 사회권규약 제7조는 고용에 있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승진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비차별」, 2009,E/C.12/GC/20.)

144) “근로의 권리는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의 권리이며, 동시에 집단적 권리이다. 동 권리는 자영적인 노동이든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이든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para 6.)

145) 사회권규약. 제8조.

146) “높은 실업률과 안정된 고용의 부재는 근로자가 비정규적인 경제(informal economy) 부문에서 고용을 모색하게 되는 원인이다. 당사국들은 정규 경제(formal economy) 밖에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법적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para 10.)

147) ILO, 「권고 제205호」(2007)

148)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 10대 원칙」, 2020.4.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eType=EmailBlastContent&id=b175afc0-0cf5-4f8b-93e7-f7038c60108a>

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보호 장비 제공(특히 의료진, 자원봉사자, 대면업무 노동자),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한 위생 절차, 업무 조직형태 변경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작업거부권 보장이다.¹⁵⁰⁾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방지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발병 또는 완치 이후에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¹⁵¹⁾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은 안전과 방역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비자발적인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인권 후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 시기에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이들의 삶은 열악했는데 재난은 위협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ILO가 제안한 국제노동기준은 한국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1) 건강권

① 건강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149) ILO, 「코로나19와 노동의 세계: 위기의 영향과 대응」, 2020.3.30.

https://www.ilo.org/caribbean/newsroom/WCMS_740266/lang--en/index.htm

150)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 제4절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LO, 「COVID19와 노동자보호2: ILO기준 및 COVID-19」, 2020.5.29.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WCMS_739937/lang--en/index.htm

151) 권고 제171호,(1990)는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 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검사가 차별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ILO, 「COVID19와 노동자보호2: ILO기준 및 COVID-19」, 2020.5.29. ILO,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WCMS_739937/lang--en/index.htm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 혹은 중소기업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비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몇 번을 쓴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도 있었다.¹⁵²⁾¹⁵³⁾ 대리운전노동자들이나 퀵서비스 같은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안전장구 없이 일해야 했고,¹⁵⁴⁾ 요양보호사들은 보호 장구조차 개인이 사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¹⁵⁵⁾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환자와 밀접해서 일하는 간병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¹⁵⁶⁾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정부의 방침이 공적 마스크 지급으로 바뀌면서 완화되었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휴가나 재택근무나 자율출근제, 출퇴근시차제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¹⁵⁷⁾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정급이 없어 일을 중단할 경우 해고위협이 있고 상병휴가제도 등이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조건이었다.¹⁵⁸⁾ 이로

152) 「비정규직은 우리 직원 아닙니다. 마스크차별 서러운 비정규직」, 『KBS』, 2020. 03. 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5657>

153) 「현대차, 정규직은 방진, 비정규직은 방한」, 『서울신문』, 2020. 03. 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5010007>

154) 「대리운전, 퀵서비스 노동자들 마스크 지급 안돼」, 『오마이뉴스』, 2020. 03. 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81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155) 「재가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못 받아”」, 『한겨레신문』, 2020. 03.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167.html

156) 「시급 4200원 받으며 확진자 돌본 간병인, 결국 숨져」, 『국민일보』, 2020. 03. 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300352&sid1=001>

157) 「기업 10곳 중 6곳 재택근무제 계획 없어」, 『서울경제』, 2020. 03. 1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5PI6N11>

158) 「아프면 쉬라지만 노동자43% 휴가 못써」, 『MBC』, 2020. 04. 19.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37453_32633.html

인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⁵⁹⁾ 고용형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출퇴근시차제 및 휴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쿠팡은 일터의 방역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사내 확진자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¹⁶⁰⁾

② 코로나19로 과로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와 병원노동자

코로나19로 업무가 사라지고 있는 직종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직종도 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가격리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유통·배달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열악한 임금이나 노동조건, 초과 노동 등의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쿠팡맨의 죽음’으로 사회에 알려지기도 했다.¹⁶¹⁾

또한 병원 사업장에서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¹⁶²⁾ 감염병동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초과근무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¹⁶³⁾¹⁶⁴⁾

(2) 해고와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위협

① 일터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159) 「비말-밀접접촉, 대구 콜센터도 집단감염」, 『서울신문』, 2020. 03. 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1500094>

160) 「다른 사원 동요시키지 말라 집단감염 촉진시켜」, 『아시아경제』, 2020. 05. 2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811385597289>

161) 「40대 쿠팡맨 죽음, 코로나로 배달 급증」, 『한겨레』, 2020. 03. 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622.html

162) 병원노동자들 내에도 감염병동에 근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량의 차이가 났다.

감염병동이 아닌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기도 했다.

163) 「의료진 덕분에 간호사들 4월 월급도 못 받았다」, 『오마이뉴스』, 2020. 05. 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0377

164) 「힘겹게 싸웠는데..대구 간호수당 0원」, 『JTBC』, 2020. 06. 0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3447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축소되는 등 사회·경제생활이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거나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를 이유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해고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 대다수 중소기업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과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¹⁶⁵⁾ 학습지교사,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 학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업무 감소 등은 해고와 다를없어 생계위협 위협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을 내놓았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범위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협소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¹⁶⁶⁾ 이후 노동계의 요구로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조금씩 늘렸으나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시혜적으로 일부만 지원할 뿐이어서 온전한 권리로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¹⁶⁷⁾

② 구조조정 되는 항공업과 관광업계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 간 이동이나 국내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 등은 항공업과 관광업계의 매출에 타격을 줬고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휴업과 폐업,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¹⁶⁸⁾ 항공, 호텔, 콜센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분야 모두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유지되던 산업이다.¹⁶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쉽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여객항공 이용객이 92% 이상 줄어든 후 하청 소속 현장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무급휴직이거나 권

165) 「무급휴가 강요받는 노동자들」, 『아주경제』, 2020. 03. 27.

<https://www.ajunews.com/view/20200326204434801>

166) 「직장갑질 119, 78% 휴업수당 그림의 떡」, 『연합뉴스』, 2020. 03. 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2020100004>

167) 「무급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월 50만원 2개월 지급」, 『매일노동뉴스』, 2020. 03. 3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37>

168) 「예약 0건, 여행업계 초토화..기사, 가이드부터」, 『한겨레』, 2020. 04. 27.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942115.html>

169) 「먼저 해고된 호텔 비정규직」, 『KBS NEWS』, 2020. 05. 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9031>

고사직을 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의 경우, 500명 중 희망퇴직 120명, 정리해고 8명, 무기한 무급휴직이 370명이나 된다.¹⁷⁰⁾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 하청업체 청소노동자들도 무급휴직과 정리해고 중 결정을 중용당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한시적 해고 금지와 공항과 항공산업 고용안정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3조원이나 지원했지만 대형항공사들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예술노동자, 이주노동자

일이 없어 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140만 명이 넘고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는 2019년 같은 달보다 8만4000명(32.1%) 증가한 11만 1000명을 기록했다.¹⁷¹⁾ 실업에 따른 생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때 특수고용노동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이고 산재보험도 없다.¹⁷²⁾ 예술노동자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발표했으나 불과 며칠 후 발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진 채 예술노동자만 추가된 정도였고 지난 5월 20일 국회를 그대로 통과했다.¹⁷³⁾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장구라 할 수 있는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우선순위로 해고되는 상황이다. 또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이주노동자 강제송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¹⁷⁴⁾

170) 「잔인한 5월, 항공업계 “월급 줄고 무급휴직.”, 『아시아 타임즈』, 2020. 05. 06.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2395235429>

171) 「코로나19 고용쇼크 더 커지나...4월까지 세수규모도 관심», 『연합뉴스』, 2020.06.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47400002?input=1195m>

172) 「코로나직격탄, 특수고용노동자 추가 대책 시급»,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 04. 13.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16>

173) 「특수고용빠진 고용보험법», 『미디어오늘』, 2020. 05. 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31>

174) 카자흐스탄 출신 한 이주노동자 알리 씨는 강원도 원릉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10여명의 한국

3)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이윤 축소가 이어지자 기업은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에게 실직은 심각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국가가 해고 금지와 생계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기반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해고 금지와 생계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기업지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자 직접지원을 위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타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들이 필요하다.

- 정리해고, 권고사직,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원 방식이 아닌 노동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도 해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2)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자원이 심각하게 제한된 시기에도 비교적 저비용의 대상 특정 프로그램 채택함으로써 주변화된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여야 한다.¹⁷⁵⁾ 비정규

인을 구하고 부상까지 당했으나 미등록이란 사실이 알려져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175)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200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2fC.12%2fGC%2f18&Lang=en

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여성노동자, 예술인노동자 등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 세워야 한다. 구조화된 차별은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사회권의 향유를 막는다. 실질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국가는 차별을 존속시키는 상황을 약화시키고 억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¹⁷⁶⁾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같은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조건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쉼 권리 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꼭 필요한 조치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유급병가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병가제도 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운영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¹⁷⁷⁾ 그리고 여성들이 비정규직 저임금 중소기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젠더관점에 입각한 노동권 보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에게도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방역물품 및 생계지원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생계 보장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상병휴가, 유급휴가, 실업 급여 지급
-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차별 없는 보호장구 및 휴가, 정보접근권, 작업거부권 보장
-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된 해고와 돌봄노동 완화 방안 마련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

(3)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

176)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객관적, 비례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실질적 평등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달성될 때 특별조치는 중지될 수 있다.”(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비차별」, 2009.E/C.12/GC/20.)

177) 참여연대,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해야」(202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04010>

야 한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정책 및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업과 정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조차 방역조치라며 통제한다면 정부와 기업의 대책에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파업권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최소한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 작업장 안팎에서의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4)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차별과 국적 및 성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리해고제도, 기간제법, 파견제도의 실시 이후 많은 차별과 고용불안 생계 불안에 시달렸다.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은 만연하고 끈질기고 사회적 행위와 조직에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그러면서도 아예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간접 차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¹⁷⁸⁾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를 차등대우하는 구조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동권을 특정집단의 특권으로 착각하게 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비정규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성차별적인 채용 및 승진 등 고용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

178)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비차별」, 2009,E/C.12/GC/20.

법 2조 개정과 전 국민고용보험 가입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고용허가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따른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리해고, 비정규직 법제 폐지 및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 고용보험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폐지, 성차별 채용 등 고용차별 근절

8. 코로나19와 성소수자

-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위협하지만 특히 성소수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 그로 인한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¹⁷⁹⁾, 불안정 노동 비율이 높은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는 사회 속에서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동선이 드러날 시 원치 않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할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2020. 4. 17. <코로나19와 성소수자 인권(Covid-19 and the Human Right of LGBTI People)>¹⁸⁰⁾

179) 가령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 남성/여성, 양성애자 남성/여성 모두 통증 빈도가 인구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불안증 빈도도 높았다. - 이호립 외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불평등: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Epidemiol Health』 Vol. 39. (2016).

18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코로나19와 성소수자 인권지침」, 2020. 04. 17.,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LGBT/LGBTIpeople.pdf>

이라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성소수자들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들이 성소수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권 침해 : 차별과 낙인, 범죄화 등으로 인한 의료접근권 침해
- 관련 의료 서비스에서의 불평등 : HIV 치료, 의료적 트랜지션 제공 중단 내지 부족
- 낙인, 차별, 혐오발언 : 코로나19의 책임을 성소수자에 전가하는 등의 혐오와 낙인
- 가정폭력과 괴롭힘 : 자가격리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은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으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음
- 노동권 침해 :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상태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돌봄휴가 등 제도에서의 배제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5월7일,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최초로 알려진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에 대해 ‘게이클럽’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고 확진자의 주소, 직장 등을 공개했다. 이에 편승한 다른 언론들 역시 성소수자 업소에 대해 편견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도했다.¹⁸¹⁾

지자체들 역시 이러한 혐오와 낙인에 일조했다. 인천시의 경우 5월 7일 인권 단체에 전화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으니 성소수자들은 검사 받는 게 좋겠다”며, 성소수자 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했다.¹⁸²⁾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명을 공개하며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사회 전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접촉 금지 명령, 처벌 등을 우선시하여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성소수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¹⁸³⁾

(2) 아우팅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

확진자의 동선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되어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는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3. 1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서 직장명, 세부주소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확진자의 아파트명이나 직장명을 공개하고 있고 이것이 언론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¹⁸⁴⁾

이러한 정보공개는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 앞서와 같이 이태원 지역에서 감염이 된 경우 성소수자라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동선이 공개되는 것은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알려지는 아우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우팅이 될 경우 성소수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배척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 직장에서 괴롭힘, 사직 강요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상황에 놓인다.¹⁸⁵⁾

181) 「국민일보의 강제아우팅,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 『오마이뉴스』, 2020. 05. 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0397

182) 「[단독] 게이클럽 확진 나오자 퀴어 수소문한 인천시」, 『인천투데이』, 2020. 05. 0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66>

183) 「시민단체 "방역 정책이 성소수자 혐오 촉발...인권침해 줄여야"」, 『연합뉴스』, 2020. 05. 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77500004>

184) 「확진자 정보공개 방식에 문제있다」, 『미디어스』, 2020. 05. 1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40>

185)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에 커진 혐오..숨죽인 성소수자들」, 『연합뉴스』, 2020. 06. 08.

(3) 검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초창기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HIV 감염 유무를 확인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문제가 됐다. 이는 HIV감염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해져서는 안 될 지침이다. 이렇게 이태원 방문자를 특정해서 HIV감염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은 성소수자, HIV감염인 혐오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한편 검진 과정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 검사 담당자가 모멸적인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었다.¹⁸⁶⁾

(4) HIV 치료, 의료적 트랜지션의 중단, 연기

성소수자 중 HIV감염인의 경우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트랜스젠더 역시 호르몬요법 등 트랜지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많은 의료인들이 HIV,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HIV감염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몇몇 의료기관만을 한정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연기된다면 HIV감염인, 트랜스젠더로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는데 큰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한 트랜스젠더가 호르몬요법을 받던 병원이 폐쇄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¹⁸⁷⁾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 의료적 조치의 중단, 연기는 HIV감염인,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5) 동성결혼 불인정에 따른 가족돌봄제도 배제 및 차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7041800004>

18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대책본부 1차 회의록」(비공개), 2020. 05. 16.

187)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대책본부 1차 회의록」(비공개), 2020. 05. 16.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들도 지원했다. 그러나 동성커플의 경우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파트너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돌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병원들에서는 관행적으로 가족에게만 환자의 면회허가, 의료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¹⁸⁸⁾ 이로 인해 동성커플 중 1인이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자의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면회, 정보제공을 거부당할 위험에 처한다.

(6) 이분법적 성별표시로 인한 트랜스젠더의 마스크 구입 어려움

정부는 3월 9일부터 약국에서 출생한 년도에 따라 1인에게 1주 2개씩만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구매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 검사는 법적성별과 사회적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의 마스크 구입을 가로막았다.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 확인과정에서 성별이 노출될 시 불쾌한 시선을 받거나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이 마스크 구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¹⁸⁹⁾

(7) 군대 등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의 경우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동선 공개 등으로 아우팅이 될 경우 혐오와 차별만이 아니라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군대, 교정시설 등 집단거주시설의 특성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괴롭힘, 폭력의 피해를 겪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188)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요?” - 동성 부부들이 겪는 현실의 벽... 신혼 대출 못 받고 병원서 보호자 역할도 못해», 『주간경향』, 2019. 11. 2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911181457051

189) 「투표 현장서 “본인 맞으세요?” 질문에 시달리는 트랜스젠더», 『한겨레』, 2020. 04.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6547.html>

3)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고립되어 생활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령 동선 공개는 누구에게나 문제이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특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아우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족에게도 배척받는 상황에 놓인 성소수자들은 자가격리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위협에 놓이고, 이분법적 성별구분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쉼터 입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대응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피해 상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언론 보도, 소문 확산 등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와 낙인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언론 브리핑, 재난문자, 캠페인 등 공적인 메시지를 냄에 있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혐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사실로 아우팅이 된 경우 이로 인한 노동권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아우팅을 당하거나 이로 인한 인권침해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개인이 추적되지 않도록 동선 공개 방식 변경,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아우팅으로 인한 사직 강요 또는 직장 괴롭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침 전달 및 신고제도 운영 등이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인들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HIV감염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HIV/AIDS 편견에 기초해 성소수자 확진자에게만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적 공백상황에서도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

(4)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성커플이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의료, 돌봄 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를 법률상 가족에만 한정하지 않고 돌봄과 친밀함에 기초한 관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족이 아님을 이유로 면회, 정보제공 거부를 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별에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5)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 등을 도입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차별로 인해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분법적 성별로 인해 마스크 구입을 못하는 트랜스젠더 등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번호 등 대안적인 인증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분증에서 불필요한 성별표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임의화해야 한다.

9. 코로나19와 수용자

- ☑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어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1) 인권의 원칙과 권리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하 '수용자')의 인권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한다.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의 폐쇄성, 과밀성, 열악한 위생환경 등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은 사회의 낙인과 혐오로 쉽게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보장된 인권의 원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엄격히 관철되어야 한다.

유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 이하 '만델

라 규칙')은 모든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받을 것(제1조)을 명시하고, 교정환경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2조).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판시하며 수용자에게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서 처우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¹⁹⁰⁾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수용자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처우를 약화시키거나 박탈시키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델라 규칙 제24조 제1항¹⁹¹⁾ 등 국제인권규범은 수용자에게 공동체에게 보장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¹⁹²⁾ 즉 수용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진료 등을 통한 의료·보건서비스에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수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국한된 의미가 아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식량 및 상품의 공급 등 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 감염병을 명목으로 한 비인도적 조치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받을 권리 등 제반 권리들까지도 포함하여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³⁾

OHCHR-WHO 기관 간 상임위원회는 2020. 3. 27.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¹⁹⁴⁾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수용자의 지위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

190)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191) 「유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 1.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2)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관한 권리」, 2000, E/C.12/2000/4, para 1, 31.

193)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관한 권리」, 2000, E/C.12/2000/4, para 5.

194) IASC, 「Interim Guidance on 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2020)

19 상황에서 모든 조치가 합법성, 필요성, 비례원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위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당사국에게 1) 과잉 수용 문제를 위한 즉각적 조치, 2) 이주민에 대한 비구금식 대안 마련, 3) 자의적으로 구금된 수용자, 아동 수용자의 석방 및 비구금식 대안 마련, 4) 취약집단의 건강권에 대한 특별한 주의, 5) 정신건강에 대한 특별한 주의 6) 변호인 접견 및 가족의 면접권 보장, 7) 시설 내 예방적 조치 8)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조치 9)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성 확보 등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원칙을 제시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수용시설의 불투명성

코로나19 상황은 접견제한, 야외운동 등 모든 이동과 활동의 제한, 격리, 노역, 심리적 불안감 조성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야기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기간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수용자 간의 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¹⁹⁵⁾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수용시설의 일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자들의 권리침해 상황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법무부가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정보 정도 밖에 확인할 수 없다.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외부진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 권리보장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되어야 할 수용자들에게 발생하는

195) 「코로나19 집단감염 막자...교도소로 간 공보의들」, 『청년의사』, 2020. 3. 18.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668>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약화시킨다.

(2) 과밀수용, 열악한 위생환경, 부당한 의료적 처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명(수용자 3명, 직원 9명)이다.¹⁹⁶⁾ 2월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 확진, 3월 대구교도소 교도관 확진, 3월 김천교도소 수용자 확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 등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과밀수용 및 위생환경을 특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 6개월 전에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 결정했지만,¹⁹⁷⁾ 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법무부는 2020년 5월 기준 전체 교도소 수용비율이 108.8%라 밝혔지만, 제주교도소의 수용비율이 132%(2019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개별 수용시설들의 과밀수용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수용시설의 허술한 의료·방역시스템, 노후화된 공유 수도꼭지의 사용, 마스크 등 필수의료용품의 부족 등 감염병에 취약한 위생환경¹⁹⁸⁾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용시설은 유증상자를 독방에 격리하는데, 독방은 확진자와 유증상자의 격리 또는 치료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장소라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황장애를 앓아온 수용자 한 명이 독방에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¹⁹⁹⁾ 이러한 독방시설조차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96) 「'거리두기' 어려운 1평 미만 비좁은 수감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가능성 커"」, 『조선비즈』, 2020. 5. 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2827.html

197)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198)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시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한겨레』, 2020. 03.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78.html

199) 「독방에 손발 묶인 채 숨진 공황장애 수감자…유족 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2020. 05. 21.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911>

이처럼 수용시설은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대규모의 감염의 확산을 대응할 체계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시설의 환경이라는 근원적 원인에 대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보다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3) 접견 및 면회의 제한 등 외부와의 소통의 권리 제한

법무부는 2020. 2. 24. 고강도 방역을 추진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수용시설의 수용자 접견 및 면회를 무기한으로 전면 중지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일반 접견·화상접견을 금지하였고 스마트접견만을 허용했다.

그러나 스마트접견은 수형자에 한하여 허용되었고, 수형자 중에서도 공안사범, 조직폭력수형자, 마약류수형자, 관심대상 수형자,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 등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스마트접견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가족 중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었다.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2회의 전화접견만을 허용했다. 이러한 법무부 조치는 약 2개월 간 유지되었다.²⁰⁰⁾

법무부는 2020. 4. 27. 접견 및 면회 제한을 완화했지만 등급에 따라 그 허용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결수용자와 S1·S2의 경우 주 1회 면회를 허용하지만, S3·S4의 경우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²⁰¹⁾ 법무부는 이러한 접견 및 면회 제한 완화가 한시적 조치라 밝히고 있다.

(4) 수용시설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의 문제

200) 「'교정시설 접견제한' 두달 만에 풀린다...27일자로 해제」, 『동아닷컴』, 2020. 04. 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5/100801438/1>

201) 「교도소 면회 오늘부터 일부 가능...단, 예약해야」, 『머니투데이』, 2020. 04. 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711395973851>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일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수용자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마스크 생산 작업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에도 이루어졌다.²⁰²⁾²⁰³⁾

수용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의 공급이나 마스크의 구매를 영치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수용시설은 수용자가 외부 진료시설 진료 등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인력의 부족과 정식 부서의 부재 등으로 수용시설 내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대면 심리상담도 불가능하여 적절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²⁰⁴⁾

3)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안

(1) 재난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처우는 경시되기 쉽고, 부당한 처우가 방역 목적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시설의 환경, 활동제한 등 수용자들에게 취해지는 조치, 비상대책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수용

202) 「교도소 수용자들, 마스크 2만장 제작해 창원시 제공」, 『연합뉴스』, 2020. 03. 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46300051>

203) 「수형자들도 마스크 만든다」...여주교도소, 1만장 이상 공급」, 2020. 03. 1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319/100239822/1>

204) 「교도관 2명 확진에 불안한 재소자들...대구교도소 “편지로 심리 상담」, 『서울신문』, 2020. 03. 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6500210&>

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수용자의 가족 등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 등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지 약 3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 등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시설의 환경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근원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방기하고,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3)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용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불필요한 구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구금의 최소화는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수용자들 전반의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보호의 목적으로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는 아동들, 형기의 종료가 임박한 수용자들, 경미한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 등 구금의 필요성이 적은 수용자들과 장애인, 노인, 아동, 기저질환을 가진 수용자 등 취약 수용자들의 석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석방되는 수용자들의 생계지원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적극적 이송, 심리사회적 지원 등 수용자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적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 내 독방격리, 내부 진료 등은 시설의 열악한 위생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자들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아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독방으로의 격리가 아닌 즉시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내 심리사회적 지원 역시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등이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5) 모든 수용자가 차별 없이 면회, 스마트 접견 등의 방식으로 가족 등 외부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의 제한과 대안의 제공 없이 외부와의 소통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은 수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족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과 기간의 제한 없이 외부인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조치는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적 조치의 이용에 등급 등에 의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6)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에 대한 활동 제한 등 강제조치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방역물품 등의 생산을 위해 수용자에게 야간·휴일 작업 등 강제노역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에 대한 운동 및 이동 제한, 징계 등 강제조치는 법률상에 근거에 의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조치에 있어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이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작업 부과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야간·휴일 작업 등의 부과는 국제인권규범에 허용될 수 없는 강제노역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III 결론



1. 결론

코로나19의 상처를 살피며 기억하는 것이 인권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이 재난과 그에 따른 위기가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난과 위기의 극복을 얘기하는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존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에 존재해왔던 불평등과 인권침해, 차별과 낙인의 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먹거리와 월세 등 가장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질병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사치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 내몰렸다. 장애인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 위기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서, 심각한 낙인과 혐오까지 더해져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전가된 돌봄노동은 과도한 노동 혹은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공공의료의 부족은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실 속, 우리가 말해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이 재난과 위기의 어떤 종식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위기가 종식된 사회는, 매년 2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위기가 극복된 사회는, 감염병의 위험이 특정한 집단,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거나 전가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사회는, 이주민은 제외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덮어둔 채 ‘재난위기가 극복되었다’, ‘일상이 회복되었다’ 혹은 ‘다시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드러난 고통과 상처에 주목하는 일이다. 차별 없이 평등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혐오와 낙인의 조장을 방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나중이 아닌 지금, 불평등과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재난의 위기 속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가 이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인권의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체제와 제도로 보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함께 살며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서로의 고통에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겪는 불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추모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기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현재 겪고 있는 상처를 기억하며 살피자.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인권을 복기하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살피며 사회적으로 연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피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

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 ☑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정보인권

-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 ☑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 ☑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 주거의 권리

- ☑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 ☑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 ☑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 ☑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 ☑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 ☑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 ☑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 ☑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기업과 인권

- ☑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 ☑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 ☑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 ☑ 시민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미디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연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최**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 ☑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 ☑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 ☑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 ☑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 ☑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 ☑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 ☑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 ☑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 ☑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 ☑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 ☑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 ☑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 ☑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용자

- ☑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어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과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메 모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0. 06. 11.

발행하는 곳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의 hrcomm2017@gmail.com

편집 보코

후원 ○▽△음 인권재단사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

○▽△◇ 인권재단사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